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천년을 품다, 새천년을 날다
전라도천년

2022년 축산사업 추진계획

2022. 1.

한국 속의 한국
전라북도
축 산 과

목 차

Ⅰ 2022년 추진방향 1

Ⅱ 2022년 투자계획 8

Ⅲ 축산진흥팀 사업계획 13

Ⅳ 축산경영팀 사업계획 57

Ⅴ 친환경축산팀 사업계획 243

Ⅵ 축산환경개선팀 사업계획 327

Ⅰ 2022년 추진방향

1 축산업 현황

□ 가축사육 현황(천두·수, 호)

○ (한육우) '20년 대비 5.8% 증가, '14년 이후 사육두수 지속 증가

구 분		'18	'19	'20 (A)	'21 (B)	증감 (B-A)
전국	두수	3,113	3,211	3,396	3,555	159
	농가	96,630	93,784	93,063	93,640	577
전북	두수	375	392	415	439	24
	농가	9,380	9,214	9,235	9,380	145
점유율	두수	9.7	9.8	9.9	12.3	2.4
	농가	12.1	12.2	12.2	10.0	△ 2.2



○ (젖소) '20년 대비 1.8% 감소, '18년까지 증가 후 '19년부터 증가 정체

구 분		'18	'19	'20 (A)	'21 (B)	증감 (B-A)
전국	두수	408	408	408	401	△ 7
	농가	6,360	6,232	6,184	6,148	△ 36
전북	두수	34	33	33	33	-
	농가	492	481	478	485	7
점유율	두수	8.3	8.1	8.1	8.2	0.1
	농가	7.7	7.7	7.7	7.9	0.2



○ (돼지) '20년 대비 5.3% 감소, '20년까지 증가 후 '21년 감소

구 분		'18	'19	'20 (A)	'21 (B)	증감 (B-A)
전국	두수	11,333	11,280	11,365	11,217	△ 148
	농가	6,188	6,132	6,180	5,942	△ 238
전북	두수	1,352	1,406	1,465	1,388	△ 77
	농가	802	784	836	779	△ 57
점유율	두수	11.9	12.5	12.9	12.4	△ 0.5
	농가	13.0	12.8	13.5	13.1	△ 0.4



○ (닭) '20년 대비 5.5% 증가, '20년 감소 후 '21년 증가

구 분		'18	'19	'20 (A)	'21 (B)	증감 (B-A)
전국	두수	172,993	172,920	173,312	177,194	3,882
	농가	2,827	2,784	2,827	2,842	15
전북	두수	29,401	31,309	30,142	31,796	1,654
	농가	503	519	524	527	3
점유율	두수	11.9	12.5	12.9	17.9	5
	농가	17.8	18.6	18.5	18.5	-



□ 말산업 현황

○ 말사육 : 152개소 1,306두 * 전국 2,183개소 27,114두

○ 승마장 : 27개소(체육시설업 7, 농어촌형 20)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3개소

- ('13년 지정) 기전대학, 경마축산고, ('16년 지정) 한국마사고

□ 곤충산업 현황

○ 신고현황 : 327개소 * 전국 2,873개소('20년말 기준)

○ 체험학습장 : 5개소(전주 1, 남원 1, 완주 1, 무주 1, 순창 1)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2개소

- ('17년 지정)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 축산시설 현황

구 분	세부현황	비고
가축시장	▸ 11개소(축협 9, 품목조합 1, 비영리법인 1) * 2020년 년간 거래 두수 : 45,382두(일평균 180두)	
종 축 업	▸ 180개소(종돈업 19, 종계업 138, 종오리 23)	
부 화 업	▸ 41개소(닭 33, 오리 8)	
정액 등 처리업	▸ 12개소(소 5, 돼지 7)	
가축인공 수정소	▸ 199개소	
사료 제조업	▸ 489개소(배합 20, 섬유질 20, 단미·보조 334, 수입 109) * (생산능력) 배합 6,279톤/일, 섬유질 1,659톤/일	
가축분뇨 처리시설	▸ 26개소(공동자원화 14개소, 공공처리시설 12개소)	

2 2021년 주요 성과

□ (한우산업) 차별화된 한우 육성계획 수립 및 발전 도모

○ 전북한우의 차별화된 육성전략 수립으로 안정적 한우산업 발전 도모

- 2021년 전북한우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 고능력 암소축군(J카우) 구축으로 전북 한우개량 선도 및 농가 소득 증대

- 지속적인 우량 암소 선발·관리를 통한 J카우 구축으로 전북 한우 개량 선도

※ 전라북도 한우 경제형질 변화

구분	도축두수	도체중 (kg)	등심 단면적 (㎠)	등지방 두께 (㎜)	근내 지방도 (점)	육질등급 출현율 (1++, %)
전국 평균(a)	1,708,602	446.9	94.3	13.8	5.9	24.3
J카우 후대축(b)	18,168	465.2	101.0	13.6	6.7	44.3
증감(b-a)		18.3	6.7	△0.2	0.8	20.0

- J카우 구축을 통한 전북 한우 개량으로 약 129억원 경제적 효과 창출
- 농장 컨설팅 성과분석 및 공유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한우개량 정책 제안

○ 가축시장 거래 소 친자검사 추진으로 전북한우 신뢰도 제고

- 친자일치율(%) : '16년) 71.0% → '19년) 82.6% → '20년) 83.1%

□ (조사료) 고품질 안전한 조사료 유통으로 조사료 이용 확대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 선정으로 조사료 유통 활성화

- 조사료 유통센터 : 1개소 10억(익산군산축협/익산)

* `22년 조사료 유통센터 선정 :1개소 16억(무진장축협/장수)

○ 조사료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한 조사료 생산 기반 구축

- 조사료 잔류농약·유해물질 검사 140건, 적합

* (조사료 유해물질검사) 116건, (사료용 볏짚 잔류농약검사) 24건

○ 조사료 품질등급률 향상으로 조사료 생산 및 소비 활성화

- 사료작물 동·하계 품질검사 : 3,165건 → B등급이상 출현율 81%

* B등급이상 출현율 : (`18) 63.3% → (`19) 82.9% → (`20) 78.2% → (`21) 81%

□ [축산환경] 축산환경 개선 및 친환경축산업 기반 구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 '21년 193호 신규지정

- 총 지정 농장('17 ~ '21) : 전국 3위(926호/ 전국 5,242호, 18%점유)

* **(지정/누계)** '17년 131호 ⇨ '20년 733호 ⇨ '21년 926호 ⇨ **'25년 목표) 1,500호**

○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지속 선정으로 환경개선 활성화

- **('21년/3개년) 5개 시군**(익산, 완주, 진안, 임실, 고창), **228억원 선정**(전국 30개소의 16%)

* (지원계획) '21년/1년차) 97억원 → '22년/2년차) 90억원 → '23년/3년차) 41억원

- **('22년/단년) 3개 시군**(정읍, 남원, 순창), **90억원 선정**(전국 20개소의 15%)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장비,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

○ 축산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축산 전환 확대

- 스마트 축산화 : ('19년) 7.4%(977호) → ('20년) 8.5%(1,119호) * 전농가 : 13천호

○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축종별 모델 기준 마련

- ('21년) 돼지, 닭 → ('22년) 한우, 젖소, 오리

□ [신성장 분야] 축산분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 구축

○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생산 및 가공·유통기반 조성

- **(곤충산업화지원)** 1개소, 1,000백만원, **(가공·유통)** 1개소, 500백만원

* '22년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농식품부 공모 선정 : 1개소(남원시)

○ 2021년 말산업 특구 운영평가 : 전국 2위 달성

- '22년 국비(인센티브) 6억 확보, **(평가대상)** 특구지정 4개소(제주, 전북, 경북, 경기)

○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학생승마체험 및 유소년 승마단 지원 확대

- **(학생승마체험)** : ('20) 3,508 → ('21) 3,757명, **(승마단 지원)** ('20) 2 → ('21) 4개소

○ 양봉산업 공익적 가치 인정에 따른 농민 공익수당 지원

- 양봉농가당 연 60만원(도비 40%, 시군비 60%) 지원

* 농업경영체 농가 중 전라북도 내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 대상

3 2022년 추진 방향

목표 **지속 성장 가능한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추진 방향

- 차별화된 전북 한우(J카우) 개량기반 강화
- 고품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 확대
-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냄새민원 저감
- 축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농가 신 소득원 창출

세부 추진 과제

한우 개량기반 강화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으로 전북 한우 개량기반 강화 ◦ 한우등록 및 선형심사 지원으로 한우 개량기반 마련 ◦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으로 전북 한우 개량 가속화
고품질 조사료 생산	◦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재배면적 확대 ◦ 고품질(B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 확대
사육환경 개선	◦ 중점관리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집중 지원 ◦ 축산냄새 저감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전문조직체 활성화로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구축 ◦ 축산환경개선 교육 접근성 향상 및 전문성 강화
축산업 신성장 기반 구축	◦ (곤충)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말산업)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 및 체험 승마 지원 등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 확대

4 세부 추진전략

□ (한우산업) 차별화된 전북 한우(J카우) 개량 기반 강화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 23천두, 10억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을 위한 J카우 선발에 필요한 친자확인 검사 지원
- 한우 번식농가 번식우 유전능력 평가 분석 및 개량기술 전문 컨설팅* 지원

* 도내 번식농가 300호, 2회/년

○ 암소유전형질 개량사업 : 92천두, 9억

- 한우 등록비용 지원으로 근친교배 예방 및 계획교배로 가축개량 효과 거양
-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우수 후대축 육성을 위하여 선형심사비 지원

○ 가축시장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 60천두, 12억

- 가축시장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로 한우 이력 강화 및 개량 가속화

□ (조사료) 고품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 확대

○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해 재배면적 확대 : 27천ha 515억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 27천ha 339억(일반 19, 전문단지 8)
-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 389천톤, 23억원
- 조사료 종자, 퇴비 구입 및 액비 살포비 지원 : 2개사업 80억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기계·장비 지원 : 45세트 73억

◘ 재배면적 확대 목표 : '22년 27천ha → '24년 28천ha → '26년 30천ha

○ 고품질 국내산 조사료 생산·유통 확대 : 3개사업 44억

- 전문단지 품질등급제 지원 : 1,075ha, 23억
- 안정적 국내산 조사료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료 유통센터 지원 : 1개소 16억
-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인건비 등 관리비용 지원 : 11개 시군 5억

◘ 등급제 면적 확대 : `22년 1,075ha → `24년 1,500ha → `26년 2,000ha

□ [축산환경]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및 냄새민원 저감

○ 중점관리농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저감제, 컨설팅 등 지원 : 10억

- 축산냄새 저감을 위해 중점관리농가 저감제 지원 및 환경개선 컨설팅 추진
-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사후관리 지원
-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확대 분위기 조성 : 5개소

○ 축산냄새 저감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 216억

- 축산악취개선 종합계획 평가를 통해 분뇨처리 및 저감시설·장비 지원 : 8개 시군
- 축산냄새 개선이 시급한 농가에 대한 안개분무시설 지원 : 29개소
- 축산냄새 상시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 : 15개소
- 혁신도시 축산냄새 민원 저감을 위한 미생물배양 지원 : 1개소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및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지원 : 124개소

○ 전문조직체 활성화로 안정적인 가축분뇨처리 시스템 구축 : 77억

- 퇴비 부숙도에 대응하여 전문조직체 육성 및 마을형 자원화시설 지원 : 2개소
- 축산농가 퇴비 부숙 지원을 위한 촉진제 및 고속발효기 지원 : 167톤, 10개소
- 노후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로 안정적인 운영 지원 : 4개소
-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살포비 지원 : 7천ha

□ [신성장 분야] 축산업 혁신성장 기반 구축으로 농가 신 소득원 창출

○ (곤충산업)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 (생산기반) 곤충산업화지원, 유용곤충 사육 지원 : 2개사업 14억
- (가공·유통기반)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 1개사업 5억

○ (말산업)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 및 승마인구 저변 확대

- (기반시설) 말산업 특구(인프라구축) 및 활성화 지원, 승용마 조련 강화 : 3개사업 15.4억
- (승마인구)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농촌관광승마활성화 : 3개사업 20.8억
- (전문인력)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 1개사업 8.3억

Ⅱ 2022년 축산사업 투자계획

▢ 총투자 규모 : 1,321억원

구분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2022년	67	162,250 (100%)	32,723 (20%)	14,839 (9%)	40,246 (25%)	42,063 (26%)	32,379 (20%)
2021년*	67	182,697 (100%)	49,580 (27%)	14,813 (8%)	41,216 (23%)	43,948 (24%)	33,140 (18%)
증 감	-	△20,447	△16,857	26	△970	△1,855	△761

* 2021년 최종예산(결산추경)

☞ 2021년 최종사업비 대비 205억원 감액(△ 11.1%)

▢ 팀별 투자계획

구 분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 계	67	162,250	32,723	14,839	40,246	42,063	32,379
축산진흥	11	11,914	1,774	2,023	4,195	-	3,922
축산경영	24	61,627	7,018	3,576	7,096	30,120	13,817
친환경축산	15	58,431	18,503	5,474	22,511	2,201	9,742
축산환경개선	17	30,278	5,428	3,766	6,444	9,742	4,898

▢ 세부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 계		67개사업	162,250	32,723	14,839	40,246	42,063	32,379
축산진흥	소 계	11개사업	11,914	1,774	2,023	4,195	-	3,922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	1식	110		40	70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3,502건	7,153	<7,152>	1,400	2,592		3,161
	말산업활성화(경상,자본)	23개소,16두,2회	231		45	105		81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	8개소	200		100	60		40
	학생승마체험지원	4,569명	1,467	452	147	446		422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창단4,운영4	400	200		200		
	농촌관광승마활성화	2개소(1,450회)	218	65	20	45		8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자본)	3개소	675	338	101	236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경상)	3개소	150	75	22	53		
	승용마 조련강화	22두	110	44		44		22
	말산업 특구지원	5개 시·군	1,200	600	148	344		108
축산경영	소 계	24개사업	61,627	7,018	3,576	7,096	30,120	13,817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기자재8종	2,314		347	810		1,157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60대	240		36	84		120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	2개소	186		28	65		93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10천두	200		30	70		100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92천두	924		277	647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23천두	1,000		300	700		
	낙농헬퍼 지원사업	2,100일	420		63	147		210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	2종	1,280		192	448		640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	45개소	450		81	189		180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162대	1,620		292	680		648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40톤	800		120	280		400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165두	99		15	35		49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40개소	400		60	140		200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17톤	666		100	233		333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56대	900		450	90		360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5개소	500		250	100		150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112개	225		113	22		90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	60천두	1,200		180	420		600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75두	90	45		45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35개소	30,775				24,620	6,15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44개소	11,000	3,300			5,500	2,200
	학교우유급식 지원	12,305천팩	5,907	3,544	591	1,772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620개	31	9	3	7		12
	곤충산업화지원	1개소	400	120	48	112		120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친환경축산	소 계	15개사업	58,431	18,503	5,474	22,511	2,201	9,742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389천톤	2,333		700	1,633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42대	1,666		250	583		833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333건	133		40	93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1개소	170		31	71		68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	1개소	600		108	252		240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지원	394천톤	23,647	7,094	2,365	11,823		2,365
	조사료전문단지사일리지제조비 지원	170천톤	10,210	5,105	1,021	3,063		1,021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40개소	6,030	603	543	1,266	1,809	1,809
	조사료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	5개소	1,307	392	118	274	392	131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	899톤	2,696	809				1,887
	조사료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	349톤	1,046	523				523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구입비 지원	10,530ha	4,212	2,106		2,106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11개소	520	260		260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33천톤	2,264	1,132	226	680		22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1개소	1,597	479	72	407		639
축산환경개선	소 계	17개사업	30,278	5,428	3,766	6,444	9,742	4,898
	축산환경 개선사업	113개소	565		135	315		115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	1,065개소	225		67	158		
	환경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100개소	100		18	42		40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1개소	270		81	189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24개소	816		122	286		408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1개소	1,000		150	350		500
	퇴비 발효촉진 지원	167톤	835		150	350		335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29개소	1,160		240	560		360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100개소	1,000		210	490		300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5개소	143		30	70		43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보수	2개소	500		250	100		150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10개소	1,520		760	152		608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2개소	2,300	921	207	241	690	241
	축산악취개선사업	360개소	17,984	3,597	1,079	2,518	8,992	1,798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15개소	300	150	45	105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6,802ha	1,360	680	204	476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1개소	200	80	18	42	60	

♣ 축산사업 추진 유의사항 ♣

1 본 자료의 국고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등 중앙부처 사업지침을 발췌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업의 중앙부처 지침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에 관한 중요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준하여 추진 함.

2 본 계획서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3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시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건당 50백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함.

4 본 계획서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공문서로 조치함.

Ⅲ 축산진흥팀 사업계획

1.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도) ····· 15

2.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국가직접) ····· 16

3.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사업(균이) ····· 22

[말]

4. 말산업활성화 지원사업(도) ····· 30

5.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축발) ····· 37

6.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축발) ····· 41

7.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축발) ····· 44

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축발) ····· 48

9.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축발) ····· 51

10.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축발) ····· 54



1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지종남	280-2651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FTA 확대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가축 개량, 품질 고급화, 안전 축산물 생산 등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
♣ 축산농가 단합과 화합을 통한 사기진작 및 축산기술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일　　자 : 2022. 9 ~ 10월중(잠정)
○ 장　　소 : 군산시 일원
○ 주최/주관 : 농협전북지역본부, 익산군산축협
○ 후　　원 : 전라북도, 군산시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축산인 한마음대회 지원사업	110,000	1	110,000 (100%)	40,000 (36%)	70,000 (64%)
※ 한우경진대회 추진 비용 별도 부담					

○ 사업내용 : 한마당잔치, 축산물 브랜드 및 축산 기자재 전시 등
- (부대행사) 한우경진대회 -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 주관 별도 추진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전북도)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 지도,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지역축협) 전북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 (농협 전북지역본부) 한우 경진대회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 자금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은 부담 비율에 의거 집행 및 정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2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국가직접)

담당자	전화번호
지종남	280-2651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 농림축산식품부이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가축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시설 피해 발생시 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 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 지속 확대로 신속한 피해회복 기틀 마련

□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제8조, 제19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건)	사 업 비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4,000	3,502	14,305,092 (100%)	〈7,152,546〉 (50%)	1,400,000 (10%)	2,591,982 (18%)	3,160,564 (22%)

※ 국비는 국가직접 지원, 자부담분의 일부를 시·군비로 대체 가능

- 시·군비 추가 확보시 사전보고 후 지방비 보조율 조정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 사업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 지방비 지원

○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600, 자부담 1,000)/호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국비에 한하여 총 보험료의 50%이내 5천만원 한도 추가지원<국가직접>

【 시·군비 추가지원 】

▸ **남원시** : 4,000천원(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1,000,** 자담 6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5%, 자담 15%

▸ **진안군** : 5,714천원(국비 2,857, 도비 400, 시**군비 1,600**, 자담 857)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28%, 자담 15%

▸ **장수군** : 4,000천원(국비 2,000, 도비 400, 시**군비 1,000**, 자담 6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5%, 자담 15%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업허가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지원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지방비 지원 제한사항 】

◈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 지원 제외

◈ 소 1천두, 돼지 1만두(비육돈*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 비육돈 :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 (축산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

○ 지방비(도비, 시군비) 지원기준

- **(선착순 지원)** 보험계약일이 빠른 가입자부터 선착순 지원
- **(축산농업인·법인당 1회 지원)** 연도내 농가당 1회만 지방비 지원,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계약자가 지방비 지원금이 많은 계약 선택 가능
- **(증액시 미지원)** 계약변경으로 보험료 증액시 추가 지방비 지원은 불가
- **(지원지역 기준)** 지방비 지원은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상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원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예: 꿀벌)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의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방비 지원

※ 재해보험 사업자 :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 》

- 사업계획 확정 시달 및 사업추진 지도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

- 선착순 지원 및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하여 홍보 철저
- 지원기준 적합여부 확인(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업경영체 정보 등)
- 보조금(지방비) 지급 (분기별 정산 보험료 보험사 지급)
  - 보험 가입실적에 따라 대상자 적격여부, 적정 보험료 산정 등을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보험사에 정산입금 조치(조기 집행 등 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시·군 가축재해보험 담당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가입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http://api.apfs.kr) 시스템 활용 필수
  - 농가 가입정보, 지방비 잔액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험사 보험료 정산 자료(agrix 커뮤니티 업무공지 게시판)에 따라 적기 지방비 지원

《 보험사 》

- 시군에서 요청 시 가입자 내역 등 재해보험 관련 자료 제출 협조
-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이행과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농가 설명
- 보험가입 처리 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시·군에 지방비 청구

【 보험가입 절차 】

◈ 보험가입안내(대리점 등) → 가입신청(농가) → 사전 현지확인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 보험증권 발급

* **사전 현지확인: 법정 전염병 발생으로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략 가능**

○ 자금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부적정한 대상자가 예산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금은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농가당 지원액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홍보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서식 1)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수시로 배정된 사업비를 점검하여 보조금이 초과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 철저

○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가 많거나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시·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가능

※ 시·군비 추가 확보 시 반드시 사전보고 후 지방비 보조율 조정 (도비 지원한도 : 400천원)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농가에서 보험사업자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가가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게재, 이장회보, 반상회보, 마을방송 활용 및 축산분야 농가교육 시 적극 홍보

○ 추진일정

- 2022년도 사업 지침 통보(도 → 시군) : '22. 1월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도) : '22.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시군) : '22. 2. ~ 10월(분할 송금)
- 사업정산보고(시군 → 도) : '23. 1월중(서식 1)

【 서식 1 】

가축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

【 총 괄 표 】 (단위 : 원)

시군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보험사 환급금 (도비ⓑ)	도비 반환금 ⓒ (ⓐ+ⓑ)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	시군비		

【 축 종 별 】

시군	축종 구분	보험 가입 건수	가입 축종 마릿수	보 험 료 집 행 액 (단위 : 원)											
				총 계				가 축				축 사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	자부담	합계	도비	시군	자부담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건,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502	14,305,092	7,152,546	1,400,000	2,591,982	3,160,564	
전주시	13	50,000	<25,000>	5,000	7,500	12,500	
군산시	63	250,000	<125,000>	25,000	37,500	62,500	
익산시	395	1,580,000	<790,000>	158,000	237,000	395,000	
정읍시	420	1,680,000	<840,000>	168,000	252,000	420,000	
남원시	495	1,980,000	<990,000>	198,000	495,000	297,000	
김제시	387	1,548,000	<774,000>	154,800	232,200	387,000	
완주군	193	770,000	<385,000>	77,000	115,500	192,500	
진안군	178	1,017,092	<508,546>	71,200	284,782	152,564	
무주군	115	460,000	<230,000>	46,000	69,000	115,000	
장수군	290	1,160,000	<580,000>	116,000	290,000	174,000	
임실군	220	880,000	<440,000>	88,000	132,000	220,000	
순창군	143	570,000	<285,000>	57,000	85,500	142,500	
고창군	300	1,200,000	<600,000>	120,000	180,000	300,000	
부안군	290	1,160,000	<580,000>	116,000	174,000	290,000	

3 가축시장「코로나19」대응시스템 구축사업(균이)

담당자	전화번호
지종남	280-2651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경매 실황 현장 실시간 방송송출 등을 통한 방문자 수 최소화 유도로 가축방역 및 감염병 예방효과 제고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에 직면한 시점에 '비대면 거래' 제고를 통한 감염병 지역확산 사전예방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담
가축시장「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25,000	8	200,000 (100%)	100,000 (50%)	60,000 (30%)	40,000 (2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 사업대상 : 도내 가축시장

○ 사업내용 : 가축시장 비대면거래 제고 시스템 도입

- 자금용도 : 가축시장 비대면 거래 제고 시스템 구축 (카메라 등 방송송출 설비, 무선공유기, 경매운영 PC, 전광판 설치 등)

* 온라인 가축경매시스템 지원제외(농협경제지주 전국단위 적용시스템 개발중)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가축시장 운영 기관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시·군에 신청(2.11일한)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
  -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해당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사업추진 타당성,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근거 등

○ 사업 확정 및 시행단계

《 도 》

- 시군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 및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 시·군 》

-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도비(균특이양), 시·군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 시군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 추진
- 당초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군에서는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함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자금 집행 및 정산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집행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정·정산

《 보조사업자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등 집행

▢ 사후관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가능

-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장비 등은 가축시장의 비대면 거래 제고 용도로만 사용

○ 시·군에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부진 또는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사후관리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준용 (기계·장비 사후관리기간 5년)

- 사후관리 기간까지 지원 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등 조치

▢ 행정사항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2월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12월말

【 서식 1 】

2022년 가축시장「코로나19」대응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청자</td><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대표자명</td><td></td></tr>
<tr><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td><td>주요사업</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가축시장명</td><td rowspan="2"></td><td>가축시장 개설일자</td><td colspan="2"></td></tr>
<tr><td>전자경매시스템 도입일자</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신청내역</td><td>사 업 명</td><td colspan="4">가축시장「코로나19」대응시스템 구축 지원사업</td></tr>
<tr><td>사업예정지</td><td colspan="4">주소 기재</td></tr>
<tr><td>사업목표 및 내용 (요약)</td><td colspan="4">○
○
* 세부사업계획서 별첨</td></tr>
<tr><td rowspan="2">사업비 (천원)</td><td>계(100%)</td><td>균특이양(50%)</td><td>시・군비(30%)</td><td>자담(20%)</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2022년 가축시장 코로나19 대응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가축시장「코로나19」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서

2022. 1. .

지 자 체 : OO시·군

신 청 자 :

가축시장「코로나19」대응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서

1. 배경 및 목적

○

※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가축시장「코로나19」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 위　　치 :

○ 주요시설·설비 :

- *(OO시설) _ 간단히 설명*
- *(OO장치) _ 간단히 설명*
- *(O O O) _ 간단히 설명*
- *(O O O) _ 간단히 설명*

○ 총사업비 :　　천원

* 재원별 : 도비(균특이양) 000,000, 시군비 00,000 , 자담 00,000

○ 사업기간 :

○ 사업위치도

3. 사업계획

가.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내용	산출근거	사업량	사 업 비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담
합계		0	0	0	0	0
(OO설비)						
(OO설비)						
(OO장비)						
(OO장비)						
(기타장비)						

○ 시설·장비 설치 내용 등 상세내역

○ 시설·장비 설치 도면 등

나. 사업추진 단계 등 일정 상세내역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O설비)												
(OO장비)												
(OO장비)												
…												

다. 가축시장 운영계획

○ 가축거래방법

-

○ 매매 수수료

-

○ 연도별 거래두수 및 예상두수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상)	비 고
가축시장(內) 거래두수				
방문자수				
개장일수				

라. 기대효과 등

○

-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4 말산업활성화 지원사업 (도)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말의 생산·조련·이용 및 말 문화 홍보 등 사육농가 생산성 향상과 말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승마산업 발전 도모

♣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전한 승마활동 지원으로 승마산업 활성화 유도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대상 : 말 사육·생산농가 및 「말산업육성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 사 업 비 : 231,000천원(도비 45,000, 시군비 105,000, 자담 81,000)

○ 사업계획 및 세부내역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두)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말산업활성화 지원사업		**41**	**231,000**	**45,000**	**105,000**	**81,000**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		**33**	**167,000**	**35,400**	**82,600**	**49,000**
승용마 조련비 지원	5,000	6	30,000 (100%)	4,500 (15%)	10,500 (35%)	15,000 (50%)
승마장 안전 지원	4,000	15	60,000 (100%)	9,000 (15%)	21,000 (35%)	30,000 (50%)
말 번식(교배) 지원	800	10	8,000 (100%)	1,200 (15%)	2,800 (35%)	4,000 (50%)
재활승마한마당	29,050	1	29,000 (100%)	8,700 (30%)	20,300 (70%)	
말문화축제 지원	39,050	1	40,000 (100%)	12,000 (30%)	28,000 (70%)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		**8**	**64,000**	**9,600**	**22,400**	**32,000**
사육시설 개선지원	8,000	8	64,000 (100%)	9,600 (15%)	22,400 (35%)	32,000 (50%)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실정에 맞게 변경 지원가능하나 재원비율을 준수하고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변경사항은 도에 보고

□ 세부 추진요령

○ 내역별 세부내용

- **승용말 조련* 및 번식 지원** :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 거점조련센터 또는 한국마사회의 승용마 조련 협력시설에 위탁 조련

** 조련 대상 승용마 : 2 ~ 6세 국산 승용마

(대상자 선정 주의사항)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말 사육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번식용 말 보급사업(도 자체사업)에 따른 도입말 및 생산자마에 우선 지원

- **승마장 안전지원** : 관련법에 의거 신고를 득한 승마장

- **말문화축제지원** : 공모 선정된 말 문화축제 지원사업

- **재활승마한마당** : 공모 선정된 재활승마한마당 지원사업

-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 : 말사육농가 및 신고를 득한 승마장

㉮ 우선순위

(승 마 장) : ① 영세승마장, ② 학생승마체험에 필요한 안전시설 수요자

(사육농가) : ①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② 경주마 생산농가, ③ 다두 사육농가

* 전문승용마생산농가 : 보조사업(번식용말보급사업)에 따른 생산농가

㉯ 지원품목

(승 마 장) : 사육시설(마사) 및 실내·외마장, 안전펜스, 세마장 등 개·보수 등

(사육농가) : 사육시설, 말운동장, 운동장펜스, 세마장, 보정틀 등

㉰ 품목별 세부내역

(마사) 기존 축사시설 개보수 가능하며, 마사 내부는 목재 재질로 마감·시공하여 말 부상방지

(마장 개보수) 모래·부직포 교체 등 실내·외 마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

(안전펜스) 0.8m 이상의 목책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휀스

(세 마 장) 동절기 동파방지 및 온수 시설을 구비할 것

(말운동장) 모래 또는 마사를 복토한 야외 말 운동시설

(원형마장) 안전펜스 및 원형주로 내 비가림 시설 지원, 햇빛이 투과하지 않도록 시설(천막 등)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 완료시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등 자체 점검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에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행정사항

○ 신청서(서식 1) 제출(사업대상자→시·군) : ’22. 1. 14일

○ 사업대상자 선정 내역(서식 2) 제출(시·군→도) : ’22. 1. 21일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시·군→도) : ’22. 1. 28일

○ 사업 완료 및 정산서(서식 3) 제출(시·군→도) : ’22. 12월 한

【 서식 1 】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자택)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시설명 (농장·승마장명)	사육 현황(품종별)				시설 현황	
	계	000	000	000	동	㎡

▢ 신청내역

(단위 : 개소·두, 천원)

사 업 명	세부내역	신청량	단 가	소요사업비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 세부내역에 조련, 번식, 안전(보험.장비), 시설개선 등 표기

상기와 같이 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 승용마 조련비 지원

사업대상자		마명(마번)	품종	연령(개월)	등록여부	사업비(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승마장 안전지원

사업대상자		사육두수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승마장명	대 표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말 번식(교배)지원

사업대상자		품종	연령(개월)	사업량(두)	등록여부	사업비(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대상자		시설구분(농가, 승마장)	세부사업 신청내역	사업비(천원)				비고
성 명	주 소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서식 3 】

사업추진 실적(정산) 보고

구 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원)									
			계 획				실 적				잔 액	
	계획	실적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 내역사업별 구분 작성
※ 정산보고 시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보험증서, 장비구입내역 등) 사본(사진) 첨부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개소, 천원)

구 분	합 계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1	231,000	33	167,000	8	64,000	
전주시							
군산시	2	12,000	1	4,000	1	8,000	
익산시	7	40,000	4	16,000	3	24,000	
정읍시							
남원시	1	4,000	1	4,000			
김제시	9	60,600	8	52,600	1	8,000	
완주군	4	49,600	3	41,600	1	8,000	
진안군	3	13,000	3	13,000			
무주군							
장수군	1	5,000	1	5,000			
임실군							
순창군	5	14,400	4	6,400	1	8,000	
고창군	8	28,400	7	20,400	1	8,000	
부안군	1	4,000	1	4,000			

5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승마체험 지원을 통해 정서 함양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미래 승마인구 창출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로 말산업 지속 성장 기반 마련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320	4,569명	1,466,580 (100%)	452,010 (30%)	146,658 (10%)	445,992 (30%)	421,920 (30%)

○ 사업내용 :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승마체험 지원

※ 일반 초·중·고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4,395명 (지원단가 32만원 : 보험료 2만원 포함)

※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등 학생 : 129명 (지원단가 32만원 : 보험료 2만원 포함)

※ 장애학생 등 재활승마 : 45명 (지원단가 42만원 : 보험료 2만원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대상

- **(사업운영 신청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 「말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 **(채험 신청자)** 일반승마체험 및 사회공익 승마체험

① 일반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자 자격 요건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②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학생 체험승마 기준 >>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판단 하에 기승시간은 20~30분 범위 내로 조정 가능(조정사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 준수)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 》

-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비 배정,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승마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접수 및 적정성 검토 후 도에 신청
- 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을 해당 사업장에 배분·통보
- 승마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 체험 승마시설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시 출석기록부, 체험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 계획서에 따른 승마시설이 구비요건 및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참여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 강구 시행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에 변경 승인 신청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
-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학교 및 단체 등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
  (체험 참여 학생들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

《 승마시설 》

-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후 시·군 및 학교에 서류 제출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시·군에 보고
- 승마체험자 자부담 납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에 보고
- 승마체험사업 시행 전 승마체험자 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관련 증빙을 시·군에 보고(위반한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페널티 부여)
- 적정인력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출석기록부 관리 철저

○ 자금집행 및 정산

- 승마체험 총 횟수(10회)를 채우지 못한 경우, 승마체험 횟수에 따라 자부담, 지방비, 국비보조를 비율별로 계산하여 자금 집행
- 승마 관련 보장이 확인된 기승자보험 기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2만원을 제외한 금액 배정
- 시·군은 사업 종료 후, 승마시설 또는 교육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을 확인하여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도에 보고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계		일반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				비고
	사업량	사업비	기초형		자유학기제		생활승마		재활승마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계	4,569	1,466,580	4,398	1,397,760	27	8,640	129	41,280	45	18,900	
전주	340	108,800	320	102,400			20	6,400			
군산	980	314,100	975	312,000					5	2,100	
익산	1,070	345,400	1,000	320,000			40	12,800	30	12,600	
정읍	658	210,560	658	210,560							
남원	210	67,200	200	64,000			10	3,200			
김제	175	56,000	160	51,200			15	4,800			
완주	259	83,880	240	76,800			9	2,880	10	4,200	
진안	255	81,600	250	80,000			5	1,600			
무주											
장수	152	48,640	152	48,640							
임실											
순창	65	20,800	90	19,200			5	1,600			
고창	165	52,800	123	39,360	27	8,640	15	4,800			
부안	240	76,800	230	73,600			10	3,200			

6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농어촌 지역 외승관광승마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관광 소비 활성화 및 경기 부양 유도
♣ 지역 경제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승마문화 확산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명)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150	1,450명	218,000 (100%)	65,000 (30%)	19,500 (9%)	45,500 (21%)	88,000 (40%)

○ 지원한도 : 150천원/ 1회(2시간기준) * 최대 3회/ 인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자)**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 사업자 등록 및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체육시설

- **(최종 수혜자)** 외승에 관심있는 단독 기승이 가능한 일정수준 이상의 국민

  * 승마장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지원자격 및 요건-외승 프로그램 신청자 요건 확인)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외승 활성화를 위해 외승에 관심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 》

-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비 배정,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

-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 희망자 수요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타당성 등 검토
- 사업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미 이행시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즉시 도에 보고

《 승마시설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통지

○ 자금집행 및 정산

- 시·군은 사업 대상자로부터 월별 집행계획서 및 집행 근거서류를 제출받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
- 시·군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도에 보고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450	218,000	65,000	19,500	45,500	88,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890	134,000	40,000	12,000	28,000	54,000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560	84,000	25,000	7,500	17,500	34,000	
부안군							

7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유소년 승마단 육성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로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시군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사업		8	400,000	200,000	200,000
창단지원	80,000	4	320,000 (100%)	160,000 (50%)	160,000 (50%)
운영지원	20,000	4	80,000 (100%)	40,000 (50%)	40,000 (50%)

○ 지원한도 : 창단지원 80,000천원, 운영지원 10,000~30,000천원

* 운영지원 사업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단,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음)

○ 지원대상

- **(사업 신청자)**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 초·중학교 운영 중인 승마단
  - 창단지원 : 승마장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운영지원 : 유소년 승마단 운영기간(창단일 ~ 사업공고일)이 1년 이상이고, 승마대회 활동실적(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등)이 있는 시·도(시·군), 승마장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최종 수혜자)** 유소년 승마단원

○ 사업내용 : 승용마·승마용품·안전장비 등 구입 및 교육·훈련대회 참가 비용 등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금 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창단	운영
말 구입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총 사업비의 40~60%	미해당
물품구입 (창단,운영)	■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40%
운영경비 (창단,운영)	■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40~60%	총 사업비의 60~100%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승마대회 참여 1회 이상 의무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 》

- 사업수요조사 및 신청서류 검토,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

-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 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사업 희망자 수요 조사 실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신청서) 및 증빙서류, 타당성 등 검토 및 도에 제출
- 사업 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미 이행시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즉시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

-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신청
-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즉시 시·군에 보고
- 적정 인력(코치)의 상시 고용체계 유지 및 승마단 규모(6명 이상) 유지・운영

《 사업자 선정 》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사업량을 시・도에 통보

○ 자금집행 및 정산

- 시·군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도에 보고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관리 : 포니, 안장 등 구입일로부터 5년간 관리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8	400,000	200,000		200,000		
전주시							
군산시	1	20,000	10,000		10,000		
	○ 운영 1(피터팬승마장)						
익산시	5	340,000	170,000		170,000		
	○ 창단 4(익산승마장, 호남승마클럽, 샤르망승마장, 호남제일승마장) ○ 운영 1(에벤에셀승마장)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1	20,000	10,000		10,000		
	○ 운영 1(용담승마클럽)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1	20,000	10,000		10,000		
	○ 운영 1(순창 공공승마장)						
고창군							
부안군							

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말산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교육기반 및 인력 배출 기반을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 도모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10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도(시·군)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운영평가 차등지원	3	825,000 (100%)	412,500 (50%)	123,750 (15%)	288,750 (35%)

* 운영실적 평가 후 예산 범위내 기관별 차등 지원

○ 사업대상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운영실적 평가가 완료된 1차 양성기관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육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자본보조 : 설비 및 기자재 지원
- 경상보조 : 기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시·군) 》

- 도(시·군)은 사업시행지침 및 수요조사 계획, 사업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을 관할 소재 양성기관에 안내
- 사업비 배정,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사업대상자(양성기관) 》

- 사업계획서를 양성기관 소재 시·군에 제출
- 사업 시행 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도(시·군)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군) 》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심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및 도(시·군)은 전년도 양성기관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 양성기관 사업 종료 후, 양성기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 시행
- 양성기관 사업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및 페널티 부여 가능
- 평가결과, ‘미흡’ 및 ‘부적합’ 기관에 대한 컨설팅 시행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개소	825,000	412,500	123,750	288,750		
(자본)		675,000	337,500	101,250	236,250		
(경상)		150,000	75,000	22,500	52,5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1개소	412,500	206,250	61,875	144,375		
(자본)		337,500	168,750	50,625	118,125		
(경상)		75,000	37,500	11,250	26,250		
김제시	1개소	275,000	137,500	41,250	96,250		
(자본)		225,000	112,500	33,750	78,750		
(경상)		50,000	25,000	7,500	17,50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1개소	137,500	68,750	20,625	48,125		
(자본)		112,500	56,250	16,875	39,375		
(경상)		25,000	12,500	3,750	8,750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9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승용마 생산농가의 승용 조련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승용마 조련 활성화로 국산마의 안전성 및 부가가치 향상

♣ 국산 승용마 위탁조련 지원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승용마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14조, 제19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시군비	자담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5,000	22	110,000 (100%)	44,000 (40%)	44,000 (40%)	22,000 (20%)

○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 말 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 사업 시행연도 기준 2~6세의 국산 승용마

○ 사업내용 : 2~6세의 국산 승용마를 대상으로 정부 및 말산업육성 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조련시설에서의 3~6개월 위탁조련, 경매 준비 및 참여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 》

- 사업수요조사 및 신청서류 검토,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

-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서·관련 증빙서류 검토, 자체평가 결과를 도에 제출
- 계획을 변경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사유와 내용을 즉시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사업취소 및 변경시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 대상마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이행여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미 이행시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군은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대상자 》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사업비 집행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등을 시·군에 제출
- 조련 대상마는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동안 「가축재해보험증권」 가입 권장

《 위탁조련시설 》

- 계약 체결 후 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 제출
- 조련 완료 후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을 통해 조련완료 여부 점검 추진

  * 단,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주관 품평회에서 등급 획득 또는 어린말 승마대회 완주 실적이 있는 경우 점검 절차 생략 가능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 자금집행 및 정산

- 시·군은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도에 보고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2	110,000	44,000		44,000	22,000	
전주시	3	15,000	6,000		6,000	3,000	
군산시	2	10,000	4,000		4,000	2,000	
익산시	8	40,000	16,000		16,000	8,00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2	10,000	4,000		4,000	2,000	
완주군	5	25,000	10,000		10,000	5,000	
진안군	1	5,000	2,000		2,000	1,0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1	5,000	2,000		2,000	1,000	
고창군							
부안군							

10 말산업 특구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유 청	280-463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말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하여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

▢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20조, 제22조, 제25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말산업 특구 지정 지자체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시·군)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말산업특구지원사업	지역사업별 단가 상이	5	1,200,000 (100%)	600,000 (50%)	147,600 (12%)	344,400 (29%)	108,000 (9%)

○ 사업내용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특구 지정 지자체(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 시행절차



※ 전년도 특구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특구지역별 예산 규모 확정

- '21년 말산업 특구 운영평가 결과 : 전국 2위 달성(인센티브 국비 6억 확보)

□ 세부 추진요령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절차

《 도(시·군) 》

- 도(시·군)은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확보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수요조사(대상자선정 등) 및 세부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검토하여 승인 후 농식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배정, 보조금 교부, 사업완료 후 정산

《 시·군 》

-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등 자체계획을 작성·검토 후 도에 제출
-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 여부(분기별 1회) 및 보조금 운영실태(연 1회) 등 점검
- 사업대상자가 사업취소 및 사업계획 변경시 즉시 도에 보고
- 시·군은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집행

《 사업대상자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통지

○ 기타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 말산업 특구 운영평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차등 배정

※ 말산업 특구 평가단을 운영하여 서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PT)를 실시

《 도(시·군)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산업 특구 운영평가 계획 수립시 평가 대응 추진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식, 천원)

구 분	사업량 (식)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5	1,200,000	600,000	147,600	344,400	108,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1	400,000	200,000	51,000	119,000	30,000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1	60,000	30,000	3,600	8,400	18,000	
완주군	1	340,000	170,000	51,000	119,000		
진안군	1	200,000	100,000	12,000	28,000	60,000	
무주군							
장수군	1	200,000	100,000	30,000	70,000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Ⅳ 축산경영팀 사업계획

[한 우]
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도) ····· 59
2.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도) ····· 85
3.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균이) ····· 93
4.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축발) ····· 98

[낙 농]
5. 낙농헬퍼 지원사업(도) ····· 101
6.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균이) ····· 105
7.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축발) ····· 110

[곤 충]
8.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도) ····· 112
9.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균이) ····· 120
10. 곤충산업화지원 사업(국비) ····· 133
1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FTA기금) ····· 136

[양 봉]
12.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도) ····· 138
13.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 150
14.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도) ····· 159
15.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FTA기금) ····· 175

[기타 축종]
16.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도) ····· 178
17.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균이) ····· 185
18.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축발) ····· 193

[시설 및 기자재 등]
19.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도) ····· 196
20.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도) ····· 207
21.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도) ····· 213
22.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도) ····· 224
23.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도) ····· 232
2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FTA기금) ····· 240
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FTA기금) ····· 241

1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전북 고능력 암소를 선발·관리·유지하여 우량 송아지 생산 및 개량 가속화로 전북 한우만의 차별성을 극대화하여 농가소득 향상

☐ 근거법령

○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전북도, NH농협 전북지역본부(축산사업단, 지역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시군지회)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구분	단가 (천원)	사업량	사업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	23,288두	1,000,000 (100%)	300,000 (30%)	700,000 (70%)
친자확인검사 (DNA검사)	(시료채취) 9.6 (친자확인검사) 18.1 (DB관리 및 운영) 1.5	23,288두	680,000 (100%)	204,000 (30%)	476,000 (70%)
외모심사	(외모심사) 10	14,000두	140,000 (100%)	42,000 (30%)	98,000 (70%)
컨설팅 지원	(농장 컨설팅) , 300	(농장) 600회	180,000 (100%)	54,000 (30%)	126,000 (70%)

※ (친자확인검사) 시료채취기관(지역축협 등)은 해당 업무담당자에게 시료채취비용의 50% 이상을 인센티브 예산으로 지급

※ 컨설팅 지원 : (농장컨설팅) 300호×300천원/호×2회/년 ≒ 180백만원

* 농장컨설팅 300천원/호 = 자료분석 75천원/호 + 현장컨설팅 225천원/호

○ 사업내용

- (친자확인검사) J카우 및 J카우에서 생산된 송아지(후대축)의 친자확인검사 검사 비용, DB관리 및 운영비 지원
- (외모심사) J카우 후보축의 외모심사비 지원
- (컨설팅 지원) J카우 등록농가의 농장을 방문 등을 통해 한우 개량에 관련된 전문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

- (친자확인검사) 예비 J카우 및 J카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 J카우 선발 등에 필요한 개체 검사 가능
  - J카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검사는 암송아지 우선 추진
- (컨설팅 지원) J카우 등록 농가(등록 두수에 따른 농가 선정)

○ J카우 선발기준 : 도내 사육중인 한우 암소 중 아래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개체(J카우)로, 친자확인검사 결과 아비소가 일치하는 개체

- 후대축 도축성적 기준(등심단면적100㎠, 등급 1+이상, 도체중 480kg이상)
- 혈통 등록우 이상, 외모심사 79점 이상, 보증씨수소 유전능력 평가 선발 (혈통등록 2계대 이상, 13개월령 이상 암소, 선발지수 순위 상위 20%이내)
- 한국 종축개량협회 결과 아비소가 일치하는 개체

【 지원제외 】

◈ 무허가 한우 정액 보관 및 사용 농가 사업제한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동-10747(2019.10.30.)호]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년) 사업제한

▢ 세부 추진요령

○ J카우 선발 및 관리

《 J카우 선발 》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선발 기준을 충족하는 개체(예비 J카우)를 해당 시군 및 시료채취기관에 2월 중순까지 통보
- 시군에서는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1)를 2월 말까지 받아 시료채취기관에 통보(2월 이후에 수시 신청 및 통보)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는 J카우 선발기준 ②에 해당되는 개체의 외모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료채취기관에 통보(6월한)

  * 통보 주기는 시료채취기관과 협의
- J카우 선발기준 ③에 해당되는 개체의 외모심사는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우량한우 암소(Elite Cow) 선발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료채취기관에 통보
- 시료채취기관에서는 예비 J카우의 친자확인검사 시료를 5월까지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친자확인검사기관에서는 6월까지 검사결과를 시료채취기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에 통보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친자확인검사 결과 아비소와 일치하는 개체를 J카우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도, 시군, 시료채취기관 및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에 통보

  ※ 필요 시 하반기에 추가 선발
- 시료채취기관에서는 농장주에게 선발된 J카우 결과를 통보

《 J카우 관리 》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에서는 12월말 기준 조성된 J카우별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여 하위 10% 미만 개체 및 타 시도 반출 개체에 대해 다음 해 1월까지 도태

  * 유전능력평가 : 기존 보증씨수소 기준의 유전능력평가에 J카우 개체의 선대, 형제자매, 후대축 도축성적 등을 반영

○ 후대축 검사

- 시료 채취기관에서는 선발된 J카우에서 송아지가 출생되었을 때 송아지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DNA 검사 의뢰

  * 사업비 내에서 암송아지 우선 추진

- DNA 검사기관에서는 검사결과를 시료채취기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에 통보

- 후대축 등록(친자일치) 개체 중 가축시장 거래 시 아래 기준 충족할 경우 “J카우 후대축” 의무 표기하여 경매 진행

  ① 생후 8개월령 이하 송아지

  ② 발육상태가 양호하며 체고(키) 암 105㎝, 수 110㎝ 이상인 송아지

○ 친자확인검사(DNA검사)

- 검사기관 : 전북대학교, miDNA유전체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검사방법』(농식품부 고시)의 기준 적용

- 검사결과 :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지역축협 등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유전자형 포함)에 제출

  * 검사시료는 모니터링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DNA 검사 모니터링

  • 주관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

  • 검증기관 : 소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DNA검사기관(축산과학원 인증)

◈ 경기(동물위생시험소, 한경대, 농협축산연구원), 강원(강원대산학협력단), 충북(동물위생시험소), 충남(GTNR), 전북(동물위생시험소, miDNA,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전남(동물위생시험소, 순천대), 경북(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경남(동물위생시험소, 경상대 GAST), 제주(축산진흥원) - 16개소

  • 검사주기 : 연 2회 이상 * 시기 및 횟수는 조정 가능

  • 검증방법 : DNA 검사기관의 검사결과를 대상으로 기관별 30두/회를 난수 선정하여 재검을 통해 검증

  • 검증절차 : DNA 검사기관 결과 취합 → 검사기관별 검증 대상축 선정(난수표 활용, 종축개량협회) → 대상 시료 수거 및 검사기관 검사의뢰(종축개량협회) → 검사결과 통보(도 축산과)

  • 결과조치 : 검증결과 5% 이상 불일치 시 DNA 검사기관에서 제외

○ 농장 컨설팅 지원

- 사업주관 :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전북농협 축산사업단
- 사업대상 : 300호
- 사 업 량 : 600호 * (농장) 300호, 연 2회
- 사업내용
  - (농장) 유전능력평가 분석기관의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현장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 단위의 개량 컨설팅 지원
  - (집합) 농장에서 활용 가능한 개량 방법(계획교배, 번식 등) 등 전문 강사를 통한 집합컨설팅 지원

《 농장 컨설팅 》

☞ **컨설팅 업체선정**

- 유전능력평가자료 분석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컨설팅 기관 : 4팀 내외(권역별)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컨설팅 기관 자격요건
  - 구성내역(반) : 개량 종합 1명, 현장전문(사양, 번식 등) 1명 이상
    * 최소 2인 1조 필수
  - 참여자격 : ① 한우 개량 관련 산학협력단, ② 한우암소검정사업 개량 컨설팅 참여기관(최근 3년), ③ 민간 한우 관련 전문 컨설팅 기관(경력 3년 이상) * 도내 기관 우선 선정
- 선정절차 : 사업주관기관 컨설팅업체 신청접수(서식2) 및 사전 검토(2월)
  → 도 운영협의회를 통해 최종 선정(3월초)

※ 컨설팅업체와 계약체결(서식 3, 4 참고)

☞ **컨설팅 대상선정**

- 대상 우선 기준 : ① J카우 등록 농가 중 가임암소 20두 이상
  ② 혈통등록율(암소)이 높은 농가
  ③ J카우 등록두수가 많은 농가

* 자료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 제공

- 선정절차 : 시군별 컨설팅 사업량 배정에 따른 대상자 선정, 농장 컨설팅 정보제공 동의서(서식 5) 취합 및 전달(시군 → 도 → 사업주관기관)

☞ **<u>컨설팅 절차</u>**

- 사업주관기관은 자료분석기관(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 수행계획서』(서식6)를 받고 컨설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등과 협력하여 추진
-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방문계획, 지역별 담당 컨설턴트 내역 등을 시군에 제출
- 컨설팅업체는 대상별 컨설팅 일정을 자료분석기관에 제출하고 자료분석기관은 컨설팅업체 및 사업주관기관에 분석자료 제공(세부 일정은 분석기관과 컨설팅업체 조율)

  * 자료분석기관은 원활한 컨설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컨설팅업체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해당 농장주로부터 컨설팅을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컨설팅 확인증)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서식7)
- 반기별 컨설팅이 종료되면 사업주관기관은 컨설팅업체로부터 컨설팅 결과(컨설팅 확인증)를 취합하여 시군에 보고(7월, 12월)

  * 자료분석기관에 컨설팅 결과 제공(분석목적)
- (주요 컨설팅 내용) 농장별 보유 암소의 유전능력 평가결과 설명, 계획교배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정액 사용법 등 한우개량 기반마련에 대한 사항 등
- 컨설팅 시기 : 3 ~ 11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단위 DB 구축

- 관리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
- 관리체계 구축 방법
- 관리대상 : J카우(후대축 포함) DB 관리

  (친자확인 검사결과, 도축성적, 농가별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

- 관리방안 : 도내 유전능력 평가시스템 구축으로 J카우 차별화, 시군별, 농가별 지속적 J카우 유전정보 제공
  - 시군별 고능력 암소집단 유지 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시스템 구축
  - 도태기준 적용을 위한 유전능력평가 분석

○ 지역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 목　　적 : 유관기관의 J카우 사업 독려 및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
- 주관기관 : 시군
- 유관기관 : 시군, 축협, 전북한우협회 시군지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수정사협회, 컨설팅업체 등
- 네트워크 구성 : 시군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성
- 운영시기(주기) : 연 4회 이상(분기별)
- 운영방법 : 유관기관 협력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 독려
  - 우량 암소 선발 세부계획 수립
  - 자료 수집 관련 협의 및 주체별 역할 분담
  - 평가 및 해결 방안 모색
  - 컨설팅 사업추진 계획 등 협의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보증씨수소 정액공급

◈ '22년 정액공급은 상반기에 '21년 미지급분 공급 후 종료 예정
('22년 신규 신청은 없음)
- 보증씨수소 조기 도태에 따른 공급 종료(추후 선발 시 공급 추진)

- 목　　적 : 도내 육종센터(축산시험장)에서 생산된 우수 정액을 J카우에 우선 공급하여 개량효과 증대
- 보증씨수소 보유 현황('21.12월 기준) : 3두

* 3두 : KPN 1254(등심형), KPN 1321(증체형), KPN 1320(보급형)

- 주관기관 :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
- 공 급 량 : 평균 월 1천 스트로(Str.)/두　* 월 생산 2천 스트로(50% 배정)
  - 공급량은 정액 생산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액공급 및 이용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J카우의 계획교배 정액으로 우선 공급
  • 계획교배 시 유전능력 및 근친도를 고려하여 배정
- 공급체계 : 시군별 정액 배정(J카우 등록비율) → 시군에서 농가별 배정 및 배정내역 축산시험장 제출 → 축산시험장에서 월별로 농가(시군) 배정 → 한우개량사업소 정액 공급
  * 정액공급체계는 축산시험장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향후계획 : 보증씨수소가 육질형, 등심형, 증체형, 정육형으로 선발 될 경우 J카우에 우선 배정토록 함(권장 또는 보급형은 축산시험장 상황에 따라 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지역축협은 선발된 J카우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지역 가축시장에 출하 시 『J카우 송아지』 및 DNA 검사 결과 등 관련 유전능력 정보 표기

□ 사업비 집행

○ 친자확인검사 집행
- 시료채취기관(지역축협 등)은 시료채취 및 검사가 완료된 개체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를 지급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시군은 상황에 따라 지급절차 변경 가능
- 시료채취기관(지역축협 등)은 검사기관(검사비)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DB관리 및 운영비)에 지급

○ 컨설팅 지원 집행
- 농장 컨설팅비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자료분석기관의 분석자료,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 이행 여부 등 확인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지급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검토 후 지급(사업주관기관에서 자료분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비용 지급)
  * 시군은 상황에 따라 지급절차 변경 가능
- 집합 컨설팅비는 사업주관기관에서 집합 컨설팅을 실시하고 집행 증빙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및 보조금 지급 신청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검토 후 사업주관기관에 지급(실비 지급)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모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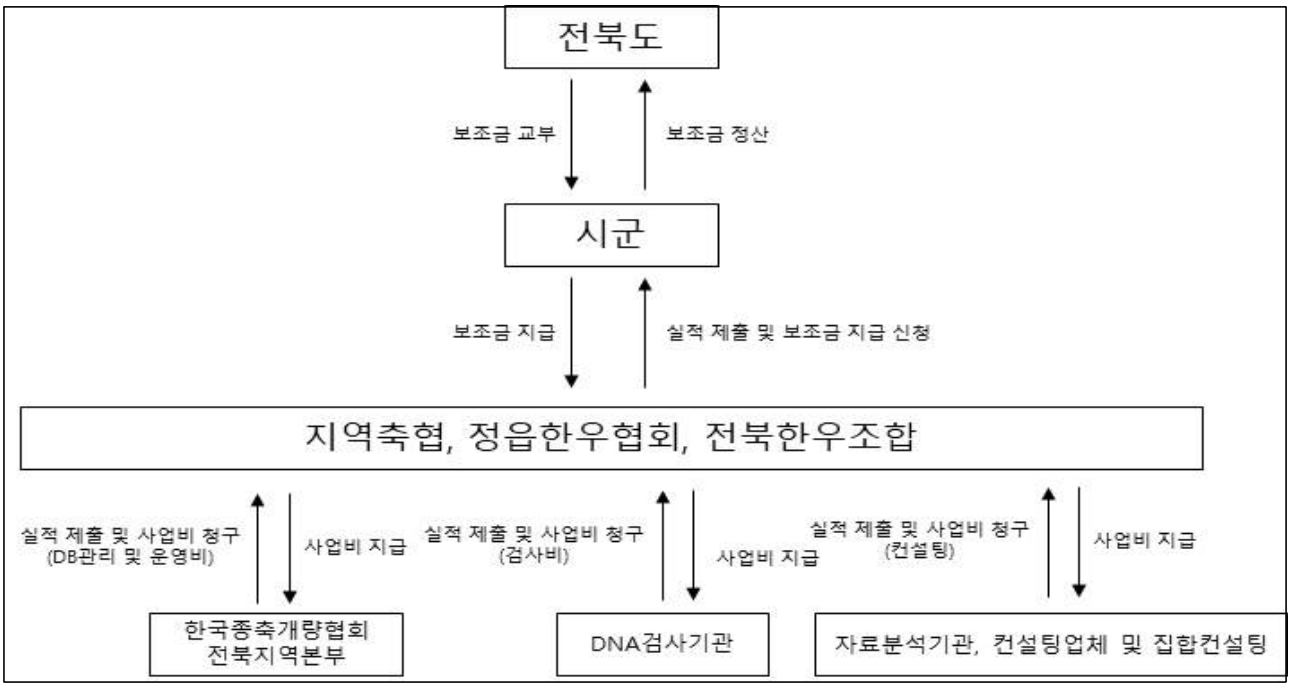

☐ 행정사항

○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실적보고

- 점검기관 : 시군
- 점검대상 : 시료채취, DNA 검사기관,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컨설팅업체 및 J카우 등록농가 등
- 점검내용 : 사업지침 이행여부 점검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결과 : 분기 점검결과는 다음달 10일 이내 도에 보고

시군	시군운영협의회 실적(회)	점검결과		사업비 집행내역(천원)				비고
		점검대상(개소)	조치결과	예산액	집행액			
					계	도비	시군비	

○ J카우 등록 실적 보고(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

- J카우 등록실적
  - 보고기관 : 도, 시군
  - 보고시기 : 분기별
- J카우 후대축 도축성적 및 송아지 경매실적(서식8)
  - 보고기관 : 도
  - 보고시기 : 반기별

○ 컨설팅(농장 및 집합) 추진실적 보고(사업주관기관)

- 보고기관 : 도, 시군
- 보고시기 : 반기별

< 농장컨설팅 >

컨설팅업체명	컨설팅 실적(호, %)				비고
	대상(A)	분기 실적	누계(B)	추진율(B/A)	

○ 2022년 컨설팅 결과(성과)보고회

- 주관기관 :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전북농협 축산사업단
- 보고시기 : 12월 중
- 보고대상 : J카우 농가, J카우 참여기관 등
- 주요내용 : 컨설팅업체별 결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

○ 사업 홍보

- 도, 시군 및 J카우 참여기관에서 한우농가에 사업홍보(홍보물, 언론 등)

【 서식 1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참여 신청

○ 참여기간 : 사업 종료시까지

농 장 주		연 락 처	
농장 소재지			
사육두수(두)	계	암	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항목(축주명, · 주소, 연락처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주관기관(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개량컨설팅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관련 교육 · 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항목(축주명, · 주소, 연락처, 이력제, 혈통등록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농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귀하

【 서식 2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컨설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관 :

2. 신청내용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의 농가 컨설팅 자문단 신청

3. 사업기간 : 2022. . . ~ 12. 31.

붙임 1. 컨설팅 계획서 1부
2. 한우개량 컨설팅 경력 증빙서류 1부

위와 같이 2022년도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컨설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 ○ (인)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전북농협 축산사업단장 귀하

【 서식 3 】

컨설팅 (표준)계약서

_____협회(이하 “갑” 이라 칭함 “)와 ___업체(이하 ” 을 “이라 칭함)는 다음과 같이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1. 계 약 명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컨설팅
2. 계약내용 : 농장컨설팅 및 집합컨설팅 시행
3. 업종(세부분야) :
4.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사업지침에 따라 정산 후 지급

지급처 (컨설팅업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6. 참여 컨설턴트 : _____
7. 위탁자와 시행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첨부된 **계약 약정서**에 따라 성실하게 본 사업을 수행한다.

계약일 년 월 일

협회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컨설팅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 서식 4 】

컨설팅 계약 약정서(안)

제 1조 : 계약의 목적

"갑" 이 의뢰한 컨설팅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을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컨설팅 대상농가의 유전능력 평가결과 분석, 계획교배 방법 등 개량 기반 마련에 필요한 정보 제공하는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제 2조 : 계약의 주제

"갑" 의 (협회)이 제시한 대상농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한우 개량 가속화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목표로 한다.

"을" 은 (업체) 개량 전문가로 구성하여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제 3조 : 책임과 권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을 설정한다.

1. 갑(대상농가)

- (을)이 지도하는 바 모든 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함
- (을)이 개량을 위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함

2. 을

- 본 계약서 제2조의 달성을 위한 충실한 컨설팅을 제공함
- (갑)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기밀 유지
- (갑)의 환경에 적합한 문서 지원, 교육 및 개선지도 실시

제 4조 : 컨설팅의 방법

- "을"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갑에게 컨설팅하고 컨설팅 만료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연 2회 이상 실시

○ 농가 출입 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함

제 5조 : 컨설팅의 내용

"을" 은 다음 내용이 반영된 연간 컨설팅 수행계획서에 따라 "갑" 이 제시한 대상 농가에게 컨설팅을 성실히 제공한다.

제 6조 : 컨설팅 결과 확인

○ “갑” 은 “을” 로부터 컨설팅 확인증을 받고 컨설팅 실시 여부를 판단(점검)하고 확인된 실적에 따라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다.

제 7조 : 상호의무

“을” 은 컨설팅 기간 동안 성실하게 지도하고 “갑” 은 “을” 의 원활한 컨설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 지침을 준수한다.

제 8조 : 업무협조

1. 갑은 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갑의 업무관련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을에게 협력,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갑 또는 관련자들의 업무협조 불성실로 인하여 원활한 컨설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그에 대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조 : 컨설팅 비용 및 기간

1) 컨설팅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2) 을은 컨설팅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기본적으로 갑이 제시한 농장에 방문하여 제1조(목적)와 제5조(컨설팅 내용) 등을 수행 한다. 다만 갑이 별도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일시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한다.

제 10조 : 계약의 변경

“갑” 과 “을” 은 상호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조 : 기밀유지

“을” 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취득한 “갑” 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갑” 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조 : 불가항력

본 계약이 전쟁, 천재지변, 구제역 발생과 같은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기 수행한 컨설팅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수행 중단 시점에서 정산한다.

제 13조 : 부당계약 및 허위보고 금지

1) “갑”과 “을” 상호간에 수행하지 않은 컨설팅 내용에 대한 허위보고를 상호 묵인할 경우 사업비 전액 회수 및 고발조치

제 14조 :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 해당 시도 상호 협의하여 합의 결정한다.

제 15조 : 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한다.

제 16조 : 계약서의 보관 및 제출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인장 날인 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하고, 그 사본 1부를 해당 시도에 제출한다.

계약일 년 월 일

협회 (갑)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컨설팅업체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연락처(전화번호 및 팩스) :

【 서식 5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항목(축주명, · 주소, 연락처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주관기관(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 등), 개량컨설팅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관련 교육 · 안내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 항목(축주명, · 주소, 연락처, 이력제, 혈통등록 등 개량컨설팅에 필요한 정보)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농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지역축협(이력제기관)장, 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서식 6 】

고능력암소축군조성사업 컨설팅 수행계획서

1. 사업목적

○
○
○

2. 시행기관 현황

가. 시행기관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팩 스	

나. 인력운용 계획

성 명	직급	담당업무 (분장일)	비고

* 직급 : 직원은 직급을 기재하고, 외부인원은 위탁으로 표기
* 담당업무 : 책임자, 사업전담 , 발육조사, 초음파촬영 등 표기

다. 사업담당자 교육 및 육성방안

○
○
○

3. 시행기관 개량목표

가. 개량목표

○

○

나. 개량목표 달성방안

○

○

○

4. 농가관리 및 육성방안

가.

나.

5. 농장 컨설팅 세부계획

가.

나.

【 서식 7 】

컨 설 팅 확 인 증

(컨설팅 자문단 보관용)

자문단명	소재지	대표자	구성인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농가	컨설팅내용	농가 서명

컨 설 팅 확 인 증

(농가 보관용)

자문단명	소재지	대표자	구성인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월일	컨설팅방법	컨설팅내용	특이사항	서 명	
				농가	컨설턴트

컨 설 팅 확 인 증

(컨설팅 자문단 제출용)

자문단명	소재지	대표자	구성인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연월일	컨설팅방법	대상농가	컨설팅내용	특이사항

【 서식 8 】

J카우 후대축 경매실적

(단위 : 두, 천원)

조합명	시장명	성별	J-COW 송아지			일반송아지			차액	
			두수	내정가	낙찰가	두수	내정가	낙찰가	내정가	낙찰가
계	10개소									
전주김제완주축협	고산	암								
		수								
무진장축협	장계	암								
		수								
임실축협	임실	암								
		수								
익산군산축협	익산(함라)	암								
		수								
남원축협	남원	암								
		수								
고창부안축협	고창	암								
		수								
순정축협(순창)	순창	암								
		수								
순정축협(정읍)	정읍	암								
		수								
전북한우협동조합	김제	암								
		수								
정읍한우협회	정읍	암								
		수								

J카우 후대축 도축성적

시군별	구분	육질 등급					
		계	1++	1+	1	2	3
계	출현두수						
	출현율(%)						
전주시	출현두수						
	출현율(%)						
군산시	출현두수						
	출현율(%)						
익산시	출현두수						
	출현율(%)						
정읍시	출현두수						
	출현율(%)						
남원시	출현두수						
	출현율(%)						
김제시	출현두수						
	출현율(%)						
완주군	출현두수						
	출현율(%)						
진안군	출현두수						
	출현율(%)						
무주군	출현두수						
	출현율(%)						
장수군	출현두수						
	출현율(%)						
임실군	출현두수						
	출현율(%)						
순창군	출현두수						
	출현율(%)						
고창군	출현두수						
	출현율(%)						
부안군	출현두수						
	출현율(%)						

【 별첨 1 】

J카우 스마트폰 앱 활용방법

□ 나의 스마트폰으로 J카우 조회 방법

○ 이용대상 : 도내 한우농가 등

○ **사용방법 : 스마트폰 앱 스토어 또는 play 스토어에서**

『제이카우』 입력 후 실행

- 회원가입 필요 없음. 누구나 조회 가능

○ 주요기능 : 시군별, 조합별, 농가별 J카우 및 후대축 조회가능

○ 관리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전북도내 고능력암소 및 우량송아지 선발을 위한 친자확인결과 제공
시군별, 조합별 J카우 통계현황 조회
시군별, 조합별 J카우 및 J카우 송아지 정보조회

J카우 선발 및 관리 효과

□ 추진방향

○ 우량 한우암소 친자확인 등 선발을 통하여 암소 전산 구축관리

○ 『전북 J카우』에서 분만한 송아지는 도내 경매장 출하 시 표기토록하여 부가가치 창출

□『전북 J카우』 선발기준 3가지중 1가지 충족시 선발

① 후대축 도축성적 기준

- 등심단면적 100㎠ 이상, 등급 1+이상, 도체중 480kg이상

② 혈통 등록우 이상, 외모심사 79점 이상, 보증씨수소 유전능력평가 선발(혈통등록 2계대이상, 13개월령 이상 암소, 선발지수 순위 상위 20%이내)

③ 한우종축개량협회 우량한우 암소(Elite Cow)기준

□ 도내 한우육종센터 보증씨수소 우량정액 우선 공급

○ 전북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육종센터)에서 선발된 보증씨수소의 정액을 J카우 농가에 우선공급

○ 우량 정액 공급으로 계획교배 효율 극대화 및 좋은 송아지 생산능력 제고로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별첨 2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호, 천원)

시군	총계			친자검사				외모심사				농장컨설팅			
	계	도	시군	사업량	소계	도	시군	사업량	소계	도	시군	사업량	소계	도	시군
계	1,000,000	300,000	700,000	23,288	680,000	204,000	476,000	14,000	140,000	42,000	98,000	300	180,000	54,000	126,000
전주	1,626	488	1,138	30	876	263	613	15	150	45	105	1	600	180	420
군산	11,200	3,360	7,840	250	7,300	2,190	5,110	150	1,500	450	1,050	4	2,400	720	1,680
익산	51,200	15,360	35,840	1,250	36,500	10,950	25,550	750	7,500	2,250	5,250	12	7,200	2,160	5,040
정읍	342,994	102,898	240,096	8,358	244,044	73,213	170,831	5,035	50,350	15,105	35,245	81	48,600	14,580	34,020
남원	44,200	13,260	30,940	1,000	29,200	8,760	20,440	600	6,000	1,800	4,200	15	9,000	2,700	6,300
김제	94,120	28,236	65,884	2,100	61,320	18,396	42,924	1,300	13,000	3,900	9,100	33	19,800	5,940	13,860
완주	37,960	11,388	26,572	800	23,360	7,008	16,352	500	5,000	1,500	3,500	16	9,600	2,880	6,720
진안	47,800	14,340	33,460	1,000	29,200	8,760	20,440	600	6,000	1,800	4,200	21	12,600	3,780	8,820
무주	34,880	10,464	24,416	900	26,280	7,884	18,396	500	5,000	1,500	3,500	6	3,600	1,080	2,520
장수	82,400	24,720	57,680	2,000	58,400	17,520	40,880	1,200	12,000	3,600	8,400	20	12,000	3,600	8,400
임실	86,000	25,800	60,200	2,000	58,400	17,520	40,880	1,200	12,000	3,600	8,400	26	15,600	4,680	10,920
순창	47,200	14,160	33,040	1,000	29,200	8,760	20,440	600	6,000	1,800	4,200	20	12,000	3,600	8,400
고창	74,640	22,392	52,248	1,700	49,640	14,892	34,748	1,000	10,000	3,000	7,000	25	15,000	4,500	10,500
부안	43,780	13,134	30,646	900	26,280	7,884	18,396	550	5,500	1,650	3,850	20	12,000	3,600	8,400

2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암소 유전형질 개량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우량 암소 기반 구축 및 우수한 경제형질 육성
♣ 가축개량을 통한 우량가축 생산으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 근거법령

○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시행 기관 : 축협·낙협, 생산자 단체 등

- 사업시행기관은 법인 등록을 필한 기관으로 시·군에서 지정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10	92,400	924,000 (100%)	277,200 (30%)	646,800 (70%)	

○ 사업내용 : 암소 유전형질 개량을 위한 등록비, 선형심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 및 등록 농가(한우, 젖소)

- (한우) 영세농가 우선 지원

- (젖소) 별도 제한요건 없음

【 지원제외 】

◈ 과거 2년간('20~'21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동-10747(2019.10.30.)호]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21년) 사업제한
* 축산법 위반(제19조) 가축인공수정사 본 사업 참여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별 세부 지원단가 및 상한액

- 등록사업 : 한우) 기초 4천원, 혈통 6천원, 고등 8천원
젖소) 기초·혈통 10천원, 고등 20천원
* 비회원가 기준이며, 실 지원단가로 지원
- 선형심사 : (한우)10천원, (젖소)12천원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추진 절차

1) 사업시행기관 선정(시·군)

2) 사업 참여 신청(농가 → 사업시행기관 : 축협·낙협, 생산자 단체)

※ 농가 참여 신청 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종축개량협회 전산시스템 활용을 위한 농가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서식 7)

3) 농가 신청물량 기준 시행기관별 사업량 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시·군 → 사업시행기관)

4) 개량사업추진(사업시행기관)
- 등록, 선형심사(사업시행기관+종축개량협회), 정액지원

5) 개체별 결과 농가 통지 및 기록관리 지도(소속농가 데이터화 병행)
- 개체별 개량방향 및 정액 추천 등 지도(사업시행기관+종축개량협회)

※ 사업시행기관은 종축개량협회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체별 관리

6) 사업 완료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등록비 지원

- 목　　적 : 등록우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근친예방 및 계획교배 활용, 가축개량 효과 거양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농가 (한우, 젖소)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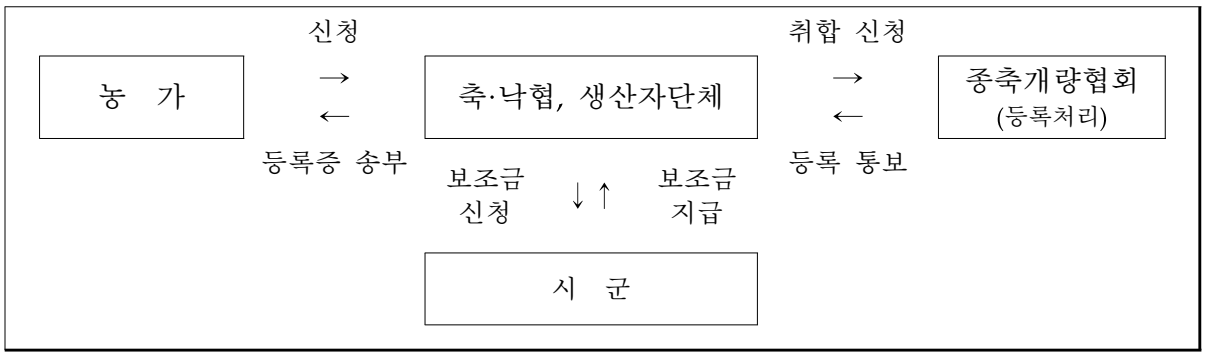

- 사업내용 : 등록별 지원 단가 내에서 등록 실비용 지원
  • 등록대상축 : 등록조건에 적합한 한우・젖소(번식우 및 암・수송아지)

① 기초등록 : 한우・젖소 기준에 적합한 개체(종개협 공고 2008-2호)
② 혈통등록 : 생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
- 부모가 기초등록우 이상이고 외모상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
- 장래 종축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송아지
③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이내에서 선형심사를 받은 개체

○ 선형심사비 지원

- 목　　적 : 유전능력평가를 위한 선형심사를 실시 선발·도태를 통한 우수 후대축 육성으로 개량 효과 극대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농가 중 번식우 사육농가(한우, 젖소)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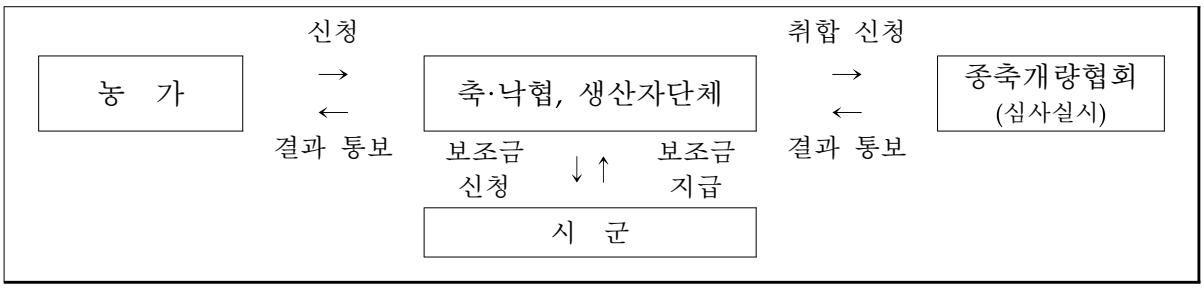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축종별 심사 실비용 지원

□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사업시행기관은 농가 자부담금 선 입금 후 등록·선형 심사·인공수정료 시행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조금 지급 신청(사업시행기관 →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업시행 기관은 보조금 수령 후 즉시 검사 기관 등에 보조금 지급 후 입금내역(금융거래 내역서)을 시·군에 제출

※ 시·군 실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방법 및 절차는 변경 가능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수정사가 수정 후 수정표에 스트로우 붙이고 농가 보관 지도점검
- 시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지급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사례 발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사업비를 회수하고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행기관에서 각종 사업관련 문서작성, 보관, 관리토록 시·군에서 지도

○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2. 2월한 ⇒ 서식 4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12월한 ⇒ 서식 5

【 서식 1 】

○○○자금집행실적(축협 → 시군)

(2022년 월분)

지급대상자	사업량 (두)	보조금 지급액 (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사업시행기관		사업량(두)		사업비(천원)				비 고
기관명	대표자	사업명	계획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서식 3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시군 → 도)

사업명	대상자 (호)	사업량(두)		사업비 집행내역 (원)				비 고
		계 획	실 적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 각 서식은 시군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서식 4-1 】<개인별 서식>

개량관련자료 개인정보 공개(제공)
안내 및 공개(제공) 동의서

1.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개량을 목적으로 등록, 심사, 검정자료가 생성된 농가의 **"농가명(생산자명), 개체식별번호, 개체등록번호, 생년월일, 아비, 어미, 농가소재지"** 등에 관한 내용을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조합, 단체 등이 해당농가를 관리함에 있어 해당농가의 **농가명, 개체식별번호, 농가소재지**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사항 이어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3. 따라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본회에 등록, 심사, 검정을 필한 농가의 **농가명, 개체식별번호, 농가소재지** 등을 한국종축개량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본 동의서를 인증받은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공개 또는 제공 동의 여부 -

정보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농가명, 개체식별번호, 농가소재지		

* 정보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 공개합니다. 또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개 또는 정보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인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서식 4-2 】<다수인 서식>

한우 온라인등록 및 계획교배 시스템 농가 동의서

연번	성 명	농 장 명	주 소	ＩＤ	비밀번호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 농가 동의서는 4-1 또는 4-2 서식 중 상황에 맞게 사용(2개 서식중 1개만 사용)

※ 종축개량협회 전산시스템 활용을 위한 단체등록은 종축개량협회 정보지원팀(02-588-9301, 내선 5번)으로 문의 바람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합 계				한우				젖소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도 비	시군비		합계	도 비 (30%)	시군비 (70%)		합계	도 비 (30%)	시군비 (70%)
계	92,400	924,000	277,200	646,800	82,740	827,400	248,220	579,180	9,660	96,600	28,980	67,620
전주시	300	3,000	900	2,100	300	3,000	900	2,100	0	0	0	0
군산시	1,200	12,000	3,600	8,400	820	8,200	2,460	5,740	380	3,800	1,140	2,660
익산시	4,500	45,000	13,500	31,500	3,640	36,400	10,920	25,480	860	8,600	2,580	6,020
정읍시	20,300	203,000	60,900	142,100	18,580	185,800	55,740	130,060	1,720	17,200	5,160	12,040
남원시	9,000	90,000	27,000	63,000	7,200	72,000	21,600	50,400	1,800	18,000	5,400	12,600
김제시	9,000	90,000	27,000	63,000	8,320	83,200	24,960	58,240	680	6,800	2,040	4,760
완주군	5,500	55,000	16,500	38,500	4,900	49,000	14,700	34,300	600	6,000	1,800	4,200
진안군	4,000	40,000	12,000	28,000	3,810	38,100	11,430	26,670	190	1,900	570	1,330
무주군	2,700	27,000	8,100	18,900	2,590	25,900	7,770	18,130	110	1,100	330	770
장수군	9,000	90,000	27,000	63,000	9,000	90,000	27,000	63,000	0	0	0	0
임실군	10,000	100,000	30,000	70,000	10,000	100,000	30,000	70,000	0	0	0	0
순창군	3,500	35,000	10,500	24,500	3,300	33,000	9,900	23,100	200	2,000	600	1,400
고창군	7,700	77,000	23,100	53,900	4,700	47,000	14,100	32,900	3,000	30,000	9,000	21,000
부안군	5,700	57,000	17,100	39,900	5,580	55,800	16,740	39,060	120	1,200	360	840

3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균이)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의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로 친자 일치율 제고 및 차별화된 가축시장 운영으로 전북한우 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전라북도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시행기관 : 가축시장 운영기관

○ 사업기간 : 2022. 1 ~ 12.(1월부터 추진실적 소급 집행가능)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비고
			합계	균특이양	시군비	기타*	
계	-	60,000	1,200,000 (100%)	180,000 (15%)	420,000 (35%)	600,000 (50%)	
친자확인 검사	15	60,000	900,000 (100%)	90,000 (10%)	210,000 (24%)	600,000 (66%)	
시료채취	5		300,000 (100%)	90,000 (30%)	210,000 (70%)		

* 친자확인 검사 사업비 중 기타 부담비율은 가축시장 운영기관과 자담 50:50을 기본으로 함. 단,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 자담을 추가(일부) 부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

① 도내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소(한우)

- 거래되는 소 및 어미 소 검사(부모 일치 검사)

② ①번 대상우 검사 진행 후 잔여 예산 발생 시 시군-가축시장 운영기관 협의하여 일반 소(한우) 검사

○ 사업내용 : 소의 친자확인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친자확인 검사비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세부계획은 가축시장 운영기관의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① 가축거래 신청(농가 → 가축시장 운영기관)

- 도내 가축시장에 거래를 원하는 농가는 가축시장 거래일 약 1개월 전에 해당 가축시장에 거래 신청
  - 가축시장별 개장일을 확인 후 해당 가축시장 운영부서에 1개월 전 신청

② 기존 검사결과 확인 및 시료 채취

- 거래 신청을 받은 가축시장 운영기관은 거래 신청 소 및 어미 소의 기존 친자 검사 유무를 확인
  - 다른 사업(고능력암소축군조성, 암소검정사업, 자체사업 등)을 통해 기 검사된 소 결과 확인
  - 검사결과가 확인된 개체는 추가 검사 없이 그 결과를 활용
- 기존 검사결과가 없는 개체는 거래 소 및 어미 소에 대해 거래일 2주전에 시료 채취 완료
  - 시료채취는 거래신청 농가 또는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 수행하며 채취된 시료는 가축시장 운영기관을 통해 검사의뢰

※ 시료채취 방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농식품부 고시)의 기준 적용

③ 친자확인검사 의뢰(가축시장 운영기관 → 검사기관)

- 가축시장 운영기관은 채취된 시료를 적정 보관 후 검사기관*에 개장일 최소 1주전까지 검사 의뢰

* 검사기관 : 전북대학교, miDNA유전체연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④ 검사결과 통보(검사기관 → 가축시장 운영기관 → 농가)

- 검사기관은 시료접수 후 즉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축시장 운영기관에 통보
- 가축시장 운영기관은 통보받은 검사결과를 농가에 알려주고 그 결과를 가축 거래 시 게시함

※ 게시 방법은 가축 매수자가 알 수 있도록 검사결과서 부착, 모니터 표출 등 활용

⑤ 가축시장 거래

- 가축시장 운영기관은 거래 신청된 소의 친자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일치 개체와 비일치 개체를 구분(분리)하여 운영
  - 단계적 조치로 상반기 동안 홍보 등을 위해 일치 개체와 비일치 및 비검사 개체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하반기부터는 비검사 개체에 대해 거래 신청 미접수

⑥ 일반 소 검사

- 검사 시기 : 7월 이후
- 검사대상 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

  * 시군 및 가축시장 운영기관은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 범위 및 추진 계획 수립

- 검사결과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마련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료 채취비 및 친자확인 검사비 집행 및 정산은 가축시장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거래 신청농가 부담분은 가축거래 금액 정산에 포함하여 실시함

【 시료채취비 및 검사비 】

○ **(거래 신청농가 채취 시)** 거래 신청농가는 친자확인 검사비의 농가 부담분을 행정에서 지원

- 친자확인 검사비 : 15천원/두(보조 10, 가축시장 운영기관 5)

○ **(가축시장 운영기관 채취 시)** 가축시장 운영기관에 시료채취비를 행정에서 지원

- 친자확인 검사비 : 15천원/두(보조 10, 거래 신청농가 5)

○ 가축시장 운영기관은 검사기관에 친자확인 검사비를 선 집행하고 농가 부담분에 대해서는 가축거래 금액 정산에 포함

- 정산방법은 가축시장 운영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행정사항

○ 점검기관 : 시군

○ 점검대상 : 가축시장 운영기관

○ 점검내용 : 사업추진 절차, 집행 및 실적

○ 점검주기 : 분기별 1회 이상

○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 사업 추진실적 : 분기별

시군	가축시장 운영기관	시장명	총 거래 신청 두수	총 검사두수	검사 이행 내역		
					거래 신청 (A)	검사증명서 개시 (B)	이행율 (B/A, %)

* A : 12개월 미만 및 관내 소, B : 가축시장 개장 시 검사증명서 개시 두수

(총 거래 신청두수는 개장일 총 출하두수, 총 검사두수는 거래 신청 소 및 어미 소 검사두수 합)

- 사업 정산 보고 : '22. 12월한

○ 사업 홍보

- (시군) 관내 한우 사육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통해 가축시장 거래 소 친자확인 검사 의무화 유선 및 서면 홍보
- (가축시장 운영기관) 가축시장 홍보물 부착 등 거래 시장 이용자 홍보 철저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천원)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담	
계	**60,000**	**1,200,000**	**180,000**	**420,000**	**600,000**	
전주시	50	1,000	150	350	500	
군산시	650	13,000	1,950	4,550	6,500	
익산시	2,000	40,000	6,000	14,000	20,000	
정읍시	10,000	200,000	30,000	70,000	100,000	
남원시	6,000	120,000	18,000	42,000	60,000	
김제시	8,000	160,000	24,000	56,000	80,000	
완주군	5,000	100,000	15,000	35,000	50,000	
진안군	2,000	40,000	6,000	14,000	20,000	
무주군	1,800	36,000	5,400	12,600	18,000	
장수군	7,000	140,000	21,000	49,000	70,000	
임실군	5,500	110,000	16,500	38,500	55,000	
순창군	3,000	60,000	9,000	21,000	30,000	
고창군	3,000	60,000	9,000	21,000	30,000	
부안군	6,000	120,000	18,000	42,000	60,000	

4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1. ~ 5. 31.

○ 사업계획

구분	단가 (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20	10,000	200,000 (100%)	30,000 (15%)	70,000 (35%)	100,000 (50%)

○ 사업내용 : 한우암소 사육농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가입비용 지원

《사업시행체계》

사업안내	☞	계약체결	☞	송아지생산신고
· 안정제사업내용 · 안정기준가격 ·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5.31.까지) ·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 생후 30일 이내 사업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	보전금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기별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 고시(공고) ·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 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시군별 소요 보전금 배정(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배정받은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 신청절차

○ 대 상 우 : 한우 암소

○ 신청기간 : 2022. 1. 1 ~ 2022. 5. 31.

○ 신청기관 : 지역축협, 생산자단체(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

○ 지원내용 :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비용 지원

- 안정제 가입부담금(두당) : 보조 10천원, 계약자 10천원

* 전년도 가입암소는 재계약 시 부담금 면제

▢ 보전금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 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 지급발동기준 : 매기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산출될 시 가임 암소수 기준으로 보전금 차등지급

* 지침 시행 이후 연도 내 지원 기준 개정 시 변경된 기준 적용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0,000**	**200,000**	**30,000**	**70,000**	**100,000**	
전주시	20	400	60	140	200	
군산시	250	5,000	750	1,750	2,500	
익산시	1,000	20,000	3,000	7,000	10,000	
정읍시	1,100	22,000	3,300	7,700	11,000	
남원시	1,500	30,000	4,500	10,500	15,000	
김제시	600	12,000	1,800	4,200	6,000	
완주군	230	4,600	690	1,610	2,300	
진안군	500	10,000	1,500	3,500	5,000	
무주군	100	2,000	300	700	1,000	
장수군	400	8,000	1,200	2,800	4,000	
임실군	1,500	30,000	4,500	10,500	15,000	
순창군	400	8,000	1,200	2,800	4,000	
고창군	900	18,000	2,700	6,300	9,000	
부안군	1,500	30,000	4,500	10,500	15,000	

5 낙농헬퍼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착유시설 등 착유환경의 전문적 안전관리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 공급

♣ 낙농가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농가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일)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낙농헬퍼 지원사업	200 (2인 1조)	2,100	420,000 (100%)	63,000 (15%)	147,000 (35%)	210,000 (50%)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사업내용 : 낙농헬퍼(착유 도우미) 이용료 지원 또는 착유시설 환경(안전)관리* 비용 지원

* 착유시설 환경(안전)관리 : 착유실과 냉각실 등 착유시설의 스팀 살균·세척을 통한 관리

○ 지원 대상자 : 낙농헬퍼(착유도우미) 또는 착유시설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업 허가(젖소) 착유농가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①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 등에 따른 병원진료 및 안정·치료

② 관혼상제[상(喪), 제사, 결혼식 등]

③ 장기출타, 행사참여 등 여가활용, 기타 예기치 않은 상황 등

④ 착유시설 환경관리가 필요한 농가

【 지원제외 】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년) 사업제한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시행 방법 : 시·군 직접시행 또는 사업대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

- 사업을 대행 할 경우 시·군별 자체 세부기준 마련 시행

* 사업대행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생산자단체(농・축・낙협 등), 낙농헬퍼사업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법인

⇒ 사업대행자 역할 : 낙농헬퍼사업 전문인력 확보·양성 및 사업수행

○ 보조금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일 경우 재원별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12월

【 서식 1 】

낙농헬퍼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

[○○시군]

농가수	사용 일수	사업비(천원)				집행실적(천원)				잔액(천원)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일,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100**	**420,000**	**63,000**	**147,000**	**21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520	104,000	15,600	36,400	52,000	
남원시	300	60,000	9,000	21,000	30,000	
김제시	70	14,000	2,100	4,900	7,000	
완주군	200	40,000	6,000	14,000	20,000	
진안군	60	12,000	1,800	4,200	6,000	
무주군						
장수군	10	2,000	300	700	1,000	
임실군	330	66,000	9,900	23,100	33,000	
순창군	60	12,000	1,800	4,200	6,000	
고창군	450	90,000	13,500	31,500	45,000	
부안군	100	20,000	3,000	7,000	10,000	

6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균이)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친환경적인 착유시설 장비지원을 통한 청결한 착유 관리로 환경오염 및 유방염 예방에 따른 고품질 우유생산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합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담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	16,000	56	900,000 (100%)	450,000 (50%)	90,000 (10%)	360,000 (40%)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비율을 준수하고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젖소)를 득한 착유농가

○ 사업내용 : 착유를 위한 냉각기, 유두세척기 지원

※ 시·군 및 사업대상자 실정에 맞는 지원장비 선정 지원

- 세부기준 : (냉각기) 용량은 3톤 이상, 실외기 등 포함

* 3톤 미만 구입 시 실거래가 시군 검토 후 지원(16백만원/대 미만)

(유두세척기) 유두 세척 세제 공급장치 포함

□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별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 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② 소규모 착유농가, ③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 무항생제) 인증 농가, HACCP 지정농가

【 지원제외 】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년) 사업제한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장비구입

- 품질이 보증되고 사후 서비스(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타 정부지원 사업, 농협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보조, 융자) 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조치

○ 보조금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 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지원된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2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12월

【 서식 1 】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 대상자 선정

대 상 자		기종	사 업 비(천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균이	시군비	자 담	
계							

【 서식 2 】

친환경우유생산기반구축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

[○ ○ 시군]

대 상 자		지원 장비	사 업 비(천원)				집행실적(천원)				잔 액(천원)			비고
주소	성명		계	균이	시군비	자담	계	균이	시군비	자담	계	균이	시군비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 담	
합 계	**56**	**900,000**	**450,000**	**90,000**	**360,000**	
전주시						
군산시	3	48,000	24,000	4,800	19,200	
익산시	3	48,000	24,000	4,800	19,200	
정읍시	16	256,000	128,000	25,600	102,400	
남원시	1	16,000	8,000	1,600	6,400	
김제시	1	16,000	8,000	1,600	6,400	
완주군	3	48,000	24,000	4,800	19,200	
진안군	4	64,000	32,000	6,400	25,600	
무주군	1	16,000	8,000	1,600	6,400	
장수군						
임실군	5	80,000	40,000	8,000	32,000	
순창군	1	16,000	8,000	1,600	6,400	
고창군	17	276,000	138,000	27,600	110,400	
부안군	1	16,000	8,000	1,600	6,400	

7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고른 영양섭취를 통한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 축산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사업개요

○ 급식기간 : 2022. 1 ~ 12월

○ 대 상 자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중·고등학생,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등

○ 사업계획

구분	단가 (원)	사업량 (천팩)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480 /200㎖	12,305	5,906,557 (100%)	3,543,934 (60%)	590,656 (10%)	1,771,967 (30%)

○ 급 식 일 : 250일 내외(방학중 급식 포함)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원유 100%)
- 가공유 중 국내산 원유 99.0% 이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하고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성분을 첨가하지 않은 것

□ 행정사항

○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 유업체에 대한 대상품목 공급, 급식중단, 품목 변경 등 지도·관리

○ 급식유업체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 후 지급

○ 급식 대상자선정 결과, 급식 실적 및 보조금 지급실적 보고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천팩,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합 계	**12,305**	**5,906,557**	**3,543,934**	**590,656**	**1,771,967**	
전주시	4,307	2,067,658	1,240,596	206,766	620,296	
군산시	1,568	752,652	451,591	75,265	225,796	
익산시	1,997	958,717	575,230	95,872	287,615	
정읍시	873	418,823	251,294	41,882	125,647	
남원시	623	298,837	179,302	29,884	89,651	
김제시	655	314,280	188,568	31,428	94,284	
완주군	611	293,329	175,997	29,333	87,999	
진안군	217	104,220	62,532	10,422	31,266	
무주군	113	54,323	32,594	5,432	16,297	
장수군	203	97,669	58,601	9,767	29,301	
임실군	302	144,937	86,962	14,494	43,481	
순창군	137	65,772	39,463	6,577	19,732	
고창군	432	207,360	124,416	20,736	62,208	
부안군	267	127,980	76,788	12,798	38,394	

8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유용곤충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육성 및 학습·애완, 천적, 화분매개, 환경정화, 식·약용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는 유용곤충 사육으로 신소득원 창출 및 환경친화적 영농 실현

▢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10,000	40	400,000 (100%)	60,000 (15%)	140,000 (35%)	200,000 (50%)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비율을 준수하고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사업대상 : 아래 조건(지원대상) 모두 충족

- 지원대상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따른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우선순위

① 곤충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0~'21년)

* 곤충 관련 교육기관 또는 곤충 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② 곤충산물 판매실적('21년)이 있는 농가

* 곤충산물 판매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온라인 거래내역서 등) 등 객관적 근거 자료 확인(무통장입금 거래 제외)

③ 곤충관련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 중인('21년부터) 농가 * 곤충협회 확인

- 지원제외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

* 단, 사업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 : 곤충 사육·가공 기자재 지원

- 지원품목 및 지원한도액 범위 : 농가당 총사업비 10백만원 한도 지원

품 목 명	지원단가 및 한도	비고
곤충산물 저온저장고	6백만원/대 한도	10㎡ 기준, 냉방·전기시설 포함
곤충산물 건조기(농산물 건조기)	2백만원/대 한도	농가 희망 용량 및 규격으로 지원
곤충사육시설 냉·난방기	3백만원/대 한도	83㎡(25평) 기준
곤충 먹이용 사료배합기	6백만원/대 한도	
곤충 선별기	3백만원/대 한도	
곤충사육상자 거치용 선반	3백만원/농가 한도	스테인레스 재질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곤충 사육가공 기자재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곤충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곤충 사육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 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매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 시 곤충 사육·가공 기자재 신속히 구입
- 제품 구입 및 설치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구입 및 공급요령

- 제품선정 : 품질보증(인증) 또는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입

▢ 사후관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 폐업·사업포기 등 곤충사육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행정사항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 - H.P) 01 -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육 및 시설현황

○ 곤충업 신고확인 번호 :

곤충 사육품종	사육시설 현황		
	사육형태	동	㎡
	판넬 □ 철골(콘크리트) □ 컨테이너 □ 태양광곤충사육사 □ 비닐하우스 □ 기타 □		
	판넬 □ 철골(콘크리트) □ 컨테이너 □ 태양광곤충사육사 □ 비닐하우스 □ 기타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상기와 같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신청
내용</td><td colspan="2" rowspan="2">품목</td><td rowspan="2">사업량
(대)</td><td rowspan="2">단가
(천원)</td><td colspan="4">사 업 비(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자담</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2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연번	성명	주 소	사육시설 형태	사 업 량		사 업 비				비고
				품목	수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2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계	도비	시군비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40**	**400,000**	**60,000**	**140,000**	**20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5	50,000	7,500	17,500	25,000	
정읍시	8	80,000	12,000	28,000	40,000	
남원시	16	160,000	24,000	56,000	80,000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4	40,000	6,000	14,000	20,000	
무주군						
장수군	4	40,000	6,000	14,000	20,000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2	20,000	3,000	7,000	10,000	
부안군	1	10,000	1,500	3,500	5,000	

10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균이)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영세한 생산 규모로 산업화가 어려움에 따라 전문 가공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곤충의 고부가 가치 창출

□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 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균이	시군비	자담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	100,000	5	500,000 (100%)	250,000 (50%)	100,000 (20%)	150,000 (30%)

○ 지원대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가, 단체, 법인, 조합, 연구기관 등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충족 필수

○ 사업내용 : 곤충 가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가공·포장 설비 구축 지원

* 가공 · 포장설비 단독지원 가능, 사업비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 자금용도

- 곤충 가공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해당시) : 소독위생실, 가공실, 포장실, 보관창고 신축 또는 기존 가공시설 개보수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 가능하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지원 불가

- 가공설비 및 장비 : 전처리, 멸균장비, 가공제품 제조장비 등
- 포장설비 및 장비 : 완제품 포장 설비 등
- 기타설비 및 장비 : 곤충산물 가공유통이라는 사업취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등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등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시·군에 신청

[안 내 사 항]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 된 신청서류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군은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희망 단체 등의 사업계획 수립 자문 및 지원, 도에 추천
  - 사업신청 단체의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추진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면밀히 검토
  - 자부담 및 사업부지(해당시) 확보 여부 점검 철저 : 자부담 증빙자료(현금잔액증명서 등), 사업부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제출
  - 사업추진 계획 검토의견 및 시·군비 확보 계획 서류 제출

○ 사업자 평가

-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필요시 발표평가)

※ 평가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 도는 서류 및 현장평가 평점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시·군에 통보, 시·군은 사업 신청자에게 통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도 》

- 해당 시·군에 사업비(도비(균이), 시·군비) 확정 통보
-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세부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시·군 》

- 해당 시·군은 도에서 통보된 도비(균이) 및 시·군비를 '22년 예산에 반영
- 해당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도비(균이), 시·군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 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
    * 장비 사진, 견적서, 배치도 등 포함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붙임 6)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세부사업계획 변경

-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함.

  * 중요사항 : 사업비, 사업내용, 분류항목별 사업규모의 30% 초과 변경 등
  - 단,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 상 분류항목별 30% 이하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자금 집행 및 정산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집행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정·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군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시·군에 제출
  - 지원받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사업 최종 완료 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시설에 ‘보조금 건립시설’ 표지판 부착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로 결제. 단,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가능
- 사업 최종 완료 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해당시설에 ‘보조금 건립시설’ 표지판 부착

▢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 》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기타사항 》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사업 기본규정」을 준용

▢ 행정사항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2월말한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한

【 서식 1 】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단체명
(신청자)</td><td colspan="2"></td><td>대 표 자</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실 무 자</td><td></td></tr>
<tr><td>법인(사업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법인설립일</td><td></td><td>주요사업</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신청내역</td><td>사 업 명</td><td colspan="4">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td></tr>
<tr><td>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4"></td></tr>
<tr><td></td><td>지목</td><td>면적</td><td colspan="2">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td></tr>
<tr><td>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요약)</td><td colspan="4">○
○
* 세부사업계획서 별첨</td></tr>
<tr><td>사업비
(천원)</td><td>계(100%)</td><td>균특이양(50%)</td><td>시군비(20%)</td><td>자담(30%)</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유의사항</td><td colspan="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td></tr>
</table>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 필요한 개인정보의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계획서 1부, 곤충신고증 1부, 곤충사육 경력서 1부(해당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서식 2 】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단체명 (신청자)			
대표자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팩스)	(핸드폰)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사업필요성 및 추진 전략 등

나. 사업체계도

○ 지역내 곤농농가와 연계한 곤충 가공유통, 홍보·마케팅 전략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건축 및 개보수(해당시), 장비 구축계획 등

○ 시설구축 부지 위치 및 면적 등 상세내역

○ 가공유통시설 건축 또는 개보수 규격 및 규모, 도면 등 상세내역(해당시)

○ 사업추진 단계 등 일정 상세내역

○ 시설·장비 구축 예정내역(사진 등 포함)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균특)	시군비	자담
건축, 개보수 (해당시)						
가공설비						
포장설비						
기타						

② 원료 수급계획

○ 지속 경영을 위한 중장기적 원료 수급계획 등

③ 지역 내 곤충농가 연계 방안

④ 제품 생산 및 생산품 유통계획

○ 가공 유통 전략 및 홍보 마케팅 등 세부내역

⑤ 시설 운영계획

⑥ 주요 준수 법률 이행 계획

⑦ 기대효과 등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서식 3 】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심사 평가표

○ 신청자 : _____, 대표자 : _____ ○ 총득점 : _____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점	비고
사업주체 역량	재원조달 능력	▪ 신용상태, 자부담 확보방안 등 - 100% 확보(15), 100% 미만은 확보액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80% 이상 10, 50%이상 5, 30% 이상 3, 30% 미만 1)	15	10	5	3	1		
	수행실적	▪ 곤충업 수행 경력 - 5년 이상(10), 3년 이상(5), 1년 이상(1), 1년 미만(0),	10	5	1	0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목표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20	15	10	5	1		
	가공능력	▪ 연간 곤충제품 생산 계획 및 농가협력 가능성	15	10	5	3	1		
	유통계획	▪ 곤충농가와 협력한 곤충산물 가공·유통 계획의 적정성	15	10	5	3	1		
	기대효과	▪ 곤충농가 연계 경쟁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8	6	4	1		
지자체 추진 의지	지자체 의지	▪ 지자체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	10	5	3	1	0		
곤충관련 교육	교육이수	▪ 곤충관련 교육이수 실적 - 5회 이상(5), 3회 이상(3), 1회 이상(1) * 공고일 전일부터 3년전까지	5		3		1		
감점	사업계획 확인	▪ 현장확인 결과 사업신청서 내용 불일치	-5						
가점	곤충관련 표창 및 포상	▪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로부터 곤충과 관련된 표창, 포상 여부 - 농식품부(5), 도(3), 시·군(1)	5		3		1		
심사 총평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적용

202 . . . 선정위원 소속 OOOOO 성명 O O O (서명/인)

【 서식 4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단 체 명 (신 청 자)	
대 표 자 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 업 비	000백만원(균특이양 , 시군비 , 자부담)
사업내용	▪

3.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본인은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 . . .

보조사업자 :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5 】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생산자단체 등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2. 보조사업 수행이력(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년도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면적, 종류 등)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서식 6 】

2022년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사업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단체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균이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추진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 담	
합 계	**5**	**500,000**	**250,000**	**100,000**	**150,000**	
도유보	3	300,000	150,000	60,000	9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2	200,000	100,000	40,000	60,00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0 곤충산업화지원 사업(국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안전성과 균일성이 확보된 양질의 곤충 먹이용 사료 공급을 통한 규격화 및 표준화된 곤충 생산으로 산업화 기반 구축

□ 근거법령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 2023년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억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곤충산업화지원 사업	10	1	400,000 (100%)	120,000 (30%)	48,000 (12%)	112,000 (28%)	120,000 (30%)

* 총사업비 : 1,000,000천원('22년 400,000천원, '23년 600,000천원)

○ 대 상 자

- **(거점기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농·축협,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협력농가)**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지원자격 및 요건 필수충족)

○ 사업내용

-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를 대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비 등 지원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u>참여하는 농가(협력농가 포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u>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 신청에서 제외

▢ 사업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Ⅱ), 식용곤충 안전사육 메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	1,000,000	300,000	120,000	280,000	30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1	1,000,000	300,000	120,000	280,000	300,000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1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FTA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에 대응, 곤충산업 사육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곤충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형태 : 이차보전(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상한액 : 3억원(사업비 기준)(융자·자부담 포함)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

○ 사업내용 : 곤충 생산 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과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조건

○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사육시설을 신축한 다음 융자를 실행하기 전에 곤충업신고를 완료할 것(곤충업 미신고시 융자실행불가)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 생산 관련 사육사, 저장고 등의 신축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곤충사육사 및 저온저장고 등 고정 건축물을 신축 및 개보수 시 관련 기자재 지원 가능하며, 기자재 단독지원은 불가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곤충의 산물 및 부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사료 발효장 : 곤충 먹이원 생산·발효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기자재 : 곤충 사육을 위해 곤충사육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 (항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 사업 완료 사업자의 필수 의무준수사항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사업자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육기준 및 규격)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산업곤충 사육기준 및 규격(Ⅰ,Ⅱ),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식용곤충을 사육하는 경우)을 준수하여 곤충사육사, 기자재 설치
- (경영기록부) 수혜 사업자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사업자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12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위생적인 양봉기자재 공급으로 채화량 증대 및 벌꿀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12조

○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협조기관 : 꿀벌 관련 협회 도지회 및 시·군지회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사업별 상이	2,313	2,313,334 (100%)	347,000 (15%)	809,667 (35%)	1,156,667 (50%)

※ 21년 품목별 단가표(참고용으로 활용)

품 목 명	단 가	품 목 명	단 가
화분(유채)	8천원/kg	좌대(한봉)	8천원/개
화분떡	4천원/kg	자동탈봉기	1백만원/대
벌통(단상)	28천원/개	말벌퇴치기(소형)	50천원/대
벌통(EPP, 단상)	35천원/개	말벌퇴치기(대형)	100천원/대
벌통(EPP, 계상)	19천원/개	보조먹이(설탕)	17천원/15kg
화분채취기(조)	11천원/대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300천원/군 한도

○ 사업대상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대상 농가는 등록기준(10군) 미만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등록 완료 농가여야 함.

-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 우선순위 : ①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21.8.31.까지) 내 등록 완료 농가
② 전년도('21)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미지원자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지원 우선순위**
① 양봉농가 등록 농가
② 한봉협회 도지회 회원농가(한봉협회 확인)

- 지원제외 : 양봉산업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농가(적발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지원품목 : 양봉벌통(EPP 벌통 포함), 한봉 사양기자재(벌통, 좌대), 소초광, 화분·화분떡, 자동탈봉기, 화분채취기, 말벌퇴치장비, 보조먹이(설탕), 낭충봉아부패병(SD) 저항성 토종벌

- 품목별 지원비율 : 시·군별 꿀벌 관련 협회(양봉협회, 한봉협회 등)의 의견에 따라 자율 결정

* 시·군 여건에 따라 품목별 지원비율 조정하되, 보조먹이(설탕)는 전체 예산의 30%로 지원

○ 품목별 지원단가 : 시·군별 시세 및 사육여건을 판단하여 꿀벌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결정

* 다만,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은 300천원/군, 농가당 10군 한도로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양봉 기자재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꿀벌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양봉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및 사육군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군은 지원신청 농가의 양봉농가 등록현황 및 현지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육군수 확인
    * 사업대상 규모(봉군수)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을 세워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4)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서식 2)를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방향 설정 등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시·군 및 양봉(한봉) 협회 시·군지회에서 사육군수 등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 대상자 확정 시 양봉 기자재 신속히 구입
- 제품 구입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3)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지원요령 및 방법

- **(기자재)** 농가가 일괄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제품선정위원회』(시·군, 꿀벌 관련 협회, 선도농가 등으로 구성)를 개최하여 품질이 우수한 통일된 규격의 기자재를 선정
  *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특정업체 제품 강요 금지
  ** 품종별(양봉, 한봉) 사업량은 지역여건에 맞춰 시장·군수가 결정

- **(보조먹이(설탕))** 등록농가 현황 등을 토대로 시·군별 농가당 지원량 및 한도 등 결정

- **(낭충봉아부패병 저항성 토종벌)**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또는 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원종을 보급받아 생산하는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보급농가) 토종벌을 분양하는 농가는 분양 전에 병성감정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Sacbrood virus, SBV) 음성 증명을 받은 농가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토종벌을 분양받기 전, 기존에 사육중인 토종벌에 대해 병성감정기관(동물위생시험소)의 SBV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함

  * 양성으로 나올 경우 봉장 내 벌(통)을 모두 살처분(소각)하고, 내·외부, 양봉기구에 대해 소독 등의 방역을 실시한 후 3주 후 입식할 경우 지원 가능

  • 토종벌을 분양 또는 구입하는 농가는 시·군의 입회 하에 검사 샘플을 채취·봉인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봉군의 상태를 확인

  * 분양 1군 기준 : (7월 30일 이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6천 마리
  (8월 1일 이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10천 마리

  ※ 교미된 여왕벌만 분양받은 경우는 2마리

- **(공통사항)** 도내업체 또는 농가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등 우선 구입 추진

○ 구입 및 공급요령

- 납품된 제품은 시·군 담당자, 시·군 지회장 등이 합동으로 검수
- 제품 검수는 지원기준과 제품선정위원회가 선정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회자 연명으로 검수서에 서명날인 증빙 첨부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제품 품질의 이상 여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을 것
- 도내 업체 또는 농가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우선 구입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실태조사 결과 폐업·사업포기 등 꿀벌 사육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필요한 경우 꿀벌 관련협회에 위임하여 조사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채밀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추진

○ 꿀벌 관련 협회는 사양단계에서 위생적이고 양질의 꿀을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자체 지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양봉 기자재 보급 사업의 효과가 꿀벌 사육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꿀벌 사육현황 : 토종꿀벌 □, 서양종꿀벌 □, 혼합 □

사육군수	군	사육형태	고정 □ 이동 □
양봉농가 등록번호			고정 및 이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개,대,kg,군)	단가 (원)	사 업 비(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붙임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2.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1부.

2022. . .

신청자 : (인)

□ 사육군수 확인

사업자 기재군수	담당자 확인결과	확 인 자
군	군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 확인기관이 작성(확인기관은 시·군(읍면동) 또는 양봉협회 시군 지회장)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 관련 항목에 ✓

□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주사업장) 관내 □ 관외 □
	(개 소 수) 관내 ( )개소 ( )군, 관외( )개소 ( )군

□ 양봉업 현황

사육규모	( )군 * 혼합사육 시 : 토종( )군, 서양종( )군
사육형태	고정양봉 □ 이동양봉 □ 고정 및 이동양봉 □ 전북도외 이동양봉 시 채밀지역 : 도

□ 경영규모 및 형태

사육경력	( )년
경영형태	전업 □ 겸업 □ 부업 □
	겸업 시 업종 :

* 주업(전체소득의 80%이상), 겸업(80-50%), 부업(30%이하)

□ 양봉산물 생산현황

채밀횟수 (밀원별)	( )회/년 아까시꿀 ( )회, 잡화꿀 ( )회, 밤꿀( )회, 기타 ( )회
벌꿀 품질검사	여 □ (한국양봉농협 □ 한국양봉협회 □, 기타 □) 부 □
부산물 생산	로열젤리 □ 프로폴리스 □ 화분 □ 밀랍 □ 봉독 □

□ 양봉산물 유통현황

판매현황	도매판매 □ 소매판매 □ 도·소매 판매 □
판매비율	도매판매 ( )% 소매판매 ( )%

【 서식 3 】

‘22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개,대,kg,군)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

'22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개·대·kg·군, 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5 】

'22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개소·개·대·kg·군, 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6 】

제품 검수 확인서

□ 사업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계획 및 검수결과

품목	계획량	검수량	검수결과	비고
계				

※ 검수장소 :

※ 검수결과 :

- 품목기재 :

□ 납품업체 현황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022. . .

검수자 : 소 속 성명 (인)

소 속 성명 (인)

소 속 성명 (인)

OO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313**	**2,313,334**	**347,000**	**809,667**	**1,156,667**	
전주시	200	200,000	30,000	70,000	100,000	
군산시	90	90,000	13,500	31,500	45,000	
익산시	160	160,000	24,000	56,000	80,000	
정읍시	280	280,000	42,000	98,000	140,000	
남원시	220	220,000	33,000	77,000	110,000	
김제시	170	170,000	25,500	59,500	85,000	
완주군	188	188,000	28,200	65,800	94,000	
진안군	280	280,000	42,000	98,000	140,000	
무주군	90	90,000	13,500	31,500	45,000	
장수군	65	65,334	9,800	22,867	32,667	
임실군	100	100,000	15,000	35,000	50,000	
순창군	145	145,000	21,750	50,750	72,500	
고창군	225	225,000	33,750	78,750	112,500	
부안군	100	100,000	15,000	35,000	50,000	

13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양봉농가에 자동화된 꿀 생산장비 및 보관통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로 노령화된 양봉농가 노동력 절감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12조

○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4,000	60	240,000 (100%)	36,000 (15%)	84,000 (35%)	120,000 (50%)

○ 사업대상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중 200군 이상 사육농가

- 사업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꿀벌 사육 정보 등록 완료 농가)
- 우선순위

① 양봉농가 등록 계도기간('21.8.31.까지) 내 등록 완료 농가

② 전년도('21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미지원 농가

③ 양봉 경력이 10년 이상인 농가

④ 로열젤리 자동화 생산 장비 : 300군 이상 사육농가 우선

⑤ 양봉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0~'21년)

⑥ 양봉자조금 납부 농가('21년 연속(12개월) 납부자) * 자조금 납부내역 제출

- 지원제외 : 양봉산업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농가(적발일로부터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따라 제출한 농가는 생략

○ 사업내용 :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 양봉 전동 채밀카 : 4백만원/대 한도
- 로열젤리 자동화 생산 장비 : 6,500천원/대 한도

* 로열젤리를 일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장비세트(밀랍제거기, 유충제거기, 로열젤리 자동채취기 등)로 지원. 장비별 단독 지원 불가

- 스테인레스 벌꿀 보관통 : 400천원/개, 농가당 4백만원 한도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품목 선정하되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꿀 생산장비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꿀벌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양봉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및 사육군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시·군은 지원신청 농가의 양봉농가 등록현황 및 현지 확인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육군수 확인

    * 사업대상 규모(봉군수)는 시·군 여건에 따라 자체 계획을 세워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4)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매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서식 2)를 세부적으로 작성 제출
    *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방향 설정 등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시·군 및 양봉(한봉) 협회 시·군지회에서 사육군수 등 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
- 대상자 확정 시 양봉산물·부산물 처리장비 신속히 구입
- 제품 구입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3)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구입 및 공급요령

- 제품선정 : 실용신안등록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품질보증(인증)이 되고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입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실태조사 결과 폐업·사업포기 등 꿀벌 사육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기타사항

○ 채밀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추진

○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추진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꿀벌 사육현황 : 토종꿀벌 □, 서양종꿀벌 □, 혼합 □ ✓ 체크

사육군수	군	사육형태	고정 □ 이동 □
양봉농가 등록번호			고정 및 이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개,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붙임 :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2.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1부(해당시).

2022. . .

신청자 : (인)

□ 사육군수 확인

사업자 기재군수	담당자 확인결과	확 인 자
군	군	소속 : 성명 : (인) 소속 : 성명 : (인)

※ 확인기관이 작성(확인기관은 시·군(읍면동) 또는 양봉협회 시군 지회장)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양봉농가 실태조사 현황표

※ 관련 항목에 ✓

□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주사업장) 관내 □ 관외 □
	(개 소 수) 관내 ( )개소 ( )군, 관외( )개소 ( )군

□ 양봉업 현황

사육규모	( )군 * 혼합사육 시 : 토종( )군, 서양종( )군
사육형태	고정양봉 □ 이동양봉 □ 고정 및 이동양봉 □ 전북도외 이동양봉 시 채밀지역 : 도

□ 경영규모 및 형태

사육경력	( )년
경영형태	전업 □ 겸업 □ 부업 □
	겸업 시 업종 :

* 주업(전체소득의 80%이상), 겸업(80-50%), 부업(30%이하)

□ 양봉산물 생산현황

채밀횟수 (밀원별)	( )회/년 아까시꿀 ( )회, 잡화꿀 ( )회, 밤꿀( )회, 기타 ( )회
벌꿀 품질검사	여 □ (한국양봉농협 □ 한국양봉협회 □, 기타 □) 부 □
부산물 생산	로열젤리 □ 프로폴리스 □ 화분 □ 밀랍 □ 봉독 □

□ 양봉산물 유통현황

판매현황	도매판매 □ 소매판매 □ 도·소매 판매 □
판매비율	도매판매 ( )% 소매판매 ( )%

【 서식 3 】

‘22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개,대,kg,군)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4 】

'22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개, 대,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5 】

'22년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개,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60**	**240,000**	**36,000**	**84,000**	**120,000**	
전주시	4	16,000	2,400	5,600	8,000	
군산시	7	28,000	4,200	9,800	14,000	
익산시	6	24,000	3,600	8,400	12,000	
정읍시	8	32,000	4,800	11,200	16,000	
남원시	4	16,000	2,400	5,600	8,000	
김제시	4	16,000	2,400	5,600	8,000	
완주군	5	20,000	3,000	7,000	10,000	
진안군	4	16,000	2,400	5,600	8,000	
무주군	4	16,000	2,400	5,600	8,000	
장수군	1	4,000	600	1,400	2,000	
임실군	4	16,000	2,400	5,600	8,000	
순창군	3	12,000	1,800	4,200	6,000	
고창군	3	12,000	1,800	4,200	6,000	
부안군	3	12,000	1,800	4,200	6,000	

14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꿀벌의 먹이인 화분떡을 제조하기 위한 자동화 반죽장비를 지원하여 양봉농가 생산비,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벌꿀 생산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12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93,000	2개소	186,000 (100%)	27,900 (15%)	65,100 (35%)	93,000 (50%)

○ 사업대상 :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관련 농가, 사업체, 법인, 작목반 등

○ 사업내용 :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 자동화 반죽장비 지원

- (자금용도)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를 위한 화분 분쇄기·반죽기·성형기·이송기·자동 포장기 및 기타 화분떡 제조에 필요한 부대장비 등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 관련 농가, 사업체, 법인, 작목반 등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시·군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최소 10페이지 이상), 각종 증빙서류 등(붙임 2~5 제출)

[안 내 사 항]

- ■ 도, 시군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 된 신청서류 평가
-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군은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희망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 관련 농가, 사업체, 법인, 작목반 등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하여 자문·지원, 도에 추천
  - • 사업신청 단체의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 추진 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면밀히 검토
  - • 자부담 확보 여부 점검 철저 : 자부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등) 확인 및 제출
  - • 사업추진 계획 검토의견 및 시·군비 확보 계획 서류 제출

○ 사업자 평가 및 사업대상자 선정

《 도 》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필요시 발표평가)

※ 평가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서류 및 현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점 결과를 종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시·군에 통보,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동점자 발생 시)

① 화분 반죽기 장비 설치 부지 및 건물이 확보된(소유권, 임차권 등) 사업자

②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 등)로부터 양봉과 관련된 표창 및 포상 여부

③ 양봉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양봉 관련 교육기관 또는 양봉관련 협회 및 농협중앙회 주관교육을 통한 생산기술, 사육환경, 질병, 방역 등 사양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

《 시·군 》

- 시·군은 도의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에 협조하고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특히 현장 평가에 적극 협조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도 》

- 해당 시·군에 사업비(도비, 시·군비) 확정 통보
-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시·군 》

- 해당 시·군은 도에서 통보된 도비 및 시·군비를 '22년 예산에 반영
- 해당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도비, 시·군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 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세부 사업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
    * 장비 사진, 견적서, 배치도 등 포함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붙임 6)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세부사업계획 변경

-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함.

* 중요사항 :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30%초과 변경 등

• 단,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 상 분류항목별 30%이하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자금 집행 및 정산

○ 자금 집행 및 정산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정·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보조사업자 》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군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시·군에 제출

▢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행정사항

○ 시·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2월말한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한

【 서식 1 】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6">신
청
자</td><td rowspan="3">신청자명</td><td colspan="2" rowspan="3"></td><td>대 표 자</td><td></td></tr>
<tr><td>실 무 자</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r>
<tr><td>사 업 자
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법인
등록번호</td><td></td></tr>
<tr><td>사 업 장
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신 청 자
구 분</td><td>농가, 사업체,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등</td><td>주요사업</td><td colspan="2">○
○</td></tr>
<tr><td>꿀벌먹이
제조경력</td><td colspan="4">년 (기간 : 0000 ~ 202)</td></tr>
<tr><td rowspan="3">신
청
내
역</td><td>사 업 명</td><td colspan="4">2022년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td></tr>
<tr><td>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요약)</td><td colspan="4">○
○
○
* 세부사업계획서 별첨</td></tr>
<tr><td rowspan="2">사업비
(천원)</td><td>계(100%)</td><td>도비(15%)</td><td>시・군비(35%)</td><td>자담(50%)</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유의사항</td><td colspan="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td></tr>
</table>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 필요한 개인정보의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시・군비 확보계획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시), 기타 증빙자료(판매내역, 회원확인증, 교육이수증, 자부담 확보내역 등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 서식 2 】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02 . . .

제 출 자

신청자명			
대 표 자		신청자 구분	농가, 사업체,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등
꿀벌먹이 제조경력	년 (기간 : ~)		
사 업 장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 사업계획서

1. 배경 및 목적

가. 추진배경

○ -

나. 사업목적

○ -

※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

나. 사업기간 : 2022. . ~ .

라. 총사업비 : 총 천원

* 재원별 : 도비 00,000, 시군비 00,000, 자담 00,000

다. 주요장비

- *(분쇄기) 화분 원재료 분쇄 장비 등*
- *(반죽기) 화분떡 제조를 위한 반죽 장비 등*
- *(성형기) 화분떡 성형을 위한 장비 등*
- *(포장기 및 기타) 화분떡 절단기 및 포장을 위한 장비 등*

다. 사업위치 :

사업위치도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꿀벌 먹이(화분떡) 생산, 이용 등 활용 목표 및 추진 계획 등 서술

나.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내용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0	0	0	0	0
(분쇄장비)							
(반죽장비)							
(성형장비)							
(포장장비)							
(기타장비)							

※ 세부 장비별 사업비 입증자료(장비 사진 등 카달로그, 견적서, 계약서 등)첨부

다. 사업추진 세부계획

○ 사업추진체계도 서술

○ 시설구축 부지 위치 및 건물 등 상세내역

○ 사업추진 단계 등 일정 상세내역

세부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쇄장비)												
(반죽장비)												
(성형장비)												
…												

○ 장비 구축 예정내역(사진 등 포함)

○ 자부담금 확보현황

○ 부지 및 건물 확보현황 또는 계획

다. 지역 내 양봉농가 연계 방안 및 생산품 유통계획

○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 계획 및 농가협력 방안

○ 양봉농가 연계 꿀벌 먹이(화분떡) 유통계획 등

라. 기대효과 등

○ 양봉 농가 연계 경쟁력 확보를 통한 양봉산업 발전 방안 등

※ 위 예시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 서식 3 】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심사 평가표

○ 단체명 : _____, 대표자 : _____ ○ 총득점 : _____ 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점	비고
사업주체 역량	재원조달 능력	▪ 신용상태, 자부담 확보방안 등 - 100% 확보(15), 100% 미만은 확보액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80% 이상 10, 50%이상 5, 50% 이하 1), 미확보(0)	15	10	5	1	0		
	수행실적	▪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시설 설치 또는 운영실적(공고일 전일까지) - 10년 이상(10), 5년 이상(7), 3년 이상(5), 1년 이상(1)	10	7	5	1			
	공급현황	▪ 꿀벌 먹이(화분떡) 공급 현황 - 100톤 이상(5), 50톤 이상(3), 20톤 이상(1), 20톤 이하(0) * 화분 공급내역서 등 확인	5	3	1	0			
사업추진 여건	사업목표	▪ 꿀벌 먹이(화분떡) 생산, 이용 등 활용 목표 및 추진 계획의 적정성	10	8	6	4	2		
	사업부지	▪ 화분 반죽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부지 및 건물 확보여부 - 확보(10), 확보계획(5), 미제시(0)	10	5	0				
	지자체 의지	▪ 지자체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	5	4	3	2	1		
사업계획 적정성	제조능력	▪ 연간 꿀벌 먹이(화분떡) 제조 계획 및 농가협력 가능성	15	10	5	3	1		
	유통계획	▪ 양봉농가와 협력한 화분떡 유통계획의 적정성	15	10	5	3	1		
	기대효과	▪ 양봉농가 연계 경쟁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	10	8	6	4	2		
양봉관련 교육	교육이수	▪ 사업단체 및 업체의 양봉관련 교육이수 실적 - 10회 이상(5), 5회 이상(3), 5회 이하(1) * 공고일 전일부터 5년전까지	5	3	1				
감점	사업계획 확인	▪ 현장확인 결과 사업신청서 내용 불일치	-5						
가점	양봉관련 표창 및 포상	▪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로부터 양봉과 관련된 표창, 포상 여부 - 농식품부(5), 도(3), 시·군(1)	5	3	1				
심사 총평									

* 평가항목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항은 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적용

202 . . . 선정위원 소속 OOOOO 성명 O O O (서명/인)

【 서식 4 】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 보조사업자

단 체 명	
대 표 자 명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2. 지원내용

사 업 명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사 업 비	00,000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사업내용	■

3. 지원조건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 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빙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전라북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상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본인은 「20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의 지원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 . . .

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5 】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생산자단체 등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년 월 일)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신청사업명	’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수행이력(최근 3년 이내)

지 원 받은년도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소재지	사업량 (면적, 종류 등)	사 업 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서식 6 】

‘22년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	**186,000**	**27,900**	**65,100**	**93,000**	
도유보	2	186,000	27,900	65,100	93,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5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FTA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도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합계	FTA기금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50	620	31,000 (100%)	9,300 (30%)	2,790 (9%)	6,510 (21%)	9,300 (30%)	3,100 (10%)

*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자부담' 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 으로 대체 가능

○ 사업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장비는 개당 10만원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 예시) ① 10만원 장비 구입시, 3만원 국고보조, 3만원 융자, 3만원 지방비, 1만원 자부담

  ② 12만원 장비 구입시, 3만원 국고보조, 3만원 융자, 3만원 지방비, 3만원 자부담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이면서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을 한 양봉농가
- **(2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이상 300군 이하 농가로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농가등록 예정인 농가
- **(3순위)** 꿀벌 30군(단, 토종벌은 10군) 미만 또는 300군 초과 농가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FTA기금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620**	**31,000**	**9,300**	**2,790**	**6,510**	**9,300**	**3,100**	
전주시								
군산시	30	1,500	450	135	315	450	150	
익산시	40	2,000	600	180	420	600	200	
정읍시	50	2,500	750	225	525	750	250	
남원시	40	2,000	600	180	420	600	200	
김제시	80	4,000	1,200	360	840	1,200	400	
완주군	40	2,000	600	180	420	600	200	
진안군	35	1,750	525	157	368	525	175	
무주군	40	2,000	600	180	420	600	200	
장수군	25	1,250	375	113	262	375	125	
임실군	80	4,000	1,200	360	840	1,200	400	
순창군	50	2,500	750	225	525	750	250	
고창군	40	2,000	600	180	420	600	200	
부안군	70	3,500	1,050	315	735	1,050	350	

16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 사육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하여 사슴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양록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600	165	99,000 (100%)	14,850 (15%)	34,650 (50%)	49,500 (50%)

○ 사업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등)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사슴 인공수정(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사슴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세부 선정기준 마련, 사슴 사육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사업대상 농가는 시・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적정한 인공수정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시행
- 사슴 인공수정 완료 후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인공수정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인공수정 실시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사슴 사육현황(축산업 등록번호 :) 관련 항목에 ✓

사 육 품 종	엘크 □ 꽃사슴 □ 레드디어 □ 순록 □		
사육마릿수	두	성별	암( )두, 수( )두

□ 사업신청 내용

사 업 명	신청 두수	단가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600천원/두				

□ 사업추진 계획

추진시기	추진내용	비고
2022. 월		

상기와 같이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사업명	신청두수	단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600천원/두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2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2년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두, 천원)

연번	대상자		사육 품종	사업량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주소는 사업장(축사) 위치를 기재

【 서식 4 】

'22년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두, 천원)

시군	대상자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소	성명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주소는 사업장(축사) 위치를 기재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65**	**99,000**	**14,850**	**34,650**	**49,5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10	6,000	900	2,100	3,000	
정읍시	14	8,400	1,260	2,940	4,200	
남원시	20	12,000	1,800	4,200	6,000	
김제시	38	22,800	3,420	7,980	11,400	
완주군	12	7,200	1,080	2,520	3,6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6	3,600	540	1,260	1,800	
부안군	65	39,000	5,850	13,650	19,500	

17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균이)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현대화 사육 기자재 지원을 통한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 및 자동화로 농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흑염소 생산으로 FTA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흑염소 농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	사 업 비 (천원)			
			합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담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2,000	112	225,000 (100%)	112,500 (50%)	22,500 (10%)	90,000 (40%)

○ 지원대상 :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 염소 사육농가

- 우선순위

① 전년도('21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미지원 농가

② 염소 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20 ~ '21년)

-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0 ~ '21년) 사업 포기자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0~'21년)

③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염소 사육 기자재 지원

○ 지원품목

① 체중측정용 저울 : 1,800천원/대 한도

② 축사 바닥재 : 3백만원/농가 한도

※ 플라스틱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농가 실정에 맞는 제품으로 자율 선정(분변이 하부로 배출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설치, 고상식 축사는 바닥재 지지대 포함 가능)

③ 탈부착 덤프 적재함 : 5백만원/농가 한도

※ 1톤 화물차 등에 탈부착이 가능한 덤프 장비로 적재함을 동력으로 기울여서 퇴비 등을 자동으로 내려 운반하는 장비

④ 축사 울타리 : 7백만원/농가 한도

※ 금속성 재질로 환기가 될 수 있는 철조망 형태를 나타내는 제품으로 선정

⑤ 자동 사료 급이기 : 14백만원/개소 한도

※ 지원단가를 준수하되 농가당 지원한도는 시·군 실정에 맞게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④~⑤번 시설·장비는 설치비 포함(사업자등록 업체와 계약하여 시공(인건비 등 세부견적서 제출), 자가시공 시 인건비는 인정하지 않음)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염소 사육 기자재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염소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염소 사육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매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 시 염소 사육 기자재 신속히 구입
- 제품 구입 및 설치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구입 및 공급요령

- 제품선정 : 품질보증(인증) 또는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입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집) - - H.P) 01 - -
사 업 장 소 재 지			

□ 사육 및 시설현황

○ 축산업 허가·등록 번호 :

사육 품종	사육현황 (두)	사육시설 현황		
		사육형태	동	㎡
		방목형 □, 축사형 □, 혼합형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균특이양 (50%)	시군비 (10%)	자 담 (40%)

상기와 같이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2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2년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정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 담	
합 계	**112**	**225,000**	**112,500**	**22,500**	**90,000**	
전주시						
군산시	7	14,000	7,000	1,400	5,600	
익산시	5	10,000	5,000	1,000	4,000	
정읍시	8	16,000	8,000	1,600	6,400	
남원시	14	28,000	14,000	2,800	11,200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18	37,000	18,500	3,700	14,800	
무주군	4	8,000	4,000	800	3,200	
장수군	3	6,000	3,000	600	2,400	
임실군	20	40,000	20,000	4,000	16,000	
순창군	21	42,000	21,000	4,200	16,800	
고창군	5	10,000	5,000	1,000	4,000	
부안군	7	14,000	7,000	1,400	5,600	

18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돼지개량네트워크사업을 통해 선발된 우수 종돈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량 종돈의 활용성을 증대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5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분	단가 (천원)	사업량 (두)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시군비
우수종돈 농가보급사업	1,200	75	90,000 (100%)	45,000 (50%)	45,000 (50%)

○ 사업대상 : 돼지 정액등처리업체(인공수정센터)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를 받은 돼지인공수정센터

※ 지원제외 : 구제역, 돼지열병 등 돼지 1종 법정전염병 발생 업체는 1년간 제외

○ 사업내용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종돈장(참여·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된 우수종돈 구입비 지원

-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에 참여하는 참여 및 협력 종돈장에서 생산되고, 국립축산과학원의 유전능력 평가 결과 능력이 우수한 종돈
- 종돈 구매시점의 1개월 전·후의 유전능력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원

* 다만, 돼지개량네트워크구축사업 참여가 3년이 되지 않은 종돈장에서 생산된 종돈의 경우 표현형이 우수한 종돈

** 지원제외 : 90kg 도달일령 135일 초과 또는 등지방두께 1.5㎝ 초과 또는 생후 15개월령 초과인 종돈

□ 세부 지원한도

○ 지원한도 : 일반종돈과 우수종돈과의 구입가격 차액을 종돈의 유전능력(검정결과)에 따라 차등(마리당 300~1,200천원)하여 정액지원

- 사업대상자 별로 최대 30백만원 (우수정액등처리업체 50백만원)

○ 지 원 액

- 부계종돈(두록)

선발지수 (Index)	0.0이상 ~ 3.5미만	3.5이상 ~ 4.5미만	4.5이상 ~ 6.0미만	6.0이상
표현형	135일 이내	133일 이내	127일 이내	122일 이내
지원액	300천원	600천원	900천원	1,200천원

*** 선발지수 = 90㎏도달일령 3 : 등지방두께 1 (축산과학원에서 평가한 유전능력평가 지수)**

- 모계종돈(랜드레이스, 요크셔) : 900천원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두,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시군비	자 담	
합 계	**75**	**90,000**	**45,000**	**45,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25	30,000	15,000	15,000		
남원시						
김제시	25	30,000	15,000	15,000		
완주군						
진안군	25	30,000	15,000	15,0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9-1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도) -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FTA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피해 대책으로 친환경사양관리, 품질고급화, 가축질병예방 등에 필요한 축산기자재 보급으로 대외 경쟁력 향상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추진방향

○ 가축사육환경의 최적화로 품질 좋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 축사 내 환경조절기능이 적합한 우수 기종 설치로 사업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분	단가(천원)	사업량(대)	사업비(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사업별 상이	100	800,000 (100%)	120,000 (15%)	280,000 (35%)	400,000 (50%)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축산업등록이 안 되는 축종도 지원가능)

○ 지원축종 : 전 축종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지원품목 및 단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되 시군에서 조정 가능함(단, 농가당 지원한도 10백만원 준수)

※ 세부 지원한도

구 분	CCTV	미네랄 급이기	공기 청정기	동결정액 액체질소 보관고	사슴 보정틀	전기 절감기	양돈 모바일 체중 측정기
한도액(천원)	2,000	2,000	3,000	1,000	8,000	5,000	7,000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비율을 준수하고 사업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1농가당 1품목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이 미달될 경우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지원 등 조치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보유 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중에 기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전업규모 이하
3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4순위)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지원제외 】

◈ 과거 2년간('20 ~ '21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동-10747(2019.10.30.)호]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19 ~ '20년) 사업제한

○ 기종 선정

- 품질보증(인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농가가 선정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부담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된 시설・장비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2. 1월말한 ⇒ 서식 2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한 ⇒ 서식 3

【 서식 1 】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사업(기자재)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동	㎡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	소요사업비
계		천원	천원

상기와 같이 고품질축산물생산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2년　1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도 제출 : 1월말까지)

대 상 자		사육 현황		신청 현황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품목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3 】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도 제출 : 12월말까지)

구분		사업량 (조)			사 업 비(원)									
					계 획				실 적				잔 액	
품목	농가수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계														

※ 품목별 구분 작성

19-2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도) -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음용수질 개선제 급여를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사료 효율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 고품질 정액 지원으로 돼지 만성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농가 손실 방지 및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추진방향

○ 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시범적 파급효과 거양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상반기 사업 추진 완료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통)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사업별 상이	1,385	480,000 (100%)	72,000 (15%)	168,000 (35%)	240,000 (50%)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축산업등록이 안 되는 축종도 지원가능)

○ 사업내용 : 음용수질개선제, 생균제, 돼지 우량정액 지원

- **(음용수질개선제, 생균제)** 전 축종 지원 가능, **(우량 정액 지원)** 돼지

○ 지원단가

- 음용수질개선제 : 350천원/통(음용수질개선장비지원농가 지원가능)
  - 농가당 6개월 사용분 이내에서 시군 조정지원

- 생균제 : 1,000천원/농가당
  • 사료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보조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의거 허가된 사료첨가제로 사료효율의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우수제품 구입지도
- 돼지 우량정액지원 : 15천원/두
  • 축산법 제18조규정에 의한 정액증명서(축산법시행규칙 제23조 별지11호 서식, 종축개량협회 발행)를 농가로부터 징구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음용수질 개선제, 생균제, 우량정액을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비율을 준수하고 사업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축산물품질향상제 지원사업 사업수요 부족 등 시군 여건에 맞게 축산물기자재사업으로 전용 사용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보유 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중에 기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전업규모 이하
3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4순위)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지원제외 】

◈ 과거 2년간('20 ~ '21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20.9.4.), 동-10747(2020.10.30.)호]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년) 사업제한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2. 1월말한 ⇒ 서식 2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한 ⇒ 서식 3

【 서식 1 】

고품질축산물생산지원사업(품질향상제)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동	㎡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	소요사업비
계		천원	천원

상기와 같이 고품질축산물생산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2년　1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도 제출 : 1월말까지)

대 상 자		사육 현황		신청 현황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품목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서식 3】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도 제출 : 12월말까지)

구분		사업량 (조)			사 업 비(원)									
					계 획				실 적				잔 액	
품목	농가수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계														

※ 품목별 구분 작성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호·통·두, 천원)

구 분	합 계		축산기자재지원		축산물품질향상제재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485**	**1,280,000**	**100**	**800,000**	**1,385**	**480,000**
전주시	6	2,000			6	2,000
군산시	23	31,000	3	24,000	20	7,000
익산시	153	110,000	8	60,000	145	50,000
정읍시	306	307,000	26	210,000	280	97,000
남원시	106	84,000	6	50,000	100	34,000
김제시	217	168,000	12	96,000	205	72,000
완주군	30	48,000	5	40,000	25	8,000
진안군	89	59,000	4	30,000	85	29,000
무주군	16	15,000	1	10,000	15	5,000
장수군	47	69,000	7	55,000	40	14,000
임실군	136	95,000	6	50,000	130	45,000
순창군	63	43,000	3	23,000	60	20,000
고창군	192	160,000	12	96,000	180	64,000
부안군	101	89,000	7	56,000	94	33,000

20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음용수질 개선장비 보급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
♣ 가축의 음용수 수질개선으로 청정 축산물 생산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10,000	45	450,000 (100%)	81,000 (18%)	189,000 (42%)	180,000 (40%)

※ 시·군 실정에 따라 세부 사업량 등 조정지원

○ 사업내용 : 음용수질 개선 기계 장비(약품 투약기, 정수기 등) 구입 및 설치

※ 특허 출원 및 정부기관에서 품질을 인증한 제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에 생산된 제품을 우선 선정토록 지도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전 축종)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2순위) 전업규모 이하
3순위) 전업~기업규모 이하, 4순위) 기업규모 이상

* 전업농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이상

** 기업농규모 : 전업농의 3배 수준 이상(예 : 한육우의 경우 150마리 이상)

【 지원제외 】

◈ 과거 2년간('20 ~ '21년) 사업 포기자 사업제한

◈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 사업제한(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20.9.4.), 동-10747(2020.10.30.)호]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년) 사업제한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제품 선정 방법

- 품질보증(인증) 및 A/S가 용이한 제품을 농가가 선정
- 음용수질 개선장비 중 정수기 형식제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함

<정수기 형식 설치 기준>

【 다음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1. 수질은 지하수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 이상일 것.
   ⇒ 장비 설치 30일 후 국가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제출
   *** 검사용 음용수는 시군 공무원 입회 시 채취 및 봉인한 것만 인정**
   ※ 관련법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2. 음용수기를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장비 설치 후 1항, 2항 충족 시 보조금 지급**

○ 농가 공급방법

- 시장·군수는 음용수질개선장비 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
- 수질개선장비를 농가와 협의하여 최적 장소에 설치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설치완료 사진 첨부)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부담 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행정사항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제출 : ’22. 1월말 한 ⇒ 서식 2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12월말 한 ⇒ 서식 3

【 서식 1 】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전화번호 : 자택)　　(핸드폰)

○ 사업장 소재지 :

☐ 사육 및 시설현황

축종	사육 현황(두,수)				시설 현황	
	계	성축	육성축	자축	동	㎡

☐ 신청내역

품 목	신청량	단 가(천원)	소요사업비(천원)
계			
음용수질개선장비			
정수기			

상기와 같이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사육 현황		신청 현황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품목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3 】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원)									
					계 획				실 적				잔 액	
품목	농가수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계														

※ 품목별 구분 작성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45**	**450,000**	**81,000**	**189,000**	**180,000**	
전주시						
군산시	1	10,000	1,800	4,200	4,000	
익산시	5	50,000	9,000	21,000	20,000	
정읍시	6	60,000	10,800	25,200	24,000	
남원시	3	30,000	5,400	12,600	12,000	
김제시	5	50,000	9,000	21,000	20,000	
완주군	4	40,000	7,200	16,800	16,000	
진안군	3	30,000	5,400	12,600	12,0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3	30,000	5,400	12,600	12,000	
순창군	5	50,000	9,000	21,000	20,000	
고창군	5	50,000	9,000	21,000	20,000	
부안군	5	50,000	9,000	21,000	20,000	

※ 단, 시 · 군 실정에 따라 사업량 등 조정 가능

21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이상기온에 따른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축사 내 환경조절기능이 적합한 우수 장비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분	단가(천원)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사업별 상이	162	1,620,000 (100%)	292,000 (18%)	680,000 (42%)	648,000 (40%)

○ 사업내용 : 폭염 대응 장비 지원

※ 세부 지원한도

① 전축종

품 목 명	지원한도	품 목 명	지원한도
자가발전기	10백만원/대	제빙기	4백만원/대
환풍기	2백만원/대	대형 서큘레이터 (*축사 천장 설치)	5백만원/대

② 양돈, 가금

품 목 명	지원한도	품 목 명	지원한도
(양돈) 축사 냉방기(에어컨)	20백만원/농가	(가금) 안개분무기	12백만원/농가
(양돈) 쿨링시트템 냉각시설[1]	20백만원/농가	(양돈, 가금) 축사 지붕 스프링클러[2] 쿨 링 패 드	4백만원/농가 20백만원/농가

1) 축사에 기존 설치된 쿨링시스템(쿨링패드 등)의 순환된 물을 냉각시켜 재순환 시킬 수 있는 시설

2) 축사 지붕에 설치하여 물에 높은 압력을 걸어 노즐에서 물보라처럼 지붕으로 분사시키는 장비

* 시·군 여건에 따라 품목 선정 및 비율, 농가 당 지원한도 등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2순위) HACCP·친환경 축산물 인증·동물복지 인증 농가

(3순위) 양돈, 가금 농가

(4순위) 전업규모* 미만 농가

※ 전업규모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돈 1천두 이상, 양계(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양 및 흑염소 300두 이상

- 후순위 : 과거 2년간('20~'21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사업대상자

-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0~'21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같은 과-10747(2019.10.30.)호]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0~'21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폭염대응 장비 설치(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폭염 대응 적기에(6월말 이전)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매년 사후관리 실시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 시 폭염대응 장비 신속히 구입 및 설치
- 제품 구입 및 설치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구입 및 공급요령

- 제품선정 : 품질보증(인증) 또는 A/S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정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입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또는 시설·장비 설치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시·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사후관리 기간을 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대상자의 이행상태 등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 기타사항

○ 여름철 이전(6월말까지) 사업완료 추진

○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추진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사육 및 시설현황

○ 축산업 허가·등록 번호 :

축 종	사육현황 (두, 수)	사육시설 현황	
		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8%)	시군비 (42%)	자 담 (40%)

상기와 같이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2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대,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3 】

'22년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정산내역

(단위 : 대,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품목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별첨 1 】

안개분무기 시설기준

가. 공통사항

○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선정 및 계약은 특허 혹은 실용신안 보유업체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노즐 막힘에 대한 농가의 피해 및 미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업체는 농가에서 막힌 노즐에 대하여 2년간 무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약제에 의한 노즐 막힘 및 기계 유입수의 수질검사시 TDS(총 용존 고형물) 수치 200PPM이상의 농가는 무상 지급 의무에서 제외된다.(위반 시 사업 참여 제한)

○ 기계의 화재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고압펌프 및 수온조절 히터 등에 각각 누전차단기를 필히 설치하여야 하고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분사펌프

1) 분사펌프 내의 부식에 의한 노즐 막힘 방지를 위하여 유체가 닿는 모든 부위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2) 환절기 및 겨울철의 축사온도나 가축의 체감온도 하락 예방을 위하여 고온 분사가 가능한 펌프로서 허용 유체온도는 최저 80℃ 이상 되어야 한다.

3) 장기간 사용을 정지한 후 재사용시 펌프내의 녹물 또는 불순물 등을 배수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 콘트롤

1) 축사내의 온도, 습도에 따른 열량지수를 자동 계산하여 최적의 분사조건을 유지하도록 인공지능 콘트롤 자동분사가 되어야 함은 물론 2개동이상 축사에 대한 별도 설정기능 및 실시간으로 각각 제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축사내의 온도, 습도, 열량지수, 수온, 작동상태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액정 화면이 구비되어야 하며, 희망습도 및 콤프레샤 에어분사 시간을 각동마다 개별적으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액정화면상에도 표시되어야 한다.

3) 약제와 물의 원활한 희석을 위해 브로워나 스크류가 구비되거나 또는 토출수에 약제가 자동으로 유입되어 분사될 수 있는 구조가 구비되어야 하며 자동소독 버튼에 의한 소독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분사 정지후 자동으로 콤프레샤를 일정시간 배관내에 분사하여 분사후의 물 떨어짐 현상 방지 및 외부로의 물 및 소독약의 손실이 없어야 하며 실시간 필요로 하는 온도와 근접한 수온으로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동수온조절기기

1) 겨울철 축사내부의 온도 및 가축 체감온도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을 가열하기 위한 히터가 기계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최고 80℃까지 물을 가열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배관 및 장치는 이를 견딜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히터제어를 위한 안전장치를 2단계(온도 및 수위 제어장치 등) 이상 구비하여야 한다.

4. 기계보호 케이스

1) 제품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펌프 및 각종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가 있어야 한다.

2) 혹한기 내부장치의 동파 방지를 위하여 기계보호시설 내부에 자동 온도 조절기에 의해 조절되는 가열장치(히터 또는 열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콤프레샤

1) 분사후의 물 떨어짐 및 동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콤프레샤가 구비되어야 한다.

6. 배관

1) 유체가 흐르는 모든 부위는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 노즐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분사되는 유체를 2단계 이상 필터링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동파 방지기능으로 배관내 잔수(남아있는 물) 배출을 위해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첨 2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62**	**1,620,000**	**292,000**	**680,000**	**648,000**	
전주시						
군산시	7	70,000	12,800	29,200	28,000	
익산시	38	380,000	68,400	159,600	152,000	
정읍시	20	200,000	36,000	84,000	80,000	
남원시	12	120,000	21,600	50,400	48,000	
김제시	12	120,000	21,600	50,400	48,000	
완주군	30	300,000	54,000	126,000	120,000	
진안군	7	70,000	12,600	29,400	28,000	
무주군	1	10,000	1,800	4,200	4,000	
장수군	1	10,000	1,800	4,200	4,000	
임실군	7	70,000	12,800	29,200	28,000	
순창군	6	60,000	10,800	25,200	24,000	
고창군	12	120,000	21,600	50,400	48,000	
부안군	9	90,000	16,200	37,800	36,000	

22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축종별 폭염에 대한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지원하여 폭염 장기화로 인한 가축폐사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손실 예방 및 생산성 향상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분	단가 (천원)	사업량 (kg)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20	40,000	800,000 (100%)	120,000 (15%)	280,000 (35%)	400,000 (50%)

○ 지원대상 : (양돈) 1천두 미만

(가금) 닭 1천 ~ 50천수 미만, 오리 1천 ~ 30천수 미만

※ 시·군 실정에 맞게 자체 지원 기준(축종, 사육규모 등)을 마련하여 지원 가능

-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2순위) HACCP·친환경 축산물 인증·동물복지 인증 농가

(3순위) 전업규모* 미만 농가

* 전업규모 기준 : 한·육우 50두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양돈 1천두 이상, 양계(닭) 3만수 이상, 오리 5천수 이상, 사슴 50두(엘크 34두) 이상, 양 및 흑염소 300두 이상

-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0~'21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같은 과-10747(2019.10.30.)호]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0~'21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

- 지원대상 제품 : 폭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입증된 제품

• **탈수 예방, 대사촉진, 사료섭취량 증대** 등을 통해 **폭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지원 가능하며, **사용효율 등을 고려한 지원 단가 조정 가능**

* 제품 구입(희망) 서류 제출 시 폭염 스트레스 완화 효과(탈수 예방, 대사촉진, 사료섭취량 증대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

• **조달청 등록 및 도내 업체 생산 제품으로 우선 선정**

○ 지원한도 : 4백만원/농가 한도

* 농가당 지원한도를 준수하되 사업신청이 미달될 경우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지원 등 조치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적정 제품이 폭염 대응 적기에(6월말 이전) 공급되도록 수시 지도·감독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 시 폭염대응 장비 신속히 구입 및 설치
- 제품 구입 및 설치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구입 및 공급요령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입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구입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기타사항

○ 여름철 이전(6월말까지) 사업완료 추진

○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후순위 대상자 선정 추진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사육 및 시설현황

○ 축산업 허가·등록 번호 :

축 종	사육현황 (두, 수)	사육시설 현황	
		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kg)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상기와 같이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청 내용	품목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3】

'22년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kg,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서식 4】

'22년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kg,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kg,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40,000**	**800,000**	**120,000**	**280,000**	**400,000**	
전주시	200	4,000	600	1,400	2,000	
군산시	1,400	28,000	4,200	9,800	14,000	
익산시	3,000	60,000	9,000	21,000	30,000	
정읍시	5,200	104,000	15,600	36,400	52,000	
남원시	5,500	110,000	16,500	38,500	55,000	
김제시	6,000	120,000	18,000	42,000	60,000	
완주군	2,000	40,000	6,000	14,000	20,000	
진안군	2,500	50,000	7,500	17,500	25,000	
무주군	600	12,000	1,800	4,200	6,000	
장수군	600	12,000	1,800	4,200	6,000	
임실군	3,000	60,000	9,000	21,000	30,000	
순창군	2,000	40,000	6,000	14,000	20,000	
고창군	7,000	140,000	21,000	49,000	70,000	
부안군	1,000	20,000	3,000	7,000	10,000	

23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김형배	280-268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으로 생육 촉진, 장내 암모니아 및 유해 가스를 감소시킴으로써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kg)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40	16,667	666,667 (100%)	100,000 (15%)	233,334 (35%)	333,333 (50%)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제품을 농가 자율선택 하되 지원단가 기준 준수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오리 농가 제외)

- 우선순위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

(2순위) HACCP·친환경 축산물 인증·동물복지 인증 농가

(3순위) 산란계 농가

(4순위)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 사육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농가

(5순위) 방역활동이 우수하고, 농식품사관학교 마이스터대학 등 가축 방역교육 적극 참여농가

※ 시·군 실정에 맞게 자체 지원 기준(축종, 사육규모 등)을 마련하여 지원 가능

- 지원제외

① 과거 2년간('20~'21년) 사업 포기자

② 무허가 한우정액 보관 및 사용농가(한우농가 한정)
[관련 전북도 축산과-8569(2019.9.4.), 같은 과-10747(2019.10.30.)호]

③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
- 구제역 항체 양성율 미만 과태료 처분농가('20~'21년)

④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

- 급여시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선정

  * 제품 구입(희망) 서류 제출 시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저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제품설명서 등) 제출

- 산란계의 경우 난각 두께 향상·파란율 감소 등의 효과가 입증된 제품 선정
- 아미노산 및 미네랄 복합제제 우선 선정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여를 위해 정밀 음용수 자동투약기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조달청 등록 및 도내 업체 생산 제품으로 우선 선정

○ 지원한도 : 4백만원/농가 한도

- 농가당 지원한도를 준수하되 사업신청이 미달될 경우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지원 등 조치

□ 세부 추진요령

○ 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도) → 사업신청(농가) → 대상자 선정(시·군) →
폭염 스트레스완화제 구입(농가) → 사업추진 지도.점검 → 사업완료 정산

《 도 》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사업추진 총괄 지도·감독
- 사업비 배정 및 교부

《 시·군 》

- 지원계획을 읍면동 및 축산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희망 농가 사업신청서 접수
-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세부 선정기준 마련, 축산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 적정 여부 등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서식3)을 도에 보고 : ′22. 2월말 까지
- 사업추진실적 보고 및 보조금 지급·정산 실시
-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시 신속히 대상자 변경조치 등 불용예산 최소화

《 사업대상자 》

- 사업 신청 기한 내 시·군에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서식1) 제출
- 대상자 확정 시 폭염대응 장비 신속히 구입 및 설치
- 제품 구입 및 설치 완료 후 구입증빙 서류(구매계약서, 사진,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표 등)를 첨부하여 시·군에 보조금 청구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서식2)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 구입 및 공급요령

- 제품납품업자의 자격 : 사업자등록 사업자(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도내 업체 생산 제품 우선 구입

□ 자금 집행 및 정산

○ 시행주체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사업비가 지원단가 이하 시는 지원비율에 의거 정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 》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즉시 제품 구입 사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 사후관리

○ 사후관리 추진

《 시・군 》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
- 시・군은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지원대상 선정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등

- 희망농가 사업신청 및 사업확정(농가→시・군) : '22.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보고(시・군→도) : '22. 2. 28.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시・군→도) : '22. 12. 31.까지

【 서식 1 】

‘22년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 사육 및 시설현황

○ 축산업 허가·등록 번호 :

축 종	사육현황 (두, 수)	사육시설 현황	
		동	㎡

□ 사업신청 내용

품목	신청량 (kg)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합 계 (100%)	도 비 (15%)	시군비 (35%)	자 담 (50%)

상기와 같이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OO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신청 포기서

□ 사업 신청 내용

<table>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연 락 처</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신청
내용</td><td rowspan="2">품목</td><td rowspan="2">사업량
(포, 품목명)</td><td rowspan="2">단가
(천원)</td><td colspan="4">사 업 비(천원)</td></tr>
<tr><td>계</td><td>도비</td><td>시군비</td><td>자담</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식 3 】

'22년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대상농가 선정결과

(단위 : kg, 천원)

연번	성 명	주 소	사업량		사업비				비고
			품 목	수 량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2년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정산내역

(단위 : kg, 천원)

시군	사 업 계 획					집 행 실 적						집행잔액		
	사업량	사업비				농가수	수량	사업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kg,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6,667**	**666,667**	**100,000**	**233,334**	**333,333**	
전주시	100	4,000	600	1,400	2,000	
군산시	567	22,667	3,400	7,934	11,333	
익산시	1,600	64,000	9,600	22,400	32,000	
정읍시	2,700	108,000	16,200	37,800	54,000	
남원시	2,500	100,000	15,000	35,000	50,000	
김제시	2,500	100,000	15,000	35,000	50,000	
완주군	300	12,000	1,800	4,200	6,000	
진안군	1,400	56,000	8,400	19,600	28,000	
무주군	100	4,000	600	1,400	2,000	
장수군	300	12,000	1,800	4,200	6,000	
임실군	900	36,000	5,400	12,600	18,000	
순창군	500	20,000	3,000	7,000	10,000	
고창군	1,800	72,000	10,800	25,200	36,000	
부안군	1,400	56,000	8,400	19,600	28,000	

2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FTA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2022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지원조건

구분	상환기간	이율(%)	사 업 비 (천원)		
			합계	융자(FTA기금)	자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30,775,000 (100%)	24,620,000 (80%)	6,155,000 (20%)
FTA기금	5년거치 10년상환	1%	11,812,500 (100%)	9,450,000 (80%)	2,362,500 (20%)
이차보전		2%	18,962,500 (100%)	15,170,000 (80%)	3,792,500 (20%)

○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등 개축 또는 개보수

○ 사업대상

-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또는 법인
- 만 50세 이하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 3년 이상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2022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우선지원 요건 충족자를 지원
- 남은음식물 급여하는 양돈농가,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5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FTA기금)

담당자	전화번호
진재권	280-463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최적의 환경·사양·경영관리 등 시설개선으로 노동력 및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경쟁력 강화 도모

☐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축산법 제3조

☐ 사업개요

○ 지원조건

구분	상환기간	이율(%)	사 업 비 (천원)			
			합계	FTA기금	융자	자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2%	11,000,000 (100%)	3,300,000 (30%)	5,500,000 (50%)	2,200,000 (20%)

○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축사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CCTV, 원격 또는 자동제어 가능한 자동화장비

○ 사업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자
- 곤충산업육성법 및 양봉산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된 농가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사업완료 후 빅데이터플랫폼에 ICT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FTA기금	융자	자 담	
합 계	**44**	**11,000,000**	**3,300,000**	**5,500,000**	**2,200,000**	
전주시						
군산시	2	532,170	159,651	266,085	106,434	
익산시	3	634,340	190,302	317,170	126,868	
정읍시	10	2,471,770	741,531	1,235,885	494,354	
남원시	3	811,420	243,426	405,710	162,284	
김제시	5	1,340,000	402,000	670,000	268,00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1	349,970	104,991	174,985	69,994	
장수군	1	320,300	96,090	160,150	64,060	
임실군	2	418,210	125,463	209,105	83,642	
순창군	5	1,314,410	394,323	657,205	262,882	
고창군	10	2,467,580	740,274	1,233,790	493,516	
부안군	2	339,830	101,949	169,915	67,966	

V 친환경축산팀 사업계획

1.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 245
2.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사업(도) ····· 248
3.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도) ····· 253
4.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도) ····· 261
5.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도) ····· 268
6.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축발) ····· 274
7.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축발) ····· 280
8.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축발) ····· 289
9. 조사료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축발) ····· 297
10.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축발) ····· 304
11.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축발) ····· 308
12.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축발) ····· 312
13.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축발) ····· 315
14.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사업(축발) ····· 318
15.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축발) ····· 322



1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국내산 조사료(풀사료)의 재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경종·축산 농가 경영안정 도모 및 도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천톤)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6/톤	389	2,333,332 (100%)	700,000 (30%)	1,633,332 (70%)

○ 사업대상 :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단체(농・축・낙협 등),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인(경종농가, 초식가축 축산농가)

○ 사업내용 : 동·하계 조사료 생산량에 장려금 지원

○ 지원한도 :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 지급하되 최대 동계 18톤/ha, 하계 35톤/ha까지 지급

□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

- 축산농가가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자가소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경종농가가 경영체와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재배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 사료공장에 공급된 사료작물
- 조사료 경영체가 재배하여 축산농가 및 섬유질 사료공장에 공급된 사료작물

※ 지원대상 제외 : 재배하지 않는 야생초(갈대,볏짚 등),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녹비작물 재배·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는 지역(농가)

○ 보조금 지급방법(조사료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요령 준용)

- 경영체 및 시군 사업단은 조사료 생산 후 농가별로 생산량과 공급내역을 시·군에 제출하고, 자가 생산·이용 농가는 시군이 확인 가능한 생산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
- 시장·군수는 조사료 생산 경영체, 시군 사업단, 자가이용 축산농가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 증빙자료 확인 후 조사료 생산량에 따라 사업대상자별로 보조금 지급
- 생산된 사일리지 수분이 과다하거나 품질이 현저하게 좋지 않을 경우 장려금 지원 제외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업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천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89	2,333,332	700,000	1,633,332		
전주시	3	20,000	6,000	14,000		
군산시	15	90,000	27,000	63,000		
익산시	47	283,333	85,000	198,333		
정읍시	83	500,000	150,000	350,000		
남원시	35	207,333	62,200	145,133		
김제시	40	240,000	72,000	168,000		
완주군	17	100,000	30,000	70,000		
진안군	8	48,000	14,400	33,600		
무주군	2	13,666	4,100	9,566		
장수군	26	156,000	46,800	109,200		
임실군	17	100,000	30,000	70,000		
순창군	11	65,000	19,500	45,500		
고창군	52	310,000	93,000	217,000		
부안군	33	200,000	60,000	140,000		

2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조사료(풀사료), 볏짚, 농산부산물 등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TMR 자가배합사료 제조·급여로 축산물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사업	40,000	42	1,666,666 (100%)	250,000 (15%)	583,333 (35%)	833,333 (50%)

○ 지원대상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 한육우·낙농 50두, 양·흑염소 300두, 사슴(엘크) 50두(34두)

○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및 화식기 지원
- 사료급이기(자주식 및 차량부착용 등), 조사료(풀사료) 절단기 지원

○ 지원한도 : 배합기·화식기 40백만원/대, 사료급이기·절단기 14백만원/대

▢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별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 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국내산 곤포사일리지 또는 소포장 조사료(풀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② 축사시설 형태가 배합기 설치·운용이 가능한 농가

③ 기존 배합기 및 화식기를 이용 중인 농가

【 지원제외 】

◈ 구제역 항체양성율 미만농가 처분농가('20 ~ '21년) 사업제한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지원 대상자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장비구입

- 한국축산환경시설 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등의 품질보증(인증) 및 사후 서비스(A/S)가 용이한 제품을 선정
- 타 정부지원 사업, 농협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보조, 융자) 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조치

○ 보조금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

【 서식 1 】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2년 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 서식 2 】

’22년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

○○시·군

[단위 : 원]

대 상 자		지원 장비	사 업 비				집행실적				잔 액			비고
주 소	법인(성)명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도 비	시군비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42	1,666,666	250,000	583,333	833,333	
전주시	1	40,000	6,000	14,000	20,000	
군산시	3	120,000	18,000	42,000	60,000	
익산시	4	160,000	24,000	56,000	80,000	
정읍시	7	266,666	40,000	93,333	133,333	
남원시	4	160,000	24,000	56,000	80,000	
김제시	3	120,000	18,000	42,000	60,000	
완주군	3	120,000	18,000	42,000	60,000	
진안군	2	80,000	12,000	28,000	40,000	
무주군						
장수군	3	120,000	18,000	42,000	60,000	
임실군	2	80,000	12,000	28,000	40,000	
순창군	2	80,000	12,000	28,000	40,000	
고창군	5	200,000	30,000	70,000	100,000	
부안군	3	120,000	18,000	42,000	60,000	

3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이해은	280-2654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에게 친환경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 전라북도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400	333	133,333 (100%)	40,000 (30%)	93,333 (70%)

○ 지원대상 : 전라북도에 거주하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업내용 :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참고

※ 시·군 자체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농가 및 생산자단체)

- 신청기간 : 2022. 1. ~ 2022. 12
- 신청기관 : 주소지 시·군, 읍·면·동
- 신청자격 : 2022. 1. ~ 12월 기간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
  - 단, 전년도에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예산부족 또는 미 신청 등으로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22년도 신청을 받아 지원 가능
  - 사업기간 중 인증 취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 선정기관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류 등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아래의 지급기준에 의거 지원금액 산출(초과액은 자부담)

구분	신청비	출장비 (인증심사원)	심사・관리비 (상한액 기준)
산출 기준	ㅇ **50천원**(전액 지원) * 신청비는 법정 요금이 50천원 이하임.	ㅇ **기본 50천원** * (단체) 인증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표본 농가수 구간당 50천원 추가, 최고 500천원	ㅇ (개인) 300천원 ㅇ (단체) - 15호이하 : 1,000천원 - 16호이상 : 표본 농가수 × 구간당 심사비

※ 농가수별 구간설정은 별첨 1(개인/단체별 인증 관련 세부단가 적용) 참조

○ 보조금 교부신청(시・군)

- 시·군에서는 본 예산 편성액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도)

- 도에서는 본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후 시·군에 송금

○ 사업비 집행 및 과부족예산 보조금 교부신청 변경(시・군)

- 농가(단체)가 제출한 인증서 및 세부항목별 인증비용 영수증 등을 근거로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지원 금액 산출
  - 세부항목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산출하여 지원 금액 산출(초과액은 자부담)**
  - 영수증 등 근거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농가(단체)가 부담한 소요비용을 의뢰·확인 후 보조금 산정

인증농가/단체		인증내역				인증소요비용(천원)					비고
주소	성명 또는 단체명 (농가수)	인증 일자	인증 종류	품목	두수	계	신청료	출장비	인증심사 관리비	검사비	

- 도비와 기 편성된 시·군비 예산을 활용하여 시·군 자체실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지원
- 9월말까지 과부족 예산을 파악하여 2022년 9월 30일까지 도(축산과)에 소요예산 보고 및 보조금 변경 교부신청

○ 과부족 예산에 따른 시・군 예산전배 및 추경예산 편성

- 과부족 예산 시·군별 전배 조치 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
- 전배조치 후에도 예산부족의 경우 도 추경예산 확보 추진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장·군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관련한 사업신청 농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함

☐ 행정사항

○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 ’22. 1월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말

○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2. 2월말

○ 과부족 예산 파악 제출 : ’22. 9월말

○ 사업비 정산보고 : ’22.12월말

※ 본 지침의 지원대상, 신청자격 등에 포함되지 않는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잔류농약 분석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시·군 자체사업은 시군별 형편에 맞게 추진

【 서식 1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

개별 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단체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참여농가수	
품목종류				인증기관		
인증비용				인증번호		
인증구분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구 분	농장 소재지			농장주	품목	사육두수
	시·군	읍·면	리·동			
대상농장						
	계					

입금계좌	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축산물인증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군 출장소장) 또는 민간인증 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2. 인증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영수증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구 분	확 인 요 령	지원액 확인	확인자(서명)
신청료	· 농가수와 관계없이 건당 50천원	원	
출장비	· 구간별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원	
관리비	· 건당 심사 관리비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원	
합 계	· 지원금액 합계 기재	**원**	

【 서식 2 】

사업대상자 선정보고

대 상 자		사육 현황		신청 현황		사 업 비(천원)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품목	수량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서식 3 】

사업추진실적(정산) 보고

구분		사업량 (개)			사 업 비(원)									
					계 획				실 적				잔 액	
품목	농가수	계획	실적	비율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도비	시군비
계														

※ 품목별 구분 작성

【 별첨 1 】

〈 개인/단체별 인증 관련 세부단가 적용 〉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기준(상한액 기준)

(단위 : 호, 천원)

구분	개인 신청	단체신청 표본심사									
		4호이하	5~15	16~24	25~35	36~48	49~63	64~80	81~99	100~120	121이상
표본농가	1호	전체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계 (건당 상한액)	**400**	**1,100**	**1,150**	**1,312**	**1,570**	**1,824**	**2,072**	**2,304**	**2,556**	**2,780**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
신청비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심사원 출장비	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심사관리비/건	300	1,000	1,000	1,112	1,320	1,524	1,722	1,904	2,106	2,280	110×호수

※ 위 금액은 지원 상한액으로서 실제 소요액이 위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까지만 지원

【 참 고 】

○ 친환경축산물 인증수수료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신청비	5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심사원 출장비	공 무 원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 비공무원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금액									
심사관리비 (천원)/ 호	1 ~ 4호	5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1 ~ 99	100~120	121이상
	208천원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요령 별표 1]									

근거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9

○ 단체신청 표본심사 농가수

구성원수(호)	5 ~ 15	16 ~ 24	25 ~ 35	36 ~ 48	49 ~ 63	64 ~ 80	81 ~ 99	100 ~ 120	121 이상
표본농가(호)	4 이상	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4 이상	16 이상	18 이상	20 이상	20% 이상

근거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별표 2

【 별첨 2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34	133,333	40,000	93,333		
전주시						
군산시	4	1,600	480	1,120		
익산시	15	6,000	1,800	4,200		
정읍시	45	18,000	5,400	12,600		
남원시	40	15,800	4,800	11,000		
김제시	23	9,300	2,800	6,500		
완주군	39	15,640	4,640	11,000		
진안군	15	6,000	1,800	4,200		
무주군	4	1,600	480	1,120		
장수군	29	11,593	3,440	8,153		
임실군	20	8,000	2,400	5,600		
순창군	17	6,600	2,000	4,600		
고창군	40	16,000	4,800	11,200		
부안군	43	17,200	5,160	12,040		

4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국제 사료곡물 급등 등 축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축산농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170,000	1	170,000 (100%)	31,000 (18%)	71,000 (42%)	68,000 (40%)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 사업내용

- 축산농가 사료 운반에 필요한 벌크차량 및 지게차 지원
- 벌크차량 1대, 지게차 1대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비율을 준수하고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제품규격 : 사업대상자에 맞는 적정한 제품 선택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위임장 서식 참고)

□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 생산자 단체, 영농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별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 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료유통량 등 제반사항
- 시장·군수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장비구입

- 품질이 보증(인증)되고 사후 서비스(A/S)가 용이한 제품을 선정
- 타 정부지원 사업, 농협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과 중복지원(보조, 융자) 되지 않도록 사전확인 조치

○ 보조금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지원된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 준수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

【 서식 1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나. 법인현황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사육현황 :

축종	사육 현황(두,수)				농가(호)
	계	성축	육성축	자축	

2. 자산 및 부채 현황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4. 사료 유통량 및 보조금 산출기초

사업명	사료유통량		사업비(천원)				
	농가(호)	톤/년	구분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계				
			지게차				
			벌크차				

5. 자부담 확보방안 :

6. 사업효과 :

【 서식 2 】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2년 사료유통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 서식 3 】

'22년 사료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단위 : 천원]

대 상 자 (법인명)	지원 장비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2년 사료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

[단위 : 천원]

대 상 자 (법인명)	지원 장비	사 업 비				집행실적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	170,000	31,000	71,000	68,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1	170,000	31,000	71,000	68,0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5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도)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국제 사료곡물 급등 등 축산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축산농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산자재 공동 이용센터 지원	600,000	1	600,000 (100%)	108,000 (18%)	252,000 (42%)	240,000 (40%)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 사업내용 :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건립지원

○ 지원세부내용

- 사료 저장시설 및 기계·장비 보관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 건축비(설계·감리비 등 포함)

※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에 맞게 지원하되 재원별 지원 비율을 준수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추진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위임장 서식 참고)

▢ 세부 추진요령

○ 사업 대상자 :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군별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 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변경 조치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료유통량 등 제반사항
- 시장·군수가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 보조금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 등을 현지 확인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자부담 집행 우선원칙에 따라 농가가 자부담금을 선 집행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 1회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지원 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조치

○ 관련 서류 허위 작성 등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정부지원 사업자금 지원 중단

※ 기타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 준수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

【 서식 1 】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

나. 법인현황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 주 소 :
- 사육현황 :

축종	사육 현황(두,수)				농가(호)
	계	성축	육성축	자축	

2. 자산 및 부채 현황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료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함

4. 사료 유통량 및 보조금 산출기초

사업명	사료유통량		사업비(천원)				비고
	농가(호)	톤/년	계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축산자재 공동 이용센터 지원							

5. 자부담 확보방안 :

6. 사업효과 :

【 서식 2 】

위 임 장

<table>
<tr><td>금 액</td><td colspan="4">일금 원정(₩)</td></tr>
<tr><td rowspan="3">수임자</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업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able>

상기 금액을 '22년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 서식 3 】

'22년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단위 : 천원]

대 상 자 (법인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 서식 4 】

'22년 축산자재 공동이용센터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내역

[단위 : 천원]

대 상 자 (법인명)	사업량	사 업 비				집행실적				잔 액			비고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대,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	600,000	108,000	252,000	24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1	600,000	108,000	252,000	240,0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6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에 따른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구축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천톤)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60/톤	394	23,647,000 (100%)	7,094,000 (30%)	2,365,000 (10%)	11,823,000 (50%)	2,365,000 (10%)

○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 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건초 등으로 제조하는 자 (단, 야생풀을 사일리지로 제조할 경우 사료작물 종자 70% 이상 혼파 시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 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 지원한도

- 생산단수(동계 18톤/ha, 하계 35톤/ha)를 고려, 톤당 6만원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적용하여 면적에 따라 동계 108만원/ha이하, 하계 210만원/ha 이하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추진 요령을 시·도에 통보
- (시·도/시·군) 시·도는 세부추진 요령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이를 홍보
- (사업희망자) 사업신청서 작성 및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 2020.02.27.)」 제34조제1항에 의한 '농림축산식품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하며,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 (자가소비 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신청서·계획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1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연구사업 참여 등 타 사업에서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 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 사업자선정 단계

- (시·도/시·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에 한해 사일리지 제조·공급 목적, 제조에 투입된 비용, 생산성, 신청면적,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 결정

-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축산농가) 자가소비를 목적(잉여분 유통)으로 조사료 재배・공급
-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 또는 경종・축산 겸업
-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 단체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시・도) 사업추진 종료시 정산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 에 입력 병행

- 사업대상자의 지번별 조사료 파종면적 및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사전(동계 4월, 하계 9월까지)에 파악(GPS 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의 논 이모작・경관보존 직불금 등의 이행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현장점검 대체 가능

○ 사업비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세부실시 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 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 사후관리(이행점검 단계)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 검 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해당 추천대행기관 배정물량 감축)

○ 면적, 생산단수, 무게속임 등 부정수급 발생시 자금회수 및 향후 보조사업 지원 배제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서식 1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생산자단체 등의 명칭</td><td colspan="2"></td><td>법인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농업경영체 등록번호</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영농(림) 종사경력</td><td>년</td><td>영농교육</td><td colspan="5">분야, 월 주</td></tr>
<tr><td>생산자단체 등의 형태</td><td colspan="3">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td><td colspan="2">참여농가수</td><td colspan="2">호</td></tr>
<tr><td rowspan="6">신청내용</td><td>사 업 명</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3">사업예정지
(동 · 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3" rowspan="3"></td><td colspan="4">농지이용계획</td></tr>
<tr><td colspan="3">농업진흥지역안</td><td colspan="2">지구</td></tr>
<tr><td colspan="3">농업진흥지역밖</td><td colspan="2">지구</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 원)</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사업내용별
규모(량)</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 · 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환수 · 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천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94	23,647,000	7,094,000	2,365,000	11,823,000	2,365,000	
전주시	6	334,385	100,314	33,443	167,185	33,443	
군산시	7	425,406	127,620	42,546	212,694	42,546	
익산시	28	1,686,504	505,944	168,672	843,216	168,672	
정읍시	106	6,330,156	1,899,020	633,096	3,164,944	633,096	
남원시	41	2,486,915	746,064	248,723	1,243,405	248,723	
김제시	19	1,145,696	343,704	114,584	572,824	114,584	
완주군	18	1,102,576	330,768	110,272	551,264	110,272	
진안군	13	792,221	237,663	79,232	396,094	79,232	
무주군	3	159,601	47,880	15,961	79,799	15,961	
장수군	36	2,179,291	653,778	217,957	1,089,599	217,957	
임실군	22	1,318,159	395,442	131,833	659,051	131,833	
순창군	15	878,022	263,403	87,813	438,993	87,813	
고창군	57	3,418,048	1,025,400	341,848	1,708,952	341,848	
부안군	23	1,390,020	417,000	139,020	694,980	139,020	

7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통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구축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천톤)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조사료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60/톤	170	10,210 (100%)	5,105 (50%)	1,021 (10%)	3,063 (30%)	1,021 (10%)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대규모·집단화·조건불리지역 등에서 조사료 또는 조사료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

•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존단지와 대상지역(읍·면·동) 또는 들녘을 달리하여 신규면적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등 보관분 포함)

○ 지원한도 : 최대 108만원/ha(18톤/ha기준) 또는 6만원/톤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적지원 방식 또는 전수계근 방식 적용

□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추진 요령을 시·도에 통보
- (시·도)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홍보
- (사업희망자) 향후 5년 이상 국내산 조사료 재배 계획, 신규재배지 조성,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 제1항에 따라 동법 별지1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계획서 활용

○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 확보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들녘화, 간척지, 하천부지 등의 지역
- **(중소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서,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단지로 지정이 제외되거나 곤란한 지역

○ 사업자선정 단계

- (시・군)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지원 계획 등을 첨부하여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로 제출
- (시・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시・군 및 사업희망자와 사전 조정을 거친 후 검토의견 및 지방비 확보,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되, 시・도에서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 농진청, 학계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평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실적 및 자금배정 요청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시・도) 사업 종료 후 추진 결과를 작성하여 자금배정 요청 시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증빙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급방법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세부실시 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수분분석 및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시·군 및 읍·면·동 공무원 입회하에 재배 면적별 기준 시료를 채취(필지별 1점 이상)하거나 표본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해당 성분을 검사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 지원

▢ 사후관리(이행점검 단계)

○ 시・군에서는 전문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간판(가로 100㎝ × 세로 60㎝ 이상)을 동서남북 각 방향에 1개씩 설치할 것

○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점 검 반 : 시・도(주관) 및 시・군 담당자 각 1명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사후관리 기간 : 보조금 교부일(최종)로부터 5년까지
- 처분제한 기준 : 시설・기계・장비의 양도・담보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예비)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22. 1~3분기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서식 1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광역단지) 지정 평가서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항 목</th><th>배점</th><th>득점</th><th>득점근거</th></tr>
<tr><td>조사료 공급</td><td>○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td><td>100
(+50)</td><td></td><td>
<table>
<tr><th>공급계획 (톤, A)</th><th>한우 사육 (두)</th><th>젖소 사육 (두)</th><th>시군 소요량* (톤, B)</th><th>공급능력 (%, A/B)</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소요량 :(한 · 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td></tr>
<tr><td rowspan="5">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td><td>○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td><td>150</td><td></td><td></td></tr>
<tr><td>- 총 재배지 규모</td><td>50</td><td></td><td>- 400ha 이상 : 50점
- 380ha～400ha미만 : 30점
- 360ha～380ha미만 : 10점</td></tr>
<tr><td>- 재배지 단지화 규모</td><td>50</td><td></td><td>- 연접면적 30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0ha이상 : 10점</td></tr>
<tr><td>- 재배지 확보 방법</td><td>50</td><td></td><td>-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td></tr>
<tr><td>○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td><td>100
(+50)</td><td></td><td>-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td></tr>
<tr><td rowspan="4">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td><td>○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td><td>100</td><td></td><td></td></tr>
<tr><td>-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td><td>50</td><td></td><td>- 400ha 이상 : 50점
- 300ha ～ 400ha 미만 : 30점
- 300ha 미만 : 10점</td></tr>
<tr><td>-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td><td>50</td><td></td><td>-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td></tr>
<tr><td>○ 전문생산단지 운영계획</td><td>50</td><td></td><td>-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td></tr>
<tr><td>합 계</td><td></td><td>500
(600)</td><td></td><td></td></tr>
</table>

【 서식 2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특화단지) 지정 평가서

<table>
<tr><th>구 분</th><th>세 부 항 목</th><th>배점</th><th>득점</th><th>득점근거</th></tr>
<tr><td>조사료 공급</td><td>○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td><td>100
(+50)</td><td></td><td>
<table>
<tr><th>공급계획 (톤, A)</th><th>한우 사육 (두)</th><th>젖소 사육 (두)</th><th>시군 소요량* (톤, B)</th><th>공급능력 (%, A/B)</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 소요량 :(한 · 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td></tr>
<tr><td rowspan="4">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td><td>○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td><td>150</td><td></td><td></td></tr>
<tr><td>- 총 재배지 규모</td><td>50</td><td></td><td>- 100ha 이상 : 50점
- 90ha～100ha미만 : 30점
- 80ha～90ha미만 : 10점</td></tr>
<tr><td>- 재배지 단지화 규모</td><td>50</td><td></td><td>- 연접면적 7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5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30ha이상 : 10점</td></tr>
<tr><td>- 재배지 확보 방법</td><td>50</td><td></td><td>-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td></tr>
<tr><td>○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td><td>100
(+50)</td><td></td><td>-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td></tr>
<tr><td rowspan="4">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td><td>○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td><td>100</td><td></td><td></td></tr>
<tr><td>-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td><td>50</td><td></td><td>- 100ha 이상 : 50점
- 70ha ～ 100ha 미만 : 30점
- 70ha 미만 : 10점</td></tr>
<tr><td>-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td><td>50</td><td></td><td>-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td></tr>
<tr><td>○ 전문생산단지 운영계획</td><td>50</td><td></td><td>-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td></tr>
<tr><td>합 계</td><td></td><td>500
(600)</td><td></td><td></td></tr>
</table>

【 서식 3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중소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공급	○ 시·군 사육두수 대비 공급계획량 - (공급계획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 가중치 150%	100 (+50)		공급계획 (톤, A) / 한우 사육 (두) / 젖소 사육 (두) / 시군 소요량* (톤, B) / 공급능력 (%, A/B) * 소요량 :(한 · 육우두수×1.4톤)+(젖소두수×4.3톤)
재배지 확보 및 단위 생산성	○ 사업희망자 주관 재배지 확보	150		
	- 총 재배지 규모	50		- 10ha이상 : 50점 - 9ha~10ha미만 : 30점 - 8ha~9ha미만 : 10점
	- 재배지 단지화 규모	50		- 연접면적 30ha이상 : 50점 - 연접면적 20ha이상 : 30점 - 연접면적 10ha이상 : 10점
	- 재배지 확보 방법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사업희망자 주관 조사료 단위생산성 ※ 가중치 150%	100 (+50)		- 단위 생산성 : 【전년도 생산량(톤)/전년도 재배면적(ha)】×(100/20)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생산 안정성 확보	100		
	- 전년도 조사료 재배면적	50		- 10ha 이상 : 50점 - 7ha ~ 10ha 미만 : 30점 - 7ha 미만 : 10점
	- 조사료 생산 경력 (시군 등록 기준)	50		- 5년 이상 : 50 - 2년 ~ 5년 미만 : 30점 - 2년 미만 : 10점
	○ 전문생산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
합 계		500 (600)		

【 서식 4 】

조사료 전문생산단지(종자생산단지) 지정 평가서

구 분	세 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관내 종자 자급률	○ 시군 종자소요량 대비 생산량 - (종자생산량 / 시군 총소요량) × 100	100		재배 면적 (ha) / 종자 소요량 (A) / 종자 생산량 (B) / 시군 자급률 (%, B/A) / 비고
재배지 확보	○ 사업희망자 주관 종자재배지 확보	150		
	- 총 종자 생산 재배지 규모	50		- 30ha이상 : 50점 - 20ha～30ha미만 : 30점 - 10ha～20ha미만 : 10점
	- 종자 생산 재배지 확보 방법	50 (+50)		- (자체 소유·임차 재배면적 / 총 재배면적)*100 - 비율 40% 이상 : 50점 - 비율 20% ～ 40%미만 : 30점 - 비율 20% 미만 : 10점
	- 종자의 품종특성 및 안전성 확보 재배지 규모	50		- 종자 생산포장 주변 동일초종 300cm이상 격리재배면적 확보(300m미만 결격) · 30ha 이상 : 50점 · 20ha~30ha 미만 : 40점 · 10~20ha 미만 : 30점 · 10ha 미만 20점
종자 처리 시설	- 생산량 대비 처리설비 확보	100 (+50)		- 자체확보 : 100점 임대확보 : 80점 - 자체확보예정 : 60점 임대확보예정 : 40점
종자 공급계약	- 공급계약 경영체 (농가)와의 연간 계약물량	50		- 종자생산량 대비 공급계약 물량비율 · 80% 이상 : 50점 · 60~80% : 40점 · 40~60% : 30점 · 40% 이하 : 20점
조사료 사업 확대 의지	○ 조사료 종자생산 기반 확보 등	100		
	- 조사료 종자생산 경력(자격증 등) 및 인력확보	50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있음 : 50점 - 종자업등록 및 생산·판매경력 없음 : 30점 - 경력자 채용 : 20점 - 경력자 미채용 : 10점
	- 조사료 종자생산 기술 수준	50		- 종자생산기술 수준 우수 : 5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보통 : 30점 - 종자생산기술 수준 미흡 : 10점
	○ 종자생산단지 운영계획	50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우수 : 5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보통 : 30점 - 전담조직 등 운영계획 미흡 : 10점
합 계		500 (600)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천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70	10,210,000	5,105,000	1,021,000	3,063,000	1,021,000	
전주시							
군산시	22	1,351,267	675,635	135,126	405,380	135,126	
익산시	39	2,310,350	1,155,176	231,035	693,104	231,035	
정읍시	4	249,577	124,788	24,958	74,873	24,958	
남원시							
김제시	65	3,913,578	1,956,788	391,358	1,174,074	391,358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40	2,385,228	1,192,613	238,523	715,569	238,523	

8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기계·장비를 이용한 적기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로 양질의 조사료생산·공급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150,000	40	6,030,000 (100%)	603,000 (10%)	543,000 (9%)	1,266,000 (21%)	1,809,000 (30%)	1,809,000 (30%)

○ 사업대상 :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 하려는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시군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단, 장비지원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 확보한 재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
- **(시・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기금 융자 80%,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융자(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경영체**) : **150백만원**(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경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수확면적은 하나의 경영체가 수확작업한 면적에 한한다.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수확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지가 많은 강원・경기북부・충북・강북지역은 일부 예외로 한다.)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 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단, 10ha 미만의 산지가 많은 지역은 10ha 기준으로 지원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수확 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단, 기종이 다른 장비에 한해 중복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5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받은 지 8년 이상 경과(수확면적이 기존 수확면적만큼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 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 · 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표 】

조사료용 기계 · 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 · 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베 일 러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 · 액비살포기(4톤), 비료 · 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농업용 무인 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 · 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 서식 1 】

'22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 · 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 · 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 · 군	제조비 지원		기계 · 장비 지원		계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A+B)
계					

【 서식 2 】

위 임 장

<table>
<tr><td>금 액</td><td colspan="4">일금 원정(₩)</td></tr>
<tr><td rowspan="3">수임자</td><td colspan="2">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업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상기 금액을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td></tr>
</table>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융자	자 담	
합 계	40	6,030,000	603,000	543,000	1,266,000	1,809,000	1,809,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5	750,000	75,000	67,500	157,500	225,000	225,000	
정읍시	8	1,200,000	120,000	108,000	252,000	360,000	360,000	
남원시	4	600,000	60,000	54,000	126,000	180,000	180,000	
김제시	6	900,000	90,000	81,000	189,000	270,000	270,000	
완주군	2	300,000	30,000	27,000	63,000	90,000	90,000	
진안군	3	480,000	48,000	43,500	100,500	144,000	144,000	
무주군								
장수군	2	300,000	30,000	27,000	63,000	90,000	90,000	
임실군	2	300,000	30,000	27,000	63,000	90,000	90,000	
순창군	1	150,000	15,000	13,500	31,500	45,000	45,000	
고창군	3	450,000	45,000	40,500	94,500	135,000	135,000	
부안군	4	600,000	60,000	54,000	126,000	180,000	180,000	

9 조사료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전문단지에 대한 전용 기계·장비 공급으로 조사료 적기 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조사료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300,000	5	1,306,666 (100%)	392,000 (30%)	117,600 (9%)	274,400 (21%)	392,000 (30%)	130,666 (10%)

* 융자(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사업대상 :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등으로 지정된 전문단지

○ 전문단지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

  * 조사료 생산·이용의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이미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기존 단지와 대상 지역(읍·면·동) 또는 들녘을 달리하여 신규면적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수확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베일러, 베일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 계근장비,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 경영체 기계·장비로 지원받은 대상필지의 경우, 전문단지 사업기간 내에 사후관리 기간(5년) 경과 시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300백만원(수확면적 100ha당 1set 기준)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500백만원 (수확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대상 재배 또는 수확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시・도(시・군・구)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해야 하며, 사업대상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①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③「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④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4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 · 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 제4항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 이행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표 】

조사료용 기계 · 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 · 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베 일 러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베일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 · 액비살포기(4톤), 비료 · 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농업용 무인 항공기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 · 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 서식 1 】

위 임 장

<table>
<tr><td>금 액</td><td colspan="4">일금 원정(₩)</td></tr>
<tr><td rowspan="3">수임자</td><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업체명</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3"></td></tr>
</table>

상기 금액을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융자	자 담	
합 계	5	1,306,666	392,000	117,600	274,400	392,000	130,666	
전주시								
군산시	1	300,000	90,000	27,000	63,000	90,000	30,000	
익산시	1	300,000	90,000	27,000	63,000	90,000	30,000	
정읍시	1	106,666	32,000	9,600	22,400	32,000	10,666	
남원시								
김제시	1	300,000	90,000	27,000	63,000	90,000	30,00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	300,000	90,000	27,000	63,000	90,000	30,000	

10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안정된 조사료 생산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이용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따른 축산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톤)	사 업 비 (천원)		
			계	축발기금	자담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	3/kg	899	2,696,000 (100%)	809,000 (30%)	1,887,000 (70%)

○ 사업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 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 지원기준 및 범위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추진요령

○ 종자공급 절차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지급	· 농가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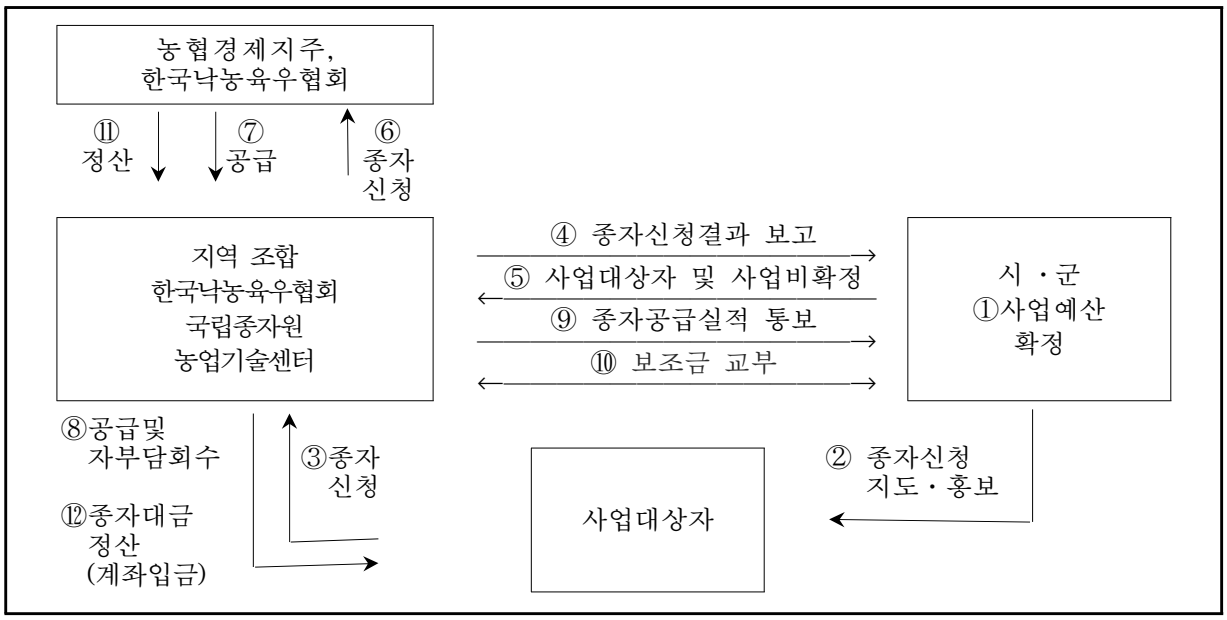

○ 지급방법

- **(농가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 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899	2,696,000	809,000			1,887,000	
전주시	14	41,271	12,391			28,880	
군산시	14	41,845	12,564			29,281	
익산시	77	230,059	69,033			161,026	
정읍시	223	669,088	200,755			468,333	
남원시	99	296,562	88,986			207,576	
김제시	41	122,720	36,828			85,892	
완주군	45	136,298	40,902			95,396	
진안군	22	66,272	19,892			46,380	
무주군	6	18,970	5,700			13,270	
장수군	71	212,867	63,875			148,992	
임실군	56	168,775	50,646			118,129	
순창군	33	98,232	29,481			68,751	
고창군	117	351,853	105,575			246,278	
부안군	80	241,188	72,372			168,816	

11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김택균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안정된 조사료 생산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따른 축산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톤)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자담
조사료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사업	3/kg	349	1,046,000 (100%)	523,000 (50%)	523,000 (50%)

○ 사업대상 :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등으로 지정된 전문단지

○ 사업내용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구입비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의 목초·풋베기사료작물 및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로 사용이 가능한 것. 단, 수입 종자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받고 대상 작물에 등재된 것에 한함(종자관리요강 [별표11])

○ 지원기준 및 범위

-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의 종자 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가 자가 생산 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세부 추진요령

○ 종자공급 절차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지급	· 농가자부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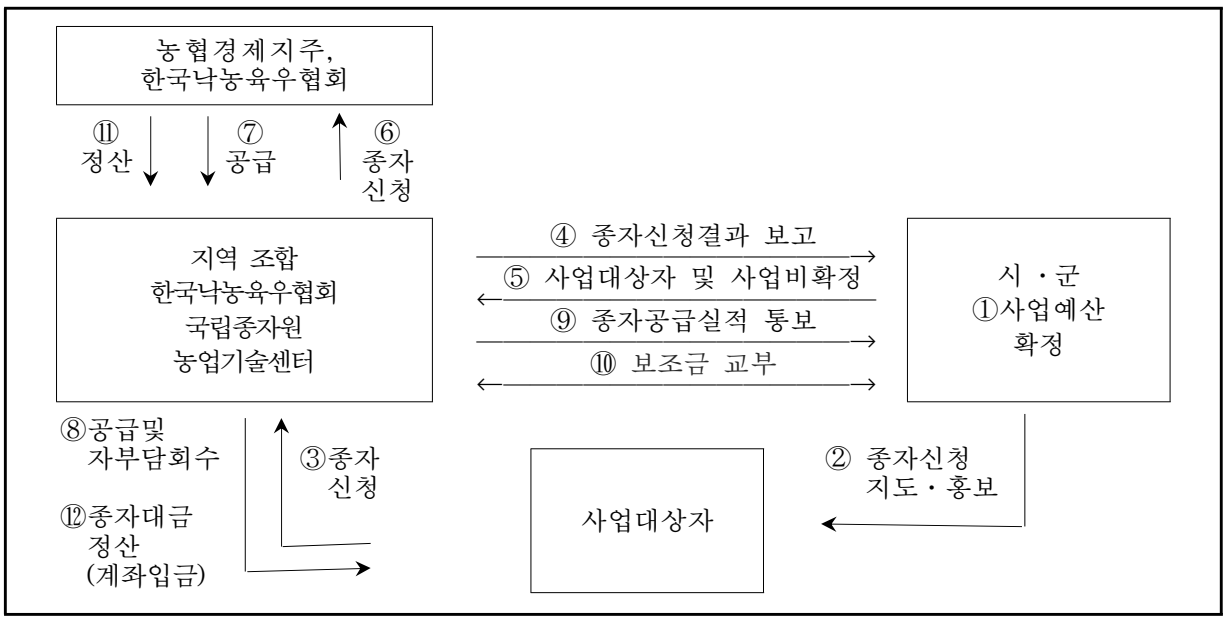

○ 지급방법

- **(자부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 공급 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구매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금액을 해당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 각각 지원
-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신청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349	1,046,000	523,000			523,000	
전주시							
군산시	46	138,436	69,218			69,218	
익산시	79	236,692	118,346			118,346	
정읍시	9	25,570	12,785			12,785	
남원시							
김제시	134	400,940	200,470			200,47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81	244,362	122,181			122,181	

12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안정된 조사료 생산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이용 확대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에 따른 축산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시군비
조사료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사업	400 (ha당 2회)	10,530	4,212,000 (100%)	2,106,000 (50%)	2,106,000 (50%)

○ 사업대상 : 광역단지, 특화단지, 중소단지 등으로 지정된 전문단지

○ 사업내용 :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분뇨, 액비 등) 구입비

□ 지원기준 및 방법

○ 사업면적의 최소 20% 이상은 액비를 살포하여야 함(시・군 공무원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살포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액비 살포제한지역(비점오염원 예방 지역 등), 지역별 액비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 퇴비의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의 ‘52.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업체가 공급하는 지원대상 가축분퇴비에 한함(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의 퇴비・액비살포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중 액비살포비 지원기준(200천원/ha), 자격 및 요건 등을 준용(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의 퇴비・액비살포비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사업시행 관내에 퇴액비 생산업체가 있는 경우 관내 생산 퇴액비 우선 계약・공급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0,530	4,212,000	2,106,000		2,106,000		
전주시							
군산시	1,394	557,448	278,724		278,724		
익산시	2,383	953,106	476,553		476,553		
정읍시	257	102,958	51,479		51,479		
남원시							
김제시	4,036	1,614,494	807,247		807,247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2,460	983,994	491,997		491,997		

13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국내산 조사료 품질 등급화 및 차등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소비활성화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시군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사업	47,000	11	520,000 (100%)	260,000 (50%)	260,000 (50%)

○ 지원대상 : 시·도, 시·군 및 품질검사 기관

- 동·하계 사료작물의 보관 형태별, 초종별 품질등급 구분을 위한 품질검사

○ 사업내용 : 품질검사 장비, 검사보조원 인건비, 시료보관 등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품질검사장비 : 검사기관에 대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와 시료보관 등 검사기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운영 예산 지원

* 단, 예산 범위 내에서 곰팡이독소 및 살모넬라균 검사 등 안전성 검사장비도 지원 가능

- 검사비용 : 검사기관 및 조사료 대량 생산 시·군에 대해 조사료 품질검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분석, 시료채취, 계근 등) 지원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1	520,000	260,000		260,000		
전주시							
군산시	1	30,922	15,461		15,461		
익산시	1	57,462	28,731		28,731		
정읍시	1	77,304	38,652		38,652		
남원시	1	23,192	11,596		11,596		
김제시	1	41,228	20,614		20,614		
완주군	1	33,498	16,749		16,749		
진안군	1	23,964	11,982		11,982		
무주군							
장수군	1	25,772	12,886		12,886		
임실군							
순창군	1	65,966	32,983		32,983		
고창군	1	54,112	27,056		27,056		
부안군	1	86,580	43,290		43,290		

14 조사료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국내산 조사료 품질 등급화 및 차등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소비활성화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천톤)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조사료전문단지 등급제 지원	117/톤	19	2,264 (100%)	1,132 (50%)	226 (10%)	680 (30%)	226 (10%)

○ 지원대상 : 조사료 전문단지에 사일리지를 생산·제조하는 경영체 (농·축협, 영농법인)

-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경영체에서 생산한 물량 중 정부의 유통비 지원을 받는 물량 및 TMR공장용은 반드시 품질검사 실시

○ 사업내용 : 조사료 전문단지 유통·판매 조사료에 품질 등급에 따른 사일리지 제조비 차등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보온덮개,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등

- 품질등급에 따른 사일리지(건초 포함) 제조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등과 조사료 공급·구매계약 체결(유통·판매 예정인 경우 유통·판매계획서로 갈음)

□ 세부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해당 시·군에 “사일리지·건초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시 아래 서류를 첨부할 것

- “사일리지(건초) 공급·구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 이후 공급 및 납품 확인서”, “거래증빙자료(대금결제내역, 세금계산서 등)” 1부.

  * 축산농가, TMR업체 및 유통센터 등과 체결

- “발효제 사용 확약서” 1부(건초는 제외).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정산 시 “발효제 구입 영수증” 제출할 것**

○ **(시·군)** 품질검사메뉴얼에 따라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 또는 사료시험 검사기관*에 수분 및 단백질 검사 의뢰

- 시료는 사일리지(건초) 제조 시점에서 10일 이내, 품질검사원(또는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하에 곤포 사일리지(또는 건초)에서 채취

○ **(품질검사기관)** 품질검사메뉴얼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

* 시료 접수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군)** 품질검사결과에 따라 건물생산량 및 품질등급별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급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급시 “발효제 구입 영수증” 확인

○ 기타 사업절차 등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규정을 따름

- 포장단위별로 생산표시제 스티커 부착 시 품질등급 표시 등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동계작물 파종을 감안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 사업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천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9	2,264,000	1,132,000	226,000	680,000	226,000	
전주시							
군산시	3	299,632	149,817	29,883	90,049	29,883	
익산시	4	512,308	256,153	51,151	153,853	51,151	
정읍시	0.5	55,341	27,671	5,454	16,762	5,454	
남원시							
김제시	7	867,810	433,905	86,701	260,503	86,701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4.5	528,909	264,454	52,811	158,833	52,811	

15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송수진	280-3405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에 따름

♣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 구축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농업기계화법 제4조제1항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억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신규 30 보완 9	1	1,597,000 (100%)	479,000 (30%)	72,000 (4.5%)	407,000 (25.5%)	639,000 (40%)

○ 사업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사업내용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상하차 및 운반을 위한 기계·장비는 포크레인 및 로우더(지게차), 또는 그에 준하는 유형으로 한정

- 부지 구입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통센터) 조사료(사일리지) 저장시설, 소포장 등 제조설비, 품질분석기기, 기계·장비 및 기계·장비 등의 보관창고, 계근·방역·사무시설,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 (가공시설) 시설 건축비, TMR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설비, 기존업체의 시설 및 기계·장비 보완,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등

□ 행정사항

○ 사업 세부추진요령 통보(농식품부 → 시·도) : '22. 1월

○ 당해년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시·도→시·군→사업대상자) : '22. 1월~

○ 당해년도 사업희망자 사업계획서 제출(희망자 → 시·군) : '22. 1월~

○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추천(시·군→ 시·도 → 농식품부) : '22. 1월~

○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농식품부) : '22. 1~2분기

○ 사업대상자 자금 지원(농식품부) : 시·도 요청시

○ 익년도 (예비)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22. 1~3분기

○ 익년도 사업예산 확보 및 사업비 가내시 통보(농식품부) : '22. 9월~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본 기준은 잠정안으로서 평가단이 구성될 경우 조정될 수 있음

<TMR가공시설>

○ (신규지원) 기존 TMR사료공장의 시·군 관내 공급능력을 감안하고, 산지생태축산농장에 연간 공급(계약)물량이 많은 업체를 평가 우대

- 기존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시·도 및 시·군에 우선권 부여
- 국내산 자급 조사료를 확대 생산·이용할 수 있는 지역
- 시·도별 형평성 유지 및 시·도 평가순위 반영
- 해당 시·군의 TMR 공급능력이 수요(시·도 평균 두당 TMR급여량×사육두수)를 초과하는 지역은 지원 제외

○ (보완지원) 국내산 조사료 사용비율이 높은 업체

- 시·도별 형평성 유지 및 시·도 평가순위 반영
- 신규지원을 받은 업체는 사후관리기간이 경과 후 지원 가능

* (시설·건축물) 보조금교부일(최종)로부터 10년까지

*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최종)로부터 5년까지

○ (운영지원) 전전년 대비 전년 국내산 조사료 구매가 10%이상 증가한 조사료 가공공장을 우선 지원

- 추가 신청분은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순에 따라 지원

<유통센터>

○ (균등분배) 사업목적에 의거 전국적인 유통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균등 선정

○ (합목적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내용의 적정성

* 기존 TMR(섬유질배합사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존 TMR 공장내 운영 병행 시 사후관리를 위해 선정 제한

○ (평가반영) 시·도의 평가 결과 및 현지조사 결과 반영

- 시·군 관내 공급능력(공급율=공급예상량/소요량×100)
- 시설 및 부지확보의 적정성(규모, 소유 실태 등)
- 전담조직 구성 등 조사료사업 확대 의지
- 산지생태축산농장에의 연간 공급(계약)물량이 많은 업체는 평가 시 우대

○ (사업규모) 사업비 적정성, 공급단가 적정성, 품질개선 노력 등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	1,597,000	479,000	72,000	407,000	639,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1	1,597,000	479,000	72,000	407,000	639,000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VI 축산환경개선팀 사업계획

1.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 329
2.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도) ····· 333
3.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도) ····· 347
4.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사업(도) ····· 351
5.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도) ····· 353
6.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도) ····· 358
7.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도) ····· 368
8.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도) ····· 372
9.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도) ····· 377
10.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도) ····· 380
11.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전환) ····· 383
12.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전환) ····· 388
13.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축발) ····· 393
14.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축발) ····· 406
15.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축발) ····· 411
16.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축발) ····· 426
17.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축발) ····· 450



1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 도모 및 축산냄새 저감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축산환경 개선사업	5,000	113	565,000 (100%)	135,000 (24%)	315,000 (56%)	115,000 (20%)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1순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지원농가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
- (2순위)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농가 (245호)
- (3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기지정 양돈농가 (127호)

○ 사업내용 : 축산농가 냄새저감제 및 고착슬러지 제거제 지원

- 냄새저감제 : 살포용(분뇨 처리장, 축사 바닥 등) **※ 급이용 저감제 제외**
- 고착슬러지 제거제 : 슬러리 피트 및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제
  - 농가 자율적으로 용도에 맞는 제품 선정하되 시·군 자체 사업량 및 지원 품목 등을 고려하여 농가별 사업비 배정

○ 지원한도 : 5,000천원 이내/개소

- 시·군에서 민원 및 사육두수 등을 감안해서 지원한도 내에서 농가별 배정

□ 세부 추진요령

○ 추진방법

- 대상자 선정(시·군) → 제품공급(업체→농가) → 사업비 집행(농가)

○ 제품선정 및 공급방법

- 시·군에서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산업용)탈취제, 고착슬러지 제거제 등으로 선정
- 축사용 냄새저감 및 고착슬러지 제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에서 축산농가 실증을 통해 검증이 완료된 제품
- 동일 조건인 경우,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 제품) 우선 선정 가능
- 시·군에서는 공동구매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자단체에서 위 조건에 부합한 제품에 대해 원하는 제품 선정 가능

○ 공급업체 제출서류(업체 → 시·군) : 해당 경우만 제출

- 녹색제품 인증서(환경표시 인증 제품)
- 축사용 냄새저감 및 고착슬러지 제거로 축산농가 실증 및 검증관련 증빙 자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
- 주요 성분 및 함량, 용도, 사용방법, 효능,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농가공급 방법

- 대상자 명단을 선정된 제품 공급업체에 통보
- 업체는 사용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 실시 후 제품을 공급하고 농가에 인수증을 발급
- 사업대상 농가는 시・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입회가 어려운 경우 사진 제출) 제품공급을 받도록 하고 인수증을 해당 시・군에 제출

○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시・군에서는 완료보고서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완료보고) 사업대상자는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비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 실적을 도에 보고

▢ 세부 추진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 21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제출 : ’22. 1. 28까지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까지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13	565,000	135,000	315,000	115,000	
전주시						
군산시	2	10,000	2,390	5,575	2,035	
익산시	15	75,000	17,920	41,810	15,270	
정읍시	15	75,000	17,920	41,810	15,270	
남원시	10	50,000	11,945	27,880	10,175	
김제시	15	75,000	17,920	41,810	15,270	
완주군	9	45,000	10,750	25,090	9,160	
진안군	9	45,000	10,750	25,090	9,16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10	50,000	11,945	27,875	10,180	
순창군	6	30,000	7,170	16,725	6,105	
고창군	15	75,000	17,920	41,810	15,270	
부안군	7	35,000	8,370	19,525	7,105	

2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저감하여 축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유도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사업별 상 이	1,065	225,000 (100%)	67,500 (30%)	157,500 (70%)

○ 사업대상 : ① 축산냄새 중점관리지역 (115개소)
② 깨끗한 축산농장 기 지정농가 (950개소)

○ 사업내용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컨설팅 비용
- 축산냄새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 및 컨설팅 비용
- 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수립 자문 및 농가교육 비용

○ 지원한도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 140천원/개소/2회
- 축산냄새중점·악취관리농가 정기점검 및 컨설팅 : 200천원/개소/회
- 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계획수립 자문 및 농가교육 : 200천원/회

▢ 세부 추진요령

○ 컨설팅 자문단 : 2개소 내외

- 시·군에서는 도에서 선정한 컨설팅 자문단과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추진

【 자문단 주요 역할 】

◈ 컨설팅 자문단은 축산환경 전문가로 구성, 축산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

◈ 농가별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확대 및 시설개선 방안 등 지도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중점·악취관리농가 정기점검은 월 1회 시·군 및 도에 보고

◈ 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 점검 시 컨설팅 일지 작성(농가당 4회)

◈ 축산농가 교육 및 축산환경 농가의식개선

- 축산냄새 원인과 저감방안 교육,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농장단위 실행방안

※ 농가 방문 시 차량소독 및 개인방역 철저

○ 계약체결

- 계약기간은 10개월(컨설팅 기간 3월 ~ 12월)으로 하되, 일정 변경 시 조정 가능
- 계약서에는(서식 4)의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
- 시·군은 계약체결 사항 및 농가 선정내역을 도에 보고(서식 1)

○ 지원금액 결정 및 계약의 효력

- 시·군은 컨설팅 자문단에서 제출한 서류 검토(컨설팅의 내용, 계약금액, 예산 배정액 등)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컨설팅 자문단에 통보
  - 시·군은 컨설팅 자문단과 컨설팅 수행계약서(서식 4) 체결
  - 계약의 효력은 시·군에서 통보한 일자를 기준으로 발생

○ 사업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사후관리 점검 후 채점표 제출(2회/년)
- 단,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대상농가 중 축산환경 컨설팅이 필요(농가 희망또는 시·군 필요 시 추진)한 경우, 컨설팅을 실시하고 종합의견서를 제출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에 반영(컨설팅비 20만원/회)

《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사전 점검(컨설팅) 》

-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신청농가에 축산환경관리원 현장평가 전 컨설팅 지원 및 사전평가를 통해 지정 기준 취약부분 보완지원하고, 그 사항을 기록한 보고서 작성 제출
- 해당 시군은 매월 말 신청농가 취합후 신청서 등 컨설던트 전달

《 축산냄새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컨설팅) 》

- 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은 각 농장을 연 4회(농가별 방문 횟수는 농가상황 및 컨설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 변경가능) 방문하고, 컨설팅 사항 및 농장 변화를 기록한 보고서(서식 5)를 작성하여 제출
- 각 농장을 최초 방문 시 농가별 현황조사표(서식 3)를 작성하고 냄새 측정 등 컨설팅 보고서를 작성 제출
- 환경개선 효과 확인을 위해 매회 같은 지점에서 암모니아, 황화수소 냄새 측정 및 농가 변동사항 확인
- 해당 농가 냄새저감제 급이 또는 살포 확인
- 냄새저감제 사용요령 교육 및 냄새저감 컨설팅
- 해당 지자체는 농가별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다음해 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컨설팅 업체는 월1회 추진실적(서식 2) 및 컨설팅보고서(서식 5)을 시·군, 도에 제출

《 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수립 자문 및 농가교육 》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및 중점·악취관리 농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에서 수립한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자문 및 농가 교육(시·군 요청 시)

❍ 사업비 집행방법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검토를 거쳐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정산

- 시·군은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와 중점·악취관리농가 정기 점검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비용은 매 분기별로 정산)
- 도는 시·군의 사업비 집행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행정사항

○ 자체 조사를 통해 축산악취개선사업 컨설팅 내용이 부실할 경우 개선을 촉구

○ 농가의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사항

-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천재지변이나 가축질병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후 실비를 제외한 지원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의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컨설팅 자문단 선정 후 자격요건 등에 중대한 흠결이 발생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농가는 다른 자문단과 계약 체결
  - 경미한 사항은 보완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자문단 자격 취소 조치
- 각종 보고서 등에 허위자료 제출
  - 컨설턴트 경력·자격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고, 지원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 불가
- 농가 컨설팅 일지작성, 냄새측정, 냄새저감제 살포 확인 등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자문단은 동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 서식 1 】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추진계획)

□ 시군명 : OO시군

□ 사업비 : 18,630천원(도비 5,589, 시군비 13,041)

구분	산출내역	비고
깨끗한축산농장 사 후 관 리	• 23호 × 10천원/2회 = 230천원	
축산냄새중점·악취관리농가 점검(컨설팅)	• 23호 × 200천원/회 × 4회 = 18,400천원	

□ 농가내역 [축산냄새중점·악취관리농가 점검(컨설팅)]

연번	농장명	농장주	주소	축종	컨설팅 계획	비고
1					4회	
2					4회	
3					4회	
4					4회	
5					4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서식 2 】

축산환경개선지도지원사업 ( )월 추진실적

☐ 업체명 : OO

(단위 : 호)

시군명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축산악취 중점관리지역 컨설팅			
	소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계획	기추진	금월추진	잔여농가
합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 서식 3 】

농가별 현황조사표

농장 일반 현황			
농장명		주소	
대표명		연락처	
축종		사육구분	일관, 번식, 비육
사육두수	□ 두수 : (두), 모돈(두), 비육(자)돈(두)		
축사 면적 및 형태	□면적 : 총 ( )동, 총 면적( )m^2	□형태 : 슬러리, 스크래퍼, 톱밥 등	
사양관리	□ 출하일령/무게: ( )일/( )kg		
가축분뇨 처리 현황(분뇨발생량 : 톤/일)			
분뇨처리 방법	□ 위 탁 : 톤/일(%)	□ 자 가 : 톤/일(%)	
	※ 자가처리 시 : 액비살포( )%, 퇴비살포( )%, 정화( )%		
	□위탁 처리단가(천원/톤) :	□위탁 업체 :	
분뇨반출 주기	□ 주 간: ( )회, □ 월 간: ( )회, □ 연 간 : ( )회		
분뇨 저장시설 용량	□저장조 : ( )개, 총 ( )톤	□퇴비사 : ( )개, 총 ( ) m^2	
농장 관리 현황			
축사내부관리 (바닥, 깔짚, 청소)	□ 관 리 상 태(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 청 소 주 기( )		
축사외부관리 (정리정돈, 청소여부)	□ 관 리 상 태(우 수, 양 호, 보 통, 미 흡) □ 청 소 주 기( )		
폐사축 처리	□ 자 가 처 리 : 랜 더 링( ), 소각( ), 퇴비화( ), 기타( ) □ 위 탁 처 리 : ( ) / 처 리 비 용( )원/kg		
농장 악취발생 현황			
악취정도(직접관능) 및 민원발생 현황	□ 악 취 정 도(심 각, 보 통, 양 호)		
주요 악취발생원인	( ), ( ), ( )		
환경개선제	제품명 : ( )		
	사용방법 : □ 살포, □ 사료첨가, □ 기 타 ( )		
냄새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해당 항목에 체크)			
□ **액비순환시스템**(액비상태, 분배기 상태) : □ 양호, □ 보통, □ 불량 □ **안개분무시설**(분무정도, 노즐상태) : □ 양호, □ 보통, □ 불량 □ **바이오커튼**(커튼상태) : □ 양호, □ 보통, □ 불량 □ **바이오필터**(필터상태, 세정액 상태) : □ 양호, □ 보통, □ 불량 □ **기타**( )			
냄새저감 및 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			

【 서식 4 】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컨설팅 수행계약서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중점·악취관리농가 정기점검)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중점·악취관리농가 정기점검**(이하 "컨설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컨설팅 자문단 _____와(과) ____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컨설팅 기간) : 2022년 월 일부터 2022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사업기간은 "컨설팅자문단"과 "시장·군수"가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2조(컨설팅내용 및 방법) : ① "컨설팅자문단"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컨설팅 수행 내용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② "컨설팅자문단"의 컨설팅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은 별첨의 자료를 가지고 수행한다. ③ "시장·군수"는 "컨설팅자문단"의 원활한 컨설팅 진행을 위하여 "대상농가"가 조사에 적극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3조(컨설턴트 변경) : "컨설팅자문단" 소속 담당 컨설턴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컨설팅 수행에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는 "컨설팅자문단"은 상호 협의하에 담당 컨설턴트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컨설팅 비용) : 1.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에 따른 비용은 농가당 1회 방문을 기준으로 7만원(칠만원)이며, 총 2회를 기준하여 14만원(일십사만원)으로 하며, 사후관리 실시 농가 수를 곱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2. 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에 따른 비용은 농가당 1회 방문을 기준으로 20만원(이십만원)이며, 총 4회를 기준하여 80만원(팔십만원)으로 하며, 정기점검 실시 농가 수를 곱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3. 축산악취개선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자문비용 및 농가교육(강사)은 사업 건당 기준으로 20만원(이십만원)이며, 자문 및 농가교육 실시 횟수를 곱하여 비용을 산정한다.
4. 방문 횟수가 변경될 경우 "컨설팅자문단"이 협의하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컨설팅자문단이 매회 컨설팅을 완료하고 컨설팅 보고서를 도 및 시·군에 제출하면,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컨설팅 비용을 "컨설팅자문단"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며, 입금 시기는 분기별 1회로 한다.

제6조(컨설팅 효과 분석) :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행한 컨설팅 결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효과를 분석한다. ① 농장의 냄새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컨설팅자문단”이 컨설팅 과정에서 수행한 축사 청소 여부 확인 기록,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농도 측정 수치, 냄새저감제 급이 또는 살포 여부 확인 기록 등 객관적인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한다. ② 농가는 냄새저감 효과 분석을 위해 컨설턴트가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토록 시장·군수는 적극 지원한다.

제7조(컨설팅 비용 반환) : 컨설팅 비용으로 이미 지원된 비용 중 컨설팅 수행 결과가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었거나, 컨설팅 수행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 군수는 컨설팅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자문단”은 지원받은 컨설팅 비용을 시장 · 군수가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8조(계약의 해약) : ① 시장·군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이나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농장 출입이 어려운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컨설팅자문단”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컨설팅자문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이나 가축질병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장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나.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턴트의 정당한 농가 이행 요구사항 등을 거절하거나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시장·군수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경우 “컨설팅자문단”과 시장·군수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컨설팅자문단”은 해약 당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용을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 · 군수는 해약 당일까지 소요된 비용을 “컨설팅자문단”에게 정산처리 한다.

제9조(분쟁해결방법) : ①이 계약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컨설팅자문단"과 시장·군수가 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시·군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10조(비밀유지) : 컨설팅 수행 중 "컨설팅자문단"은 "컨설팅 대상농가"의 사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컨설팅 대상농가"의 사전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효력) : 본 계약의 효력은 "컨설팅자문단"과 시장·군수 상호간 기명날인 후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특기사항) : "컨설팅자문단"은 동 컨설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행정지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컨설팅자문단"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 컨설팅 효과 분석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컨설팅 효과분석을 위한 계약쌍방간 협조방법 ※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농가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컨설팅 비용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

【 서식 5 】

중점 · 악취관리농가 컨설팅 결과보고서

(컨설팅 자문단 작성용)

<table>
<tr><td>컨설팅 일자</td><td></td><td>컨설팅 업체명</td><td colspan="2"></td></tr>
<tr><td>농 가 명</td><td></td><td>농가주소</td><td colspan="2"></td></tr>
<tr><td>사육규모</td><td></td><td>평가표 점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컨설팅내용
및
개선내용</td><td>암모니아(ppm)</td><td colspan="2">황화수소(ppm)</td><td>기타</td></tr>
<tr><td></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4">○ 농장 주변 및 축사 내외부 환경 및 청결상태
○ 가축분뇨 관리 상태 확인
○ 냄새저감제 사용농가의 사용여부 확인(급이 · 살포대장 등)
○ 기타 농가 컨설팅 내용</td></tr>
<tr><td>현장사진</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축산냄새중점·악취관리 농가 점검(컨설팅) 추진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 별첨 1 】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및 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 세부사항

회차	깨끗한 축산농장 사후관리	중점·악취관리 농가 정기점검
1	○ 지정받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채점표로 점검(상반기)	○ 농장현황조사표 작성(붙임2)) ○ 냄새측정(암모니아, 황화수소 간이측정), 농장 주변 및 축사 내외부 환경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확인 등 ○ 냄새저감제 사용농가의 사용여부 확인(급이·살포대장 등) ○ 농장현장 컨설팅(사진첨부)
2		○ 냄새측정(암모니아, 황화수소 간이측정), 농장 주변 및 축사 내외부 환경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확인 등 ○ 냄새저감제 사용농가의 사용여부 확인(급이·살포대장 등) ○ 농장현장 컨설팅(사진첨부)
3	○ 지정받은 깨끗한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채점표로 점검(하반기)	○ 냄새측정(암모니아, 황화수소 간이측정), 농장 주변 및 축사 내외부 환경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확인 등 ○ 냄새저감제 사용농가의 사용여부 확인(급이·살포대장 등) ○ 농장현장 컨설팅(사진첨부)
4		○ 냄새측정(암모니아, 황화수소 간이측정), 농장 주변 및 축사 내외부 환경 및 청결상태,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확인 등 ○ 냄새저감제 사용농가의 사용여부 확인(급이·살포대장 등) ○ 농장현장 컨설팅(사진첨부)

【 별첨 2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065	225,000	67,500	157,500		
전주시	1	800	240	560		
군산시						
익산시	125	33,340	10,002	23,338		
정읍시	160	44,180	13,254	30,926		
남원시	126	23,580	7,074	16,506		
김제시	126	25,560	7,668	17,892		
완주군	75	13,800	4,140	9,660		
진안군	57	11,940	3,582	8,358		
무주군	27	5,100	1,530	3,570		
장수군	36	5,700	1,710	3,990		
임실군	58	10,100	3,030	7,070		
순창군	69	13,620	4,086	9,534		
고창군	99	19,800	5,940	13,860		
부안군	106	17,480	5,244	12,236		

3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환경 친화적 축산업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자원화율 제고 및 악취민원 최소화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1,000	100	100,000 (100%)	18,000 (18%)	42,000 (42%)	40,000 (4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 : 축산농가(축산업허가),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등

○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내 고착된 슬러지를 분해·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 지원

□ 세부 추진요령

○ 제품 선정 및 공급방법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제품으로 특허 관련제품, 환경친화적(환경표지 인증 등) 제품 및 전라북도 내 생산제품 우선

○ 고착슬러지 제거방법 : 시·군별로 사업신청 계획 검토 후 승인

- 화학약품 및 미생물 제품, 기계적 제거방법
- 기타 시·군에서 승인한 방법(시연회 또는 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신청자는 고착슬러리 제거계획을 해당 시·군 제출
- (사업대상 선정) 시·군에서는 제거계획을 검토 후 선정

○ 사업대상 선정조건

① 시·군 전문유통협의체 참여업체 및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

② 2021년 가축분뇨자원화 조직체 평가 등급 우수업체

③ 고착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한 후, 액비저장조 내 슬러지 축적 방지 시설(자부담 등)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④ 시·군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에 적극 참여한 농가

【 지원제외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축산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비 집행

- (완료보고) 사업대상자는 완료보고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비 집행) 시·군에서는 완료보고서와 슬러지 제거 등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추진 전·후 액비저장조 고착슬러리 상태비교, 고착슬러지 제거추진 현지확인 및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대상자 선정 결과 제출(시·군 → 도) : '22. 1월말

시·군	사업대상자		사업량(개소)	제거방법	사 업 비(천원)				비고
	성명(업체명)	주소			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완료 및 정산보고 : '22. 12월말까지

시·군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00	100,000	18,000	42,000	40,000	
전주시						
군산시	3	3,000	540	1,260	1,200	
익산시	15	15,000	2,700	6,300	6,000	
정읍시	15	15,000	2,700	6,300	6,000	
남원시	13	13,000	2,340	5,460	5,200	
김제시	15	15,000	2,700	6,300	6,000	
완주군	6	6,000	1,080	2,520	2,400	
진안군	4	4,000	720	1,680	1,600	
무주군	0	0	0	0	0	
장수군	5	5,000	900	2,100	2,000	
임실군	8	8,000	1,440	3,360	3,200	
순창군	0	0	0	0	0	
고창군	10	10,000	1,800	4,200	4,000	
부안군	6	6,000	1,080	2,520	2,400	

4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강준수	280-3283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축사 및 퇴비사 등에서 발생하는 축산냄새 저감으로 민원해소 및 지속 가능한 축산사육 기반 조성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혁신도시 냄새저감 시설지원 사업	270,000	1	270,000 (100%)	81,000 (30%)	189,000 (70%)

○ 사업내용 : 축산농가 냄새 저감용 미생물 배양재료 3종(1.35톤) 지원

-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 : 3종 이상(광합성세균, 고초균 및 EM균 등)
- 미생물 포장을 위한 포장용기 등 제작 및 구입 사용 가능

○ 공급계획

- 혁신도시 주변 축사 및 퇴비사 등 냄새 유발 시설에 주기적 집중 공급
- 양축농가 중 냄새가 심한 농가는 우선적으로 다량 공급
- 급이용 및 살포용 별도 생산 공급으로 효과 극대화 유도
- 주기적 사용요령 교육 및 홍보용 리플릿 배부로 의식 개선

☐ 행정사항

○ 공급실적 보고 : 매월 말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말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22. 12월말까지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	270,000	81,000	189,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1	270,000	81,000	189,000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5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강준수	280-3283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착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폐기우유 등이 포함된 착유세정수는 분뇨와는 다르게 자원화 할 수 없어 정화처리 후 방류필요

♣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을 통해 악취 발생 억제와 환경민원 방지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34,000	24	816,000 (100%)	122,400 (15%)	285,600 (35%)	408,000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 : 젖소 착유농가

- 현재 기준 원유량을 보유하고 실제 납유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

- 착유세정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춰 정화처리하여 방류하는 시설, 장비 일체

【 지원제외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축산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세부 설치기준

- 처리능력 : 1톤/일 이상
- 설치기준 :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

※ 단, 설치기준 이외 재질로 설치시 3단 저류조 추가 설치하고, 배관은 부식방지 등 내구력 향상을 위해 스테인레스 재질로 설치, 적산전력계 설치로 관리현황 파악 가능

- '19.1.1일부터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별첨1)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시설이 설치될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특정지역, 기타지역)에 맞추어, 착유세정수를 고도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추가설치 가능(자부담)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 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 사업대상자는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보조사업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을 포함

○ 업체 선정기준

- 기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견학 등을 통해 우수업체 선정토록 지도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특허 등) 우선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업체 선정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당초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대상자를 선정 후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시·군에서 입회하여 시공회사에서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말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까지

【 별첨 1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2. 20.>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 관련)

1.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항목 /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항목 /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대장균 군수 (개/㎖)	총질소 (T-N, ㎎/L)	총인 (T-P, ㎎/L)
공공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0 이하	55 이하	30 이하	3,000 이하	60 이하	8 이하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지역 / 항목 / 구분		허가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40 이하	12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L)	120 이하	200 이하
	부유물질량(SS, ㎎/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T-N, ㎎/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T-P, ㎎/L)	4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120 이하	150 이하
	총유기탄소량(TOC, ㎎/L)	200 이하	250 이하
	부유물질량(SS, ㎎/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T-N, ㎎/L)	250 이하	400 이하
	총인(T-P, ㎎/L)	100 이하	100 이하

【 비 고 】

1. 이 표에서 특정 지역은 영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
2. 기타 지역이 특정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그 지역에 설치된 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변경일부터 3년까지는 기타 지역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 별첨 2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4	816,000	122,400	285,600	408,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5	170,000	25,500	59,500	85,000	
남원시	2	68,000	10,200	23,800	34,000	
김제시	2	68,000	10,200	23,800	34,000	
완주군	2	68,000	10,200	23,800	34,000	
진안군	4	136,000	20,400	47,600	68,0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3	102,000	15,300	35,700	51,000	
순창군						
고창군	5	170,000	25,500	59,500	85,000	
부안군	1	34,000	5,100	11,900	17,000	

6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강준수	280-3283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축산농가가 관리하는 가축분 퇴비의 부숙관리를 지원하고, 부숙된 퇴비의 농경지·초지 등(이하 "살포지"라 한다)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경축순환농업 구축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1,000,000	1	1,000,000 (100%)	150,000 (15%)	350,000 (35%)	500,000 (5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받은 조직체

의무사항

◆ 선정된 조직체는 퇴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부숙관리, 퇴비 운송 및 살포, 지도 등 국비지원 『퇴비유통전문조직』으로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후관리 기간(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동안 필수 이행사항

○ 사업내용 : 축산농가 퇴비부숙, 관리, 살포 등을 위한 시설 장비 등

- (시설) 발효퇴비 보관창고 및 탈취설비 등

- (장비) 퇴비 교반 및 운송, 살포 장비 등

수동형 교반기(깔짚 및 퇴비), 스키드로더, 포크레인, 덤프트럭, 암롤카(암롤박스) 퇴비살포기(자주식 및 트랙터 부착형) 등 퇴비의 교반·운반·살포 장비, 이동 장비·차량 방역소독 시설·장비 등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구입 장비에 대한 실명스티커(조직체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 깔짚 및 퇴비 교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 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 퇴비유통전문조직체 중 사업을 희망하는 조직체는 사업신청서(서식 1) 및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정해진 기한 내 시·군에 신청
- 시·군은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자부담 가능성 등을 필히 검토

○ 사업자 평가

《 시·군 》

-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현장방문 병행)

<1차 : 서류평가>

-『평가위원회에서』신청 조직체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배점 **※ 평가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의 허위사항 등이 발견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2차 : 발표평가(필요시)>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에 의거 증빙자료, 발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
  - 신청조직체 대표가 사업계획 브리핑(발표 5', 질의응답 15')
  -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의 추진 가능성, 적정성,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
- 사업주체 의지, 사업입지 여건 등을 현장 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은 1차<서류평가>와 2차<현지(발표)평가> 평점 결과를 종합, 고득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신청자에게 통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 도 》

- 해당 시・군에 사업비(도비, 시・군비) 확정 통보
- 해당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시·군 》

- 해당 시·군은 도에서 통보된 도비 및 시·군비를 '21년 예산에 반영
- 해당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시・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
-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도비, 시・군비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자 》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추진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
  -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포기할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세부사업계획 변경

-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도에서 받아야 함.

※ 중요사항 :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규모의 30%초과 변경 등

• 단, 경미한 사항 및 사업비 산출내역 상 분류항목별 30%이하로 세부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기존 신청한 사업목적, 취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변경 불가

○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 도 》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 자금 배정

《 시·군 》

- 시·군은 사업 시행지침에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지방재정법 등에 의거 집행

- 시·군은 사업 완료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업완료 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정·정산

《 보조사업자 》

- 사업자 명의의 보조금 관리 전용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로 결제. 단, 인건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가능

□ 사후관리(이행점검단계)

○ 도 및 시·군은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부진 또는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함.

-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 및 장비는 퇴비 부숙 관리농가에서 생산된 퇴비 관리와 살포 등에만 활용.

※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생산시설 등 타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보관·살포 등 관리 금지(퇴비 부숙도 관리대상 농가에서 생산된 퇴비 관련 사업에만 활용)

※ 본 사업으로 신축한 보관창고 등은 기존 생산시설과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을 구축하고, 원료의 반입 및 처리계획을 별도로 수립

○ (사후관리 기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준용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전라북도지사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 제공은 안 됨	
○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 (제제사항) 사후관리 기간까지 지원 시설·장비의 미가동 등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등 조치

【 서식 1 】

2022.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조직체명</td><td colspan="3"></td><td>대 표 자</td><td colspan="2">홍길동</td></tr>
<tr><td></td><td colspan="3"></td><td>실 무 자</td><td colspan="2">홍길동(280-0000)</td></tr>
<tr><td>사 업 자
등록번호</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사업조직</td><td>퇴비부숙
관리농가수</td><td colspan="2">호</td><td>퇴비살포
계약면적</td><td colspan="2">ha</td></tr>
<tr><td>법인설립일</td><td>2000.00.00</td><td>법인
주요사업</td><td colspan="4">○
○</td></tr>
<tr><td rowspan="4">신청내역</td><td>사 업 명</td><td colspan="6">2022.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td></tr>
<tr><td>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요약)</td><td colspan="6">○
○
○
* 세부사업계획서 별첨</td></tr>
<tr><td rowspan="2">사업비
(천원)</td><td>계(100%)</td><td colspan="2">도비(15%)</td><td colspan="2">시・군비(35%)</td><td>자담(50%)</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유의사항</td><td colspan="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최종사업신청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으로 함.
■ 사업신청서 등 업체가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허위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td></tr>
</table>

「2022.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일체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선정과 관련된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와 관련 필요한 개인정보의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계획서 1부,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1부, 보조사업 이력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서식 2 】

’22년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계획서

※ 계획, 실적 등이 없는 항목은 “해당 없음” 표시

사업 대상자		○○시·군 담당자	
법인명(대표자)	연 락 처	성명(직급)	연 락 처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사무실 : 핸드폰 : 팩 스 :
법인 설립일	법인 소재지	소속	사업유형
		국, 과, 팀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추진여건

사업목표

- 사업목적
- 퇴비 생산·이용 목표 및 추진계획 등

입지여건

- 부지 확보 내용 : 위치, 면적 m^2(지목 :)
- 원료수거 농가 및 살포지와의 거리 등

원료공급

- 가축분뇨 원료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등
  * 동 사업을 통해 관리하는 부숙 관리대상 농가 현황에 한함

	축 종	합 계	한·육우	젖소	돼 지	닭
사육두수	시·군 전체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부숙관리 농가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상기 농가중 소규모농가	호	호	호	호	호
		두	두	두	수	두
		%	%	%	%	%
부숙관리 농가 가축분 발생량(년)		톤	톤	톤	톤	톤

살포지확보

- 퇴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항목 변경 가능)

	구분	소요면적	기확보	추가계획	비고
농경지 확보 계획	논	ha			
	밭				
	과수원 등				
	(계)				
관리 농가 가축분 발생량(톤/년)					
확보 농경지 살포가능 량(톤/년)					
비율					

- 퇴비 유통계획 등 지역공급 세부계획 등

(2) 시설 및 장비 구입

사업비 집행계획

- 총 사업비 집행계획을 완숙퇴비 보관창고, 장비 구입 등 사업비 집행계획을 건별로 세부적으로 표기(자료 별첨)

시설용량

- 가축분뇨 발생량(예측) 근거 시설용량 산출

생산량

- 퇴비 보관량(항목 변경 가능)

생산량 (연간)	합계	퇴비
	톤	톤

<table>
<tr><td rowspan="8"></td><td rowspan="2">계획</td><td>저장시설</td><td>- 비수기 퇴비 저장 및 시설 확보계획 등</td></tr>
<tr><td>악취방지 및 포집</td><td>- 악취방지시설(적정용량, 밀폐화, 포집・탈취 계획, 적산전력계 등) 설치 및 관리계획
- ICT활용 악취측정기 설치 등</td></tr>
<tr><td rowspan="3">(3) 운영관리</td><td>가동율 관리</td><td>- 원료 반입물량 대비 처리용량에 따른 적정 가동 계획</td></tr>
<tr><td>사후관리</td><td>- 시설 운영관리 계획
- 사후관리 계획 등</td></tr>
<tr><td>이용계획</td><td>- 퇴비 이용계획(항목 변경 가능)
<table>
<tr><td rowspan="2">이용량 (연간)</td><td>합계</td><td>퇴비</td></tr>
<tr><td>톤</td><td>톤</td></tr>
</table>
- 퇴비・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 자연순환농업 협약체결
- 사업주체 자체의 퇴비살포 계획 등</td></tr>
<tr><td>전담인력 확보계획</td><td>- 인력구성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퇴비화 전문 인력 확보계획(항목 변경 가능)
<table>
<tr><td rowspan="6">인력 운용</td><td colspan="2">소요인력</td><td>기 확보</td><td>추가 확보</td><td>비 고</td></tr>
<tr><td>퇴비화</td><td>명</td><td>명</td><td></td><td></td></tr>
<tr><td>시설관리</td><td></td><td></td><td></td><td></td></tr>
<tr><td>수거・살포</td><td></td><td></td><td></td><td></td></tr>
<tr><td>사무, 기타</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r>
</table>
- 운영・관리 인력 전문교육, 안전교육 계획 등</td></tr>
<tr><td>(4) 농가관리</td><td>농가 지도 지원</td><td>-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 및 지원계획</td></tr>
<tr><td rowspan="3">사업주체 역량</td><td colspan="2">재원조달 능력</td><td>- 자부담 확보계획(증빙자료 포함), 신용조사서 첨부</td></tr>
<tr><td colspan="2">수행실적</td><td>- 퇴・액비화 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또는 운영실적</td></tr>
<tr><td colspan="2">품질관리</td><td>- 실험실 운영 등 자체 부숙도 품질검사 방안</td></tr>
<tr><td>기타</td><td colspan="3">- 동 사업과 관련하여 신청 조직체에서 추가 기술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작성(선택)</td></tr>
</table>

사업비 세부내역

▣ 단 체 명 :

▣ 사 업 명 :

(단위 : 천원)

비 목	산 출 내 역 (단체 제출 내역)	신 청 액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발효퇴비 **보관창고** (0000 등)	○ 00000000000 (0000000) - 0 × 00원× = 0000 원 - 0 × 00원× = 0000 원 * 규격 용량 등 상세 기재					동 규격 용량 산출근거 기재
구입 장비명	○ 00000000000 (0000000) - 0 × 00원× = 0000 원 * 규격 용량 등 상세 기재					동 규격 용량 산출근거 기재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1	1,000,000	150,000	350,000	500,000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7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강준수	280-3283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분뇨의 퇴비 발효촉진으로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 및 양질의 퇴비 생산 도모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톤)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5,000	167	835,000 (100%)	150,000 (18%)	350,000 (42%)	335,000 (4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 :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 사업내용 : 부숙 기간 단축 및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한 부숙 촉진제 지원

☐ 지원조건

○ 사업대상 선정기준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2순위)** 환경친화축산농장, 광역악취개선 ○ **(3순위)** 동물복지인증, HACCP인증, 친환경축산인증 **※ 동일 순위 중 최근 3년이내 축산환경개선 교육(농식품인력개발원, 축산환경관리원, 행정주관 등) 이수농가 우선 선정**

○ 지원제외 : ① 퇴비사 미 보유 농가, ② 분뇨 전량위탁처리 농가(일부 위탁처리의 경우 지원가능)

※ 퇴비유통전문조직체는 관리농가의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물량 결정

【 지방비 지원 제한사항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지원대상 제품 : 퇴비 부숙촉진제(조달청 등록제품)

◆ 퇴비부숙 촉진이 주용도인 제품으로 퇴비 직접 살포제에 한하며, 급여 전용제품 및 악취저감제, 면역강화제, 톱밥 지원 불가

①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퇴비 부숙촉진 효과가 있는 제품

② 시·군에서는 자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구매를 위해 생산자단체와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조건에 부합한 제품에 대해 원하는 제품 선정 가능

※ 시·군에서는 농가에 제품 공급 전 지원대상 제품에 적합한지 사전 검토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는 신청농가의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지정, 보유 가축, 축사면적 등을 토대로 기준을 세워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 사업 추진 중에 기 선정된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변경 조치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시장・군수는 사업이 완료된 농가로부터 사업완료(제품공급) 내역 및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제품공급확인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등을 징구 확인 후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조례에 의거 지급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완료 내역을 현지 확인 및 자체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원목적대로 활용치 않거나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2월말까지

○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까지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67	835,000	150,000	350,000	335,000	
전주시						
군산시	10	50,000	9,000	21,000	20,000	
익산시	24	120,000	21,300	49,700	49,000	
정읍시	39	195,000	35,100	81,900	78,000	
남원시	30	150,000	27,000	63,000	60,000	
김제시	10	50,000	9,000	21,000	20,000	
완주군						
진안군	39	195,000	35,100	81,900	78,0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15	75,000	13,500	31,500	30,000	
고창군						
부안군						

8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안개분무시설 지원을 통한 축산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악취저감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40,000	29	1,160,000 (100%)	240,000 (21%)	560,000 (49%)	360,000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비내 사업량 조정 가능

○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축산농장 지정 ○ (2순위) 환경친화축산농장, 광역악취개선 ○ (3순위) 깨끗한농장가꾸기, 동물복지인증 ○ (4순위) HACCP인증, 친환경축산인증 ○ (5순위) 축사시설현대화, 공공목적시설

○ 사업내용 :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 안개분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시설·장비) 일체(분사펌프, 콘트롤러, 자동수온조절기, 기계보호 케이스, 콤프레샤 등)
- 축산 악취저감 목적으로 설치 운영이 가능한 장비
- ICT 악취측정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장비

□ 세부 추진요령

○ 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신청농가의 가축 사육현황, 사육환경 등을 토대로 타당한 대상자를 선정

【 지원제외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축산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업체 선정기준

- 직접 제조·설치·A/S를 할 수 있는 공장등록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 한 업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급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내 공장 등록업체 우선 선정)
- 스마트팜 확산사업 참여기업(농림축산식품부)등록업체 우선 선정
- 관련 특허 보유 업체 우선 선정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전체 축사 시설을 포함한 안개분무시설 설치 원칙(사업비 초과는 자부담)
- 노즐 막힘으로 인한 미사용 등 피해 방지위해 설치노즐의 5% 예비노즐 공급
- 고압펌프 및 자동히터 등에 각각 누전차단기 설치
-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최소 2년 이상

○ 시설 세부세항 (동급이상)

- 분사펌프
  - 부식으로 인한 노즐 막힘방지를 위해 유체 접촉부위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
  - 분사펌프는 삼상 100bar 이상 고압펌프 사용
  - 사용을 정지한 후 재사용 시 펌프 내의 불순물 배수시설 설치
  - 환경개선제(탈취제 등)는 자동희석(정량공급)장치를 설치하여 사용
- 컨트롤 및 케이스
  - 컨트롤은 축사 내부의 분사조절를 자동으로 가능하도록 갖춰야 하며, 외부기기(핸드폰, PC등)으로 제어가 가능할 것

    * 단, 인터넷망이 구축된 농장에 한함
  - 제품의 동파 및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케이스 갖춰야 함
  - 기계실 내부에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자동히터장치 등)설치
- 고압분무 노즐
  - 노즐은 분무압력 100bar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
  - 노즐의 본체재질은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

    (소·돼지·닭 0.2mm이하, 단 외부는 축사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
- 배관
  - 유체 접촉부위 및 축사 내부 설치배관은 스테인리스 316L로 제작 외부는 200bar를 견딜 수 있는 고압호스로 설치
  - 노즐막힘 방지를 위해 유체를 여과하는 여과장치(미세필터 등)를 5개 이상 설치
  - 동파방지 및 배관 오염차단을 위해 배관내 잔수배출 시설 설치(콤프레셔)
- 콤프레셔
  - 배관에 유체를 충분히 배수시킬 수 있는 콤프레셔를 설치
  - 삼상 3HP 150L 이상

○ 보조금 집행

- 지원 자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 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즉시 집행
- 대상자 변경 시 사전 시·군 및 도의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비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집행

○ 사후관리

- 시설 장비 A/S 기간 경과 후 고장 발생 시에는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상 운영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자금 회수조치
- 사업완료 이후에는 기계장비 운용실태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업을 착수토록하고 3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포기서 작성 후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시·군에서 입회하여 시공회사에서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말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까지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9	1,160,000	240,000	560,000	360,000	
전주시						
군산시	1	40,000	8,280	19,310	12,410	
익산시	3	120,000	24,830	57,930	37,240	
정읍시	2	80,000	16,550	38,620	24,830	
남원시	2	80,000	16,550	38,620	24,830	
김제시	7	280,000	57,930	135,170	86,900	
완주군	1	40,000	8,280	19,310	12,410	
진안군	2	80,000	16,550	38,620	24,830	
무주군	1	40,000	8,280	19,310	12,410	
장수군	2	80,000	16,550	38,620	24,830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6	240,000	49,650	115,870	74,480	
부안군	2	80,000	16,550	38,620	24,830	

9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로 처리효율 증대 및 악취저감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	10,000	100	1,000,000 (100%)	210,000 (21%)	490,000 (49%)	300,000 (30%)

○ 사업대상 : 액비저장조 보유 양돈농가 및 자원화시설 등

○ 사업내용 :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

- 폭기장치(수중펌프), 약품주입기, 펌프이동장치(지지대), 배관 등

▢ 세부 추진요령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 희망 시설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서식 1)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부(도) → 사업추진 및 완료(시·군) → 사업 정산 보고(시·군)

○ 보조금 집행

- 지원 자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즉시 집행
- 사업비는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자별 총 사업비의 30%이상 변경 시 도 승인을 득해야 하며, 미만 시 시・군 자체 승인 후 결과 보고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업을 착수토록하고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포기서 작성 후 도에 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 28까지

○ 사업완료(표지판)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까지

【 별첨 1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100	1,000,000	210,000	490,000	300,000	
전주시						
군산시	3	30,000	6,300	14,700	9,000	
익산시	15	150,000	31,500	73,500	45,000	
정읍시	15	150,000	31,500	73,500	45,000	
남원시	13	130,000	27,300	63,700	39,000	
김제시	15	150,000	31,500	73,500	45,000	
완주군	6	60,000	12,600	29,400	18,000	
진안군	4	40,000	8,400	19,600	12,000	
무주군						
장수군	5	50,000	10,500	24,500	15,000	
임실군	8	80,000	16,800	39,200	24,000	
순창군						
고창군	10	100,000	21,000	49,000	30,000	
부안군	6	60,000	12,600	29,400	18,000	

10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도)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을 통한 환경개선 및 확대 분위기 조성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	28,600	5	143,000 (100%)	30,000 (21%)	70,000 (49%)	43,000 (30%)

○ 사업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기 지정농가 중 '21년도 사후관리 평가 결과 90점 이상 획득 농가

○ 사업내용 : 악취저감시설, 조경관련 등 사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지원

○ 평가항목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기간, 사후관리 평가점수, 축사 관리 및 관련대장 작성 · 보관 상태 등

▢ 세부 추진요령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 희망 시설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서식 1)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부(도) → 사업추진 및 완료(시·군) → 사업 정산 보고(시·군)

○ 보조금 집행

- 지원 자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즉시 집행
- 사업비는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자별 총 사업비의 30%이상 변경 시 도 승인을 득해야 하며, 미만 시 시・군 자체 승인 후 결과 보고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업을 착수토록하고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포기서 작성 후 도에 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 28까지

○ 사업완료(표지판)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까지

【 별첨 1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5	143,000	30,000	70,000	43,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1	28,600	6,000	14,000	8,600	
정읍시						
남원시	1	28,600	6,000	14,000	8,600	
김제시	1	28,600	6,000	14,000	8,600	
완주군	1	28,600	6,000	14,000	8,60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	28,600	6,000	14,000	8,600	

11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전환)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능력 및 품질 저하를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지원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자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사업별 상 이	2	500,000 (100%)	250,000 (50%)	100,000 (20%)	150,000 (3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이며, 사업 신청 시 재원비율 조절 가능(시군비, 자담)

○ 사업대상 : 5호 이상의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자원화시설, 처리시설 등 (가분법 제2조)

- 해당 시·군의 가축분뇨 처리현황 및 시설 개보수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에 타당한 대상자 선정.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제외 (국비사업 활용 지원)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처리)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 퇴·액비화 시설·기계·장비, 정화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등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차량 제외

□ 세부 추진요령

○ 보조금 신청 및 지급방법

- 사업 희망 시설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서식 1)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에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시·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부(도) → 사업추진 및 완료(시·군) → 사업 정산 보고(시·군)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검토(2억원 이상)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도에 요청(검토기관 : 축산환경관리원)

○ 보조금 집행

- 지원 자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즉시 집행
- 사업비는 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집행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자별 총 사업비의 30%이상 변경 시 도 승인을 득해야 하며, 미만 시 시・군 자체 승인 후 결과 보고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업을 착수토록하고 기한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포기서 작성 후 도에 보고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 28까지

○ 사업완료(표지판)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까지

【 별첨 1 】

“2억원 이상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 타당성 검토 신청(시 · 도)

○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세부사업계획 확정	→	사업계획 승인	→	사업시행 (계약체결)
사업주체		시・도(시・군)		관리원		시・도(시・군)		농식품부		사업주체

○ 신청방법 : 시・도는 각 시・군에서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취합 후 축산환경관리원으로 타당성 검토 요청

- 타당성 검토 신청 시 제출 서류

구 분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 량
1. 타당성 검토 신청서	타당성 검토 요청은 공문으로 신청 [별지 서식2] 신청서 작성	1부
2. 사업계획서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장소, 소요예산 등 포함	1부

* 근거(‘2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전 축산환경관리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

❑ 타당성 검토(축산환경관리원)

○ 검토 절차

신청서 접수	→	사업계획 검토	→	현장조사	→	세부사업계획 검토완료 및 송부
1일(1)		30일(31)		8일(39)		1일(40)

* 검토소요기간은 업무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필요시 생략 가능

* 2억원 미만의 사업일지라도 필요시 관리원과 협의 후 타당성 검토 의뢰 가능

○ 검토사항 : 사업필요성,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실시

2억원 이상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타당성 검토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추진주체</td><td>시・도</td><td>○○시・도 / ○○과(담당자/전화번호/E-mail)</td></tr>
<tr><td>시・군</td><td>○○시・군 / ○○과(담당자/전화번호/E-mail)</td></tr>
<tr><td>사업주체</td><td>생산자단체명(담당자/전화번호/E-mail)</td></tr>
<tr><td rowspan="2">사업주요내용</td><td>사 업 명</td><td></td></tr>
<tr><td>사업비
(천원)</td><td>
<table>
<tr><td rowspan="2">구 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 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 조</td><td>융 자</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시설A</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농가B</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센터C</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법인A</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주요사업계획</td><td>
<table>
<tr><td>농가(법인)</td><td>주요사업계획</td></tr>
<tr><td>시설A</td><td>퇴비사 개보수, 액비저장조 증설</td></tr>
<tr><td>농가B</td><td></td></tr>
<tr><td>센터C</td><td></td></tr>
<tr><td>법인A</td><td></td></tr>
</table>
</td></tr>
</table>

년 월 일

○○○시・도(시・군)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참여 주체별 사업계획서(비교견적(사업비 검토용) 포함)
※ 파일로 제출, 도면의 경우 A3사이즈

【 별첨 2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합 계	2	500,000	250,000	100,000	150,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1	250,000	125,000	50,000	75,000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1	250,000	125,000	50,000	75,000	
부안군						

12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균이)

담당자	전화번호
강준수	280-3283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전라북도 축산과입니다.

♣ 축분 고속발효로 악취 저감과 환경민원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
♣ 축분 처리비용 절감과 양질의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농가경영 개선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담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152,000	10	1,520,000 (100%)	760,000 (50%)	152,000 (10%)	608,000 (40%)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사업대상 : 축산농가, 농업인 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구 분	우선선정 기준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 **(2순위)** 환경친화축산농장, 광역악취개선 ○ **(3순위)** 동물복지인증, HACCP인증, 친환경축산인증 **※ 동일 순위 중 최근 3년이내 축산환경개선 교육(농식품인력개발원, 축산환경관리원, 행정주관 등) 이수농가 우선 선정**

○ 사업내용 : 축분 고속발효 퇴비화시설 지원

- 축분을 고속발효하여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일체
- 고속발효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악취저감(탈취)시설 설치

□ 세부 추진요령

○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에서는 신청농가의 가축 사육현황, 사육환경 등을 토대로 타당한 대상자 선정

【 지원제외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축산농가**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지원세부 내용

- 가축분뇨 처리 용량 : 4톤/일 이상 **※ 산란계 기준이며, 수분함수율에 따라 변동**
- 축분 유입 및 배출 등 농가 운영이 편리한 시설 장비
- **축분 고속발효시설에 악취저감(탈취)시설 의무 설치 [별첨 1]**

  ※ 악취저감시설(탈취)은 전문업체 설치토록 권장
- 생산된 유기질 퇴비 원료의 안정적인 저장시설(비가림시설 포함) 확보

○ 업체 선정기준

- 조달청(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으로 우선 선정
-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인 검증제품 우선 선정
  - 품질보증과 A/S가 2년 이상으로 전담 엔지니어 지원이 가능한 업체 선정

○ 보조금 집행

- 지원 자금 집행은 시장·군수의 사업 실적 확인에 의거 집행하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이를 확인 후 즉시 집행
- 대상자 변경 시 사전 시·군 및 도의 승인 후 사업추진
- 사업비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집행
  -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거,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

○ 사후관리

- 시설 장비 A/S 기간 경과 후 고장 발생 시에는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상운영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자금 회수조치
- 사업완료 이후에는 기계장비 운용실태 점검 실시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업을 착수토록하고 3개월 이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 즉각 포기서 작성 후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시 시·군에서 입회하여 시공회사에서 사후관리 기준 등을 명시하도록 지도

○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2. 1월말

○ 사업완료 및 정산서 제출 : ’22. 12월말까지

【 별첨 1 】

【 시설기준 】

○ 축분고속발효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 가능한 탈취시설 설치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배출허용기준)제1항 별표3의 1.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기타지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하며, 공무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에 의뢰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함

[별표 3] <개정 2011.2.1>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제8조제1항 관련)

1. 복합악취

구분	배출허용기준 (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 탈취 방식에 따른 탈취시설 제반사항 검토

- 세정탈취시설의 경우「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신고 대상으로, 사용 완료한 세정수를 폐수 처리업체를 통해 위탁처리하거나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 처리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해야 함

【 별첨 2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균특이양	시군비	자 담	
합 계	10	1,520,000	760,000	152,000	608,000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1	152,000	76,000	15,200	60,800	
남원시	1	152,000	76,000	15,200	60,800	
김제시	5	760000	380,000	76,000	304,000	
완주군						
진안군	1	152,000	76,000	15,200	60,8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2	304,000	152,000	30,400	121,600	
부안군						

13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조범준	280-3286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1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 비중 확대 및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기존시설 증축 및 개보수 추진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지원한도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300,000	2	2,300,000 (100%)	921,000 (40%)	207,000 (9%)	241,000 (11%)	931,000 (40%)

* 융자조건은 10년[연 2%(민간기업 등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 단,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2년 연속 C등급 또는 점검거부 대상 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증축, 개보수 모두 해당)

- 농·축협 운영 친환경 퇴비 자원화시설(가축분뇨 100% 활용) : 준공일로부터 5년 이상 가동 시설

  * 단, 가축분뇨(우분, 돈분, 계분 등) 100%를 퇴·액비화하는 자원화시설에 한함

○ 사업내용 : 퇴·액비화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혐기 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등

○ 기타사항

- 교부결정 후 6개월 내 미착공 또는 착공 후 사업 중단 시 사업 촉구 3회(월 1회) 권고 후 공사 미재개 시 교부결정 취소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준임

  ** 사업취소 시 설계·인허가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 우선순위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권 소멸(단, 증축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전년도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결과 우수시설(A등급) 가점 부여

-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1순위)에너지화·바이오가스 연계 시설, (2순위)가동률 100% 초과 시설, (3순위)살포지 부족 등 지역 여건이 열악한 시설 등

  * 우선순위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자 선정계획에 따름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추진 방향,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계획이 확정되면 공동자원화시설 증축 및 개보수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실시

* 사업공고: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시・도(시・군)

○ 선정 계획이 시달되면 사업주관기관(시·도)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 방법을 지자체(시·군·구)에 안내

* 안내 내용: 사업목적, 신청자격, 사업신청 기간, 지원내용 등

○ 사업주관기관은 시·군·구에서 조사된 사업신청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우선순위 등 검토의견서, 추천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첨부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게 개보수 사업 신청 접수 후 시·도에 제출

- 시·도 제출 시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추천서,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첨부

<사전 검토 및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
1.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등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자는 현장 운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시설 증축, 개보수 필요여부 판단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대상자: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축협 운영 자원화시설

2. 사업자 선정 및 보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접수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및 평가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의견 및 해당 연도도 예산을 감안하여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종합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평가 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등)의견을 받아야 함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축산환경관리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조치결과서 포함)를 시·군·구에 제출

3. 사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 및 예산 집행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등)의견을 받아야 함

* 단,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평가(농식품부 고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함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점검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예산 확보(국비, 지방비) 후 6개월 내 설계・시공사 미선정 시 사업 촉구 3회(월 1회) 권고 후 사업 미 추진 시 교부결정 취소

* 사업취소 시 설계·인허가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설계·시공사 선정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권 소멸(단,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입찰방식 >

○「가축분뇨법」 제16조 따른 설계·시공분야 면허를 등록한자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사업주관기관은 공사계약 시 시운전기간(필요 시)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 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조치사항 포함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가. 착공·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증축의 경우 실시설계 완료 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 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해당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한 후 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검사 후 허가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 시공업체 계약체결 >

○ 사업대상자는 설계·시공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시공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 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설계·시공사가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설계·시공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설계·시공사,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가. 설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나.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다.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자금 배정신청 >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며,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 사업자금 집행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설계·시공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설계·시공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정산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사업대상자의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을 점검반이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점검 실시

  * 점검반: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

- 시·군·구는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제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에 대한 결과를 시·도(시·군)에 작성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시 수립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개선필요 시 해당 시·도(시·군·구)에 안내 및 현장지도 등 실시

< 보조금 환수 >

○ 사업주관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 위반 시에는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살포비는 환수하여야 함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본 지침상의 기준 미 준수 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반입가능한 원료, 원료 반입비율, 사업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미준수

* 단, 반입비율은 불가항력의 사유(자연재해, 질병 등) 농식품부의 검토 후 한시적 허용 가능

○ 농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3,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 제재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①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②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③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단,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 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 시 후순위 등 조치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인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 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중요재산관리 >

구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부동산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부동산의 종물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처분제한기준)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기타	
합 계	2	2,300,000	921,000	207,000	241,000	931,000	
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2	2,300,000	921,000	207,000	241,000	931,000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14 축산악취개선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박상은	280-340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2022년 축산악취개선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친환경 축산 육성 및 축산환경 개선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별 상이	360	17,984,120 (100%)	3,596,800 (20%)	1,079,020 (6%)	2,517,780 (14%)	8,992,100 (50%)	1,798,420 (10%)

※ 축산악취개선계획 수립하여 도 및 중앙(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선정된 시·군 배정

○ 사업대상 :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재활용신고처리업체, 부숙유기질 비료제조업체 :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 퇴·액비유통전문조직 :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 개별처리시설(개보수 포함) : 퇴액비화 및 저장시설, 정화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탈취탑, 안개분무시설 등
- 부대기계·장비 : 분뇨운반탱크, 퇴·액비살포장비, 운반차량,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기계, 적산전력계, 고액분리기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개별농가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을 적용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농가	500	300		20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600	360		240	
농업법인	2,000	800		1,0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 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도(시·군) 》

- 지역 현황분석 및 농가 수요조사 후 지역여건에 맞는 악취개선계획 제출(시·군)
- 자체평가위원회 통한 시·군 평가결과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시·도)

○ 사업자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종합평가 및 우선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완사업계획서 확정(6월)

○ 사업시행단계

《 시・도(시・군) 》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정보 제공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 등
- 시공업체 선정 :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 구입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 착공, 설계전문업체 공사감리계약 체결
- 악취개선 지역협의체 운영

《 사업대상자 》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시공전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 허가 및 신고 이행, 완료 후 준공검사 실시
- 시공업체와 계약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사업주관기관 지정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 활용 및 설계전문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포기 : 사업주관기관에 변경 및 포기서 제출

○ 자금집행 및 정산단계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또는 매년 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행정사항

○ 2022년도 사업 지침 통보 : ’22.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2. 2. ~ 3월

○ 사업 정산보고 : ’23. 1월중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융 자	자 담	
합 계	360	17,984,120	3,596,800	1,079,020	2,517,780	8,992,100	1,798,420	
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25	1,219,400	243,880	73,160	170,720	609,700	121,940	
정읍시	59	2,966,640	593,310	177,990	415,320	1,483,350	296,670	
남원시	59	2,951,000	590,200	177,060	413,140	1,475,500	295,100	
김제시								
완주군	30	1,500,000	300,000	90,000	210,000	750,000	150,000	
진안군	49	2,460,000	492,000	147,600	344,400	1,230,000	246,000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30	1,518,000	303,600	91,080	212,520	759,000	151,800	
순창군	59	2,947,380	589,470	176,830	412,640	1,473,700	294,740	
고창군	49	2,421,700	484,340	145,300	339,040	1,210,850	242,170	
부안군								

15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박상은	280-340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실시간 환경·악취 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악취저감활동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대응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사업	20,000	15	300,000 (100%)	150,000 (50%)	45,000 (15%)	105,000 (35%)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된 시·군 배정

○ 사업대상 : 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공동자원화시설사업 참여 시·군

○ 사업내용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비 지원

- 지원내용 :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관리 비용

· 악취감지센서(암모니아) 및 축산환경(온도, 습도 등)의 센싱을 위한 기계·장비 등

· 축사의 악취 모니터링, 분석 및 제어를 위한 정보 제공

▢ 세부추진계획

○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별 악취측정 ICT 지원 규모 결정 및 시·도 시달

《 시・군 》

- 시・군에서는 관련 예산, 지역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계획, 지역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치대상 농가・시설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 제출
- 광역축산악취개선 및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동자원화시설 신규・개보수의 사후관리 및 악취저감 효과 확인을 위해 사업 참여 농가・시설에 우선 설치

○ 사업선정단계

《 시・도 》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설치대상 농가・시설의 사업계획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설치대상 최종 선정 및 농식품부 제출

※ 시・도는 시・군별 설치대상 농가・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사업시행단계

《 시・도(시・군) 》

- 설치업체 선정 시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ICT기계・장비 업체 정보를 참고하여, 축산악취관리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업체로 선정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설치 매뉴얼’에 따라 장비 설치 및 축산악취관리시스템과 연계 및 결과 제출

○ 자금집행 및 정산단계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기타 규정하지 않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

▢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

○ 시・군은 설치된 ICT기계・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운영・관리

-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문제발생(센서 오류 등) 시 설치 업체 등과 개선 조치하여 관련 내역 기재

▢ 행정사항

○ 2022년도 사업 지침 통보 : ’22.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2. 2. ~ 3월

○ 사업 정산보고 : ’23. 1월중

【 서식 1】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계획서

<table>
<tr><td>시/도</td><td colspan="2"></td><td>시/군</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부서)</td><td>직 위</td><td>성 명</td><td colspan="2">전화번호</td><td>FAX</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사업구분</td><td colspan="2" rowspan="2">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신규 ( ) / 추가 ( )</td><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합 계</td><td>국 고</td><td>지방비</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5">사업내용</td><td colspan="4">시설 · 장비</td><td colspan="2">소요예산(백만원)</td></tr>
<tr><td colspan="4">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구입 : 대</td><td colspan="2"></td></tr>
<tr><td>설치 소계(개)</td><td colspan="2">축산농가수(호)</td><td>분뇨처리시설(개소)</td><td colspan="2">기타</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td></tr>
<tr><td>정보활용 동의</td><td colspan="6">축산환경관리원의 관제시스템과 설치된 시설 및 정보 등 활용에 동의합니다. ( )</td></tr>
</table>

위와 같이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 · 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세부 내역 1부.
2. 전기 공급 동의서 1부.
3. 설치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 서식 2】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 사업 세부 내역

구분	시설・농가명 (시설, 농가 표시)	대표자	주소	의무설치 대상여부	설치위치 (1)	설치위치 (2)	사용계획	비고
1								
2								
3								
4								
5								
6								
7								
8								
9								
10								

① 설치위치

1. 축산시설 : 1-1 임신사, 1-2: 분만사, 1-3: 후보사, 1-4: 자돈사, 1-5:육성사, 1-6:비육사, 1-7: 돈사외부, 1-8: 분뇨처리장, 1-9: 농장입구, 1-11: 부지경계, 1-10: 기타(기타지역 간략히 위치 기재)
2. 가축분뇨처리시설 : 2-1 탈취탑, 2-2 바이오필터, 2-3 기타(기타지역 간략히 위치 기재)

② ICT 활용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1: 악취센서(암모니아, NH3), 2: 시설・농가 환경관리(온도, 습도)

【 서식 3】

(작성대상 : 농장·시설주)

전기 공급 동의서

<table>
<tr><td rowspan="2">대표자명
(법인명)</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td></tr>
<tr><td>핸드폰 :</td></tr>
<tr><td>농장・시설명</td><td colspan="2"></td><td>시설연락처</td><td>전 화 :</td></tr>
<tr><td>농장・시설
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설치 내역</td><td rowspan="2">ICT
기계・장비
(센서)</td><td>암모니아(NH_3)</td><td colspan="2">개</td></tr>
<tr><td>온・습도(℃·%)</td><td colspan="2">개</td></tr>
</table>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 소유 부지내(농장, 시설)에 전기공급용 ICT 기계・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정상적 운영을 위한 상시 전기공급을 이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 중지시 빠른시일 이내 정상조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위 전기 공급 동의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신 청 자(대표) (인)

【 서식 4】

(작성대상 : 농장·시설주)

설치 동의서

<table>
<tr><td rowspan="2">대표자명
(법인명)</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연락처</td><td>전 화 :</td></tr>
<tr><td>핸드폰 :</td></tr>
<tr><td>농장・시설명</td><td colspan="2"></td><td>시설연락처</td><td>전 화 :</td></tr>
<tr><td>농장・시설
주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설치 내역</td><td rowspan="2">ICT
기계・장비
(센서)</td><td>암모니아(NH_3)</td><td colspan="2">개</td></tr>
<tr><td>온・습도(℃·%)</td><td colspan="2">개</td></tr>
</table>

☐ **본인은 상기와 같이 본인 소유 부지내(농장, 시설)에 전기공급용 ICT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이에 대한 설치 작업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위 설치 동의서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숙지하였습니다.

신 청 자(대표) **(인)**

【 서식 5】

[작성대상 : 농장·시설주]

사업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시설명(법인명), 성명, 주소, 연락처, 농장현황	사업자 선정·평가·사후관리,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사업자 선정·평가·사후관리, 축산악취관리시스템 시스템 운영	시설명(법인명), 성명, 주소, 연락처, 농장현황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신 청 자(대표) : (서명/인)

○○ 시장(군수) 귀하

【 서식 6】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결과(총괄)

<table>
<tr><td colspan="2">시/도</td><td colspan="2"></td><td>시/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부서)</td><td>직 위</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전화번호</td><td>FAX</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사업내용</td><td colspan="2">시설 · 장비</td><td rowspan="2">사업비
(백만원)</td><td>합 계</td><td>국 고</td><td>지방비</td></tr>
<tr><td colspan="2">대</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 rowspan="2">설치업체</td><td>업체명</td><td>대표명</td><td colspan="2">담당자명</td><td colspan="3">담당자 연락처</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9">시설
·
농가</td><td>순번</td><td>관리번호</td><td>시설・농가명</td><td colspan="2">대표자명</td><td colspan="3">악취관리시스템
연계여부</td></tr>
<tr><td>1</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2</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3</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4</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5</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6</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7</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r><td>8</td><td></td><td></td><td colspan="2"></td><td colspan="3"></td></tr>
</table>

【 서식 7】

세부 설치결과(농장·시설별)

<table>
<tr><td colspan="6">악취측정ICT기계・장비 정보</td></tr>
<tr><td colspan="3">관리번호</td><td colspan="3">설치내역</td></tr>
<tr><td colspan="3">지역명 - ICT기계・장비 - 1</td><td colspan="3">메인통신장비 1개,
암모니아, 온/습도센서 각 2개</td></tr>
<tr><td colspan="6">농장정보</td></tr>
<tr><td>유형</td><td>축종</td><td>농장명</td><td>대표자명</td><td>연락처</td><td>주소</td></tr>
<tr><td>농가</td><td>돼지</td><td>123농장</td><td>김철수</td><td>010-1234-1234</td><td>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td></tr>
<tr><td colspan="6">업체정보</td></tr>
<tr><td rowspan="2">업체명</td><td rowspan="2">ABC업체</td><td>대표자명</td><td>홍길동</td><td>회사
연락처</td><td>02-1234-4567</td></tr>
<tr><td>담당자명</td><td>이나라</td><td>담당자
연락처</td><td>010-2345-7890</td></tr>
<tr><td colspan="6">센서1</td></tr>
<tr><td>설치위치</td><td>비육사 배기구</td><td>설치일자</td><td>2021. 1. 1.</td><td>암모니아(ppm)</td><td>100</td></tr>
<tr><td colspan="3">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td><td colspan="3">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td></tr>
<tr><td colspan="6">센서2</td></tr>
<tr><td>설치위치</td><td>퇴비사</td><td>설치일자</td><td>2021. 1. 1.</td><td>암모니아(ppm)</td><td>100</td></tr>
<tr><td colspan="3">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td><td colspan="3">센서 설치 완료 사진 첨부</td></tr>
<tr><td colspan="6">상세 설치위치</td></tr>
<tr><td colspan="6">위성사진에 센서 설치위치 표시하여 첨부</td></tr>
</table>

【 서식 8】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 연계 신청서

참여사업명 (참여년도)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설치사업(20 년)*

농장정보

유형	축종	농장명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농가	*돼지*	*123농장*	*김철수*	*010-1234-1234*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 작성방법 >

○ 유형 : 사업장 유형(농가/시설)
○ 축종 : 농가의 경우 표기(돼지, 젖소, 한우, 닭, 오리 등)
○ 연락처 : 악취 발생 시 연락처 기입 번호로 문자 발송, 핸드폰 번호 우선 기입

업체정보

업체명	*ABC업체*	대표자명	*홍길동*	대표 연락처	*010-1234-4567*
		담당자명	*이나라*	담당자 연락처	*010-2345-7890*

< 작성방법 >

○ 센서를 설치한 업체의 정보 기입

센서 정보

농장명	센서구분	센서 유형		모델명	설치일자	설치위치		
		종류	방식			구분	내/외부	상세위치
123농장	*암모니아*	*전기화학*	*흡입*	*ABC-100*	*2020.02.19*	*모돈사*	*외부*	*윈치커튼 아래*
	온도	-	-	*ABC-101*	*2020.02.19*	*모돈사*	*내부*	*돈사 중앙*
	습도	-	-	*ABC-102*	*2020.02.19*	*모돈사*	*내부*	*돈사 중앙*

< 작성방법 >

○ 센서구분 : 설치 센서의 측정 정보의 유형 구분(암모니아, 온도, 습도)
○ 설치위치 구분 : 임신돈사, 분만돈사, 후보돈사, 자돈사, 육성돈사, 비육돈사, 우사, 계사, 퇴비사, 액비저장조, 악취저감시설, 농장입구, 사무실 등
○ 상세위치가 없을 경우 “-”로 표시

「축산악취관리지원시스템」연계를 위해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시장·군수 (인)

축산환경관리원장 귀하

【 서식 9】

<table>
<tr><th colspan="12">설치장소 일반현황</th></tr>
<tr><td>설치장소</td><td colspan="3"></td><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대표명</td><td colspan="3"></td><td>연락처</td><td colspan="7"></td></tr>
<tr><th colspan="12">현장점검표</th></tr>
<tr><td rowspan="4">메인장비
점검</td><td colspan="8">1. 메인장비 전원은 잘 들어오고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2. 데이터 전송은 잘 되고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3. ICT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 할수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4. 메인기기와 모니터에 이상이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rowspan="8">설치위치
점검</td><td colspan="8">1. 센서1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2. 센서2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3. 센서3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3">센서1</td><td colspan="3">센서2</td><td colspan="3">센서3</td></tr>
<tr><td>위치</td><td colspan="2"></td><td>위치</td><td colspan="2"></td><td>위치</td><td colspan="2"></td></tr>
<tr><td>구분</td><td>시스템</td><td>현장</td><td>구분</td><td>시스템</td><td>현장</td><td>구분</td><td>시스템</td><td>현장</td></tr>
<tr><td>암모니아
(ppm)</td><td></td><td></td><td>암모니아
(ppm)</td><td></td><td></td><td>암모니아
(ppm)</td><td></td><td></td></tr>
<tr><td>온도
(℃)</td><td></td><td></td><td>온도
(℃)</td><td></td><td></td><td>온도
(℃)</td><td></td><td></td></tr>
<tr><td>습도
(%)</td><td></td><td></td><td>습도
(%)</td><td></td><td></td><td>습도
(%)</td><td></td><td></td></tr>
<tr><td rowspan="3">시스템
확인</td><td colspan="8">1. 축산악취관제시스템 접속이 잘 되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2. 축산악취관제시스템 권한이 제대로 부여되었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 colspan="8">2. 축산악취관제시스템에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가?</td><td colspan="3">☐ 예, ☐ 아니오</td></tr>
<tr><td>농가시설
의견</td><td colspan="11"></td></tr>
<tr><td>점검자
의견</td><td colspan="11"></td></tr>
<tr><td>현장사진</td><td colspan="5"></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12">작성일 20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td></tr>
</table>

【 서식 10】

악취측정ICT기계・장비 관리대장

관리번호	지역명 -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지역명 - ICT기계・장비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측정방식		(대기확산, 강제흡입)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ICT 기계・장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합 계	15	300,000	150,000	45,000	105,000	
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7	140,000	70,000	21,000	49,000	
남원시	3	60,000	30,000	9,000	21,000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5	100,000	50,000	15,000	35,000	
고창군						
부안군						

16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박상은	280-3407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가축분뇨 자원화로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 촉진 및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ha)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	200	6,802	1,360,460 (100%)	680,230 (50%)	204,070 (15%)	476,160 (35%)

※ 지원단가는 자원화조직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A등급 300천원/ha, B등급 200천원/ha, C등급 100천원/ha)

○ 사업대상 :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 축산농가 20호 이상 확보하고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살포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 **(액비)** 액비살포지 200ha 이상, 최소 저장량 10천톤/년(연2회전 기준) 이상 확보하고 부숙된 가축분뇨 액비를 유통하는 액비유통전문조직

○ 사업내용 : 퇴액비 적정 살포 시 면적에 따른 살포비 지원

-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확보된 살포지에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해 퇴비살포비 지원
- **(액비)**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고 지정된 재활용신고 필지에 액비를 살포한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 사업추진방향

〈 공통 〉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시·군별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수립
- 보통비료 대신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 권장
- 축산·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유통협의체 구성·운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해 살포비 일부 지원

► 가축분뇨 퇴비·액비 품질향상 추진

- (퇴비유통전문조직) 교반·운반·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면적을 확보한 자로 축사·처리시설 내 깔짚, 가축분 교반·부숙 관리 및 퇴비 살포 대행
-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 유통활성화를 위한 우수 전문조직 육성

【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은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세부 추진요령

○ 사업신청 및 사업물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 시・도 》

- 시·도지사는 사업참여 희망 시장·군수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지자체별 사업물량을 배정

《 시・군 》

- 사업 주관기관: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대상자로 선정된 유통주체의 살포 능력, 살포면적, 참여 축산·경종농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물량 배정 요청

<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지역 내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비·액비 이용계획
· 조사료생산기반조성 등 정책사업 대상지에 퇴비·액비 살포 계획
· 사업시행 퇴비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 결과 및 살포 능력 등
· 지역 퇴비 또는 액비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 사업참여자 》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대상자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1순위: (퇴비) 농·축협, (액비) 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업 등록 유통주체
  - 2순위: 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 3순위: 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 사업시행단계

- 전자인계관리시스템(환경부)과 AgriX 시스템(농식품부)이 연계된 실적으로 액비살포비 지원(시스템 연계 후 적용)
- 퇴비 살포 후 AgriX(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자금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퇴비살포비는 생산관리 내역, 살포확인서, 계약면적을 확인, 액비살포비는 비료사용처방서,액비 살포확인서, 재활용신고 면적을 확인 후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퇴비유통전문조직 또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이 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허위보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여 취소 및 지원자금 회수

□ 행정사항

○ 2022년도 사업 지침 통보 : '22. 1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22. 2. ~ 3월

○ 사업 정산보고 : '23. 1월중

○ 사업추진상황 및 결과보고(시장·군수→시·도지사→농식품부장관) : 반기별(6월, 12월말)

※ 사업대상자, 물량배정, 예산집행 등(AgriX 시스템으로 결과보고 대체 가능)

【 서식 1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① 상호(명칭)</td><td colspan="3"></td></tr>
<tr><td>②성명(대표자)</td><td></td><td>③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④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⑤영업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⑥인력 및 장비</td><td colspan="4">○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퇴비살포기 톤 대,
○로터리 등 경운장비: 대
○기타 장비 :</td></tr>
<tr><td>⑦살포지확보 면적(ha)</td><td colspan="4">○ 기확보(경작농가 계약서) :
○ 확보예정 :</td></tr>
<tr><td>⑧퇴비확보(톤)</td><td colspan="4">톤/일 (축산농가수 호)</td></tr>
<tr><td>⑨관리퇴비장</td><td colspan="4">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작농가 기 톤</td></tr>
<tr><td colspan="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 1부(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농가 관리 계획 1부
4. 부숙 퇴비 살포 계획 1부.
5. 교반관리 농가방문 전 장비 소독관리 계획 1부.</td></tr>
<tr><td>유의사항</td><td colspan="4">1. 퇴비 살포면적 확보 내역서는 퇴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 (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 날인으로 대체 가능
2. 퇴비 확보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td></tr>
</table>

【 서식 2 】

ㅇㅇ 군(시) 퇴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작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퇴비화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퇴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작농가, 축산농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퇴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내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②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작농가의 역할) 경작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퇴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퇴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퇴비장 운영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퇴비유통전문조직의 역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퇴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경작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작농가 퇴비장 관리

⑦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⑦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작,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퇴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퇴비유통전문조직은 퇴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퇴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퇴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 서식 3 】

퇴비살포 확인서

□ 퇴비유통전문조직명 : (☎ :)

□ 농가명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퇴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 서식 4 】

퇴비 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퇴비유통 전문조직)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축산농가	축종별[1]	계	한우	젖소	…	…	기타
	농가수						
	사육두수						
	분뇨량(톤)						
	부숙퇴비 생산량(톤)						
경작농가	작물별[1]	계	벼	조사료	…	…	기타
	살포면적 (10a)						
	작물별 살포량(톤)						

구비서류

1.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대장(조직체보관용) 사본 1부.
2.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 사본 1부.
3. 퇴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1] 축종별 및 작물별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가능(주요 축종품목 위주로 작성)

【 서식 5 】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퇴비유통전문조직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작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퇴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퇴비장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퇴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작농가
- 퇴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퇴비유통전문조직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퇴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퇴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퇴비장을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위탁

ⅳ) 퇴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퇴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작농가 퇴비 및 퇴비장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퇴비사용 유도
- 퇴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 서식 6 】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농가 보관용)

❍ 농장명 : 000농장(농장주), ❍ 축 종 : 한우(00두 규모)

❍ 주소 : ❍ 시설 규모 : 축사 000㎡, 퇴비사 000㎡

일시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 ~ 10:30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성명(서명)	성명(서명)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19.00.00 시료채취		
						'19.00.00 부숙		

【 서식 7 】

축사 깔짚 및 퇴비사 교반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 조직체명 :

일시	농장명	농장 현황		작업 내용			부숙도 검사여부	확인자	
	축종	구분	두수	구분	미생물 살포량	교반		농장주	퇴비유통 전문조직
'19.00.00 09:30 ~ 10:30	홍길동	성축	50두	깔짚	유산균 1kg	30분	'19.00.00 부숙	성명(서명)	성명(서명)
	한우	자축	10	퇴비사	방선균 1kg	30분			

【 서식 8 】

부숙 퇴비 농경지·초지 등 살포 관리 대장(조직체 보관용)

일시	퇴비 생산자	살포지					퇴비 살포량 (톤)	살포자 (퇴비유통 전문조직)
		경작자	작물	번지	면적 (m^2)	시비처방 (처방량)		
'19.00.00 09:30 ~ 10:30	홍길동 (한우)	김철수	벼			'19.10.11 (00kg/10a)		성명(서명)

【 서식 9 】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정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인</td><td>① 상호(명칭)</td><td colspan="3"></td></tr>
<tr><td>②성명(대표자)</td><td></td><td>③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④주 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⑤영업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⑥인력 및 장비</td><td colspan="4">○전문인력 : 명 ○ 살포차량 톤 대,
○트랙터 : 대 ○ 액비살포탱크 톤 대,
○로터리 : 대 ○ 경운장비 : 대
○기타 장비 :</td></tr>
<tr><td>⑦살포지확보 면적(ha)</td><td colspan="4">○기확보(경작농가 계약서(퇴비), 재활용신고필증(액비)) :
○확보예정 :</td></tr>
<tr><td>⑧액비확보(톤)</td><td colspan="4">톤/일 (축산농가수 호)</td></tr>
<tr><td>⑨관리저장조</td><td colspan="4">자체보유 기 톤, 축산농가 기 톤, 경작농가 기 톤</td></tr>
<tr><td colspan="5">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구비서류
1. 인력 및 장비 명세서 1부(임대 또는 위탁시 계약서 사본 첨부)
2. 액비살포 면적 확보 내역서 1부(재활용신고필증, 추가확보는 계획서 첨부)
3. 축산・경작 농가 관리계획 1부
4.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1부.</td></tr>
<tr><td>유의사항</td><td colspan="4">1. 재활용신고필증 및 초지·농경지, 골프장 등 확보내역서는 액비를 뿌릴 살포지의 지번과 면적을 기입하고 살포지 관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농업경영체 등록) 날인)
※ 단, 제주도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실경작자의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2. 액비확보는 전문유통주체가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의 처리 물량 및 농가수 기재</td></tr>
</table>

【 서식 10 】

ㅇㅇ 군(시) 액비유통협의체 운영 협약(예)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ㅇㅇ지역내 가축분뇨 액비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경작농가, 축산농가, 액비유통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등 참여주체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문제의 해소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및 총괄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한다.

제3조(유통협의체의 조건) 액비유통협의체는 아래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통협의체에는 시장군수, 경작농가, 축산농가, 전문유통업체(생산자단체 등 포함)가 모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유통협의체는 우리 지역의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③ 유통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④ 유통협의체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둔다.

① 운영협의회는 시장·군수가 주관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는 참여주체 전원 합의에 의해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회에서는 참여주체별 역할 및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④ 액비유통협의체의 활성화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수시로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유통협의체의 사업) 운영협의회는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② 지역 내 자연순환 친환경농업과 연계하는 사업

③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의 유통지원사업

④ 지역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활성화 관련 시장·군수가 위탁한 지원사업

⑤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시장.군수의 역할) 시장・군수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지역 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②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③ 청보리 사료화사업, 조사료생산 사업 등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④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제7조(경작농가의 역할) 경작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비료사용 처방서 기준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② 액비 살포시 일부 악취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③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④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제8조(축산농가의 역할) 축산농가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② 액비 공급 물량, 협의된 수거비용 부담(톤당 원)

③ 유통주체에서 요구하는 관리요건 준수

④ 액비 저장조 운영을 유통전문조직에 위탁

제9조(유통주체의 역할) 유통주체는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부숙된 액비만 살포지에 살포한다.

② 비료사용 처방서 및 경작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살포

③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④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⑤ 축산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관리

⑥ 경작농가 저장조 관리 및 비료사용 처방서 관리

⑦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⑦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제10조(신규참여) 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신규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작, 축산농가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참여자는 기존 참여주체별 협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명)① 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한 참여주체(해당농가 포함)가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액비유통협의체에서 제명할 경우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① 유통주체는 운영협의회 개최시 협의체 운영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통주체는 액비를 살포할 경우 실적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원의 조달) 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재원은 다음의 것으로 충당한다.

① 각 주체별 협의된 부담비용

② 기타 조성된 자금

제14조(기타)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동 운영협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축 산 농 가 대 표 (인)

경 종 농 가 대 표 (인)

액비유통전문조직 (인)

ㅇㅇ시장군수 (인)

【 서식 11 】

액비살포 확인서

□ 액비유통주체명 : (☎ :)

□ 농가명 : (☎ :)

□ 살포일시 : 20 년 월 일

□ 살포장소 :

□ 살포면적(평) :

□ 살 포 량(톤) :

□ 재배작물 :

□ 입회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ⅰ) 시・군(읍・면) 업무담당자 입회, ⅱ) 농가 입회, ⅲ) 미입회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명 : (서명)

【 서식 12 】

액비살포 결과 보고

신청인 (유통주체)	주 소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축산농가	농가수			
	수거량(톤)			
살포농가	농가수			
	살포면적			
살포내역	작물별 살포면적			
	작물별 살포량			

구비서류

1. 비료사용 처방서 각 1부.
2. 액비살포확인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13 】

유통협의체 구성

○ 시장·군수는 유통주체 선정, 사업물량 등이 확정될 경우 관내 축산단체, 경작농가 및 작목반,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협의체 참여주체별 역할, 추진방법 등 유통협의체 구성 및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추진(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예시 참조 : 붙임 2)

<유통협의체 구성시 참여주체별 역할(예시)>

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포함)

-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수립, 참여대상자 선정 및 관리, 유통협의체 운영 및 지도·감독, 유통협의체 협약사항 조정,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지원, 경작농가 연계 등
-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 경작 및 축산농가에 대한 액비사용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한 지도·교육·홍보(농업기술센터)
- 기 지원 시설 등 관내 자원화(액비저장조 등)시설 활용 계획
- 대규모 액비 소요 시책과 연계 방안 강구
- 퇴·액비 집중살포시 홍보 및 인근 주민의 이해 및 협조 유도

ⅱ) 경작농가

- 액비 살포대상지, 살포량, 시기 등 협의 결정, 유통주체의 살포내용 확인 및 지도
- 액비 살포시 일부 냄새 발생 등에 대한 주민이해 유도 및 홍보
- 쌀, 과수원, 시설채소 등 작목반 단위로 집단화 조성
- 추가 시비 제한 등 협약사항 이행

ⅲ) 축산농가

- 일정 물량의 액비 제공, 수거비용 부담
- 충분한 부숙, 악취제거, 고액분리 등 협약사항 이행
- 관리하고 있는 액비저장조를 유통주체에 위탁

ⅳ) 액비유통전문조직

- 참여주체별 비용부담 수준, 참여농가 기준설정 등 협의 결정
- 액비 수거 및 살포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 등 해소
- 축산·경작농가 액비 및 저장조 관리, 농가에 품질관리 조건 부여
- 경작농가 추가 확보 및 수요처 확보로 연중 액비사용 유도
- 액비살포 재배지의 농산물 생산성에 대한 책임 등 협약사항 이행

【 별첨 】

시 · 군별 세부내역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합 계	6,802	1,360,460	680,230	204,070	476,160	
도						
전주시						
군산시	414	82,800	41,400	12,420	28,980	
익산시	1,173	234,600	117,300	35,190	82,110	
정읍시	1,725	345,060	172,530	51,760	120,770	
남원시	483	96,600	48,300	14,490	33,810	
김제시	966	193,200	96,600	28,980	67,620	
완주군	221	44,200	22,100	6,630	15,470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138	27,600	13,800	4,140	9,660	
순창군	138	27,600	13,800	4,140	9,660	
고창군	1,311	262,200	131,100	39,330	91,770	
부안군	233	46,600	23,300	6,990	16,310	

17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축발)

담당자	전화번호
강준수	280-3283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2022년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소규모 축산농가의 퇴비사 부족 문제 해소 등 부숙 중·후기 이상 가축분 퇴비를 마을단위 저장·관리하여 농경지로 환원

☐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업계획

구 분	단가 (천원)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합계	축발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공동자원화 마을형 퇴비자원화	200,000	1	200,000 (100%)	80,000 (40%)	18,000 (9%)	42,000 (21%)	60,000 (30%)

○ 사업대상 : 마을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내 퇴비유통전문조직(농·축협),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퇴비저장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 용량: 지역 여건에 따라 허용 가능한 퇴비 저장시설
- 송풍·교반: 송풍시설은 동 사업비 내에서 지원 가능하나, 교반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부패 방지를 위한 관리 필수(부패 방지를 위한 간헐적 공기 공급 등)

- 악취저감: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설치는 동 사업비 내에서 지원

* 사업자는 악취저감시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의무

** 악취저감시설은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등이며, 사업비를 초과하여 악취저감시설에 대해 추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축산악취개선사업에서 지원 가능(사업자가 시·군·구에 별도로 사업신청)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내 퇴비는 상업적 판매 제한

【 보조금 지원 제한사항 】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 3. 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 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세부 추진요령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계획이 통보되면 시·군에 사업신청 안내

○ 사업신청자의 신청자격 요건,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방비 지원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후 검토 의견서를 첨부(우선순위 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악취민원, 인허가)하고, 참여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퇴비화시설, 용량, 장비 진입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견 첨부

사업신청자

○ 사업대상자는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평가에 적극 협조

*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2. 사업자 선정 및 보완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자를 선정하고, 평가단계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비 확정

※ 심사, 평가, 검토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시・도(시・군)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한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 사업계획서 제출

-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은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대상자 종합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검토(보완사항 반영여부 및 사업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 검토)를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3. 사업확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 및 예산 집행

시・도(시・군)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등)의견을 받아야 함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단,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2억원 이상의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함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농식품부 고시)'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함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 체결 및 사업 추진·점검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가. 착공·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나. 공사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 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한 후 ⅱ)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 없이 실시

< 시공업체 계약체결 >

○ 사업대상자는 설계·시공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설계·시공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설계·시공사가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 시 설계·시공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설계·시공사,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가. 설계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나. 착공·시공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다.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별첨 】

시·군별 세부내역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합 계	축발기금	도 비	시군비	기타	
합 계	1	200,000	80,000	18,000	42,000	60,000	
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1	200,000	80,000	18,000	42,000	60,000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참 고 사업별 신청 및 선정절차 안내

☐ 말 및 승마분야

○ **말산업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3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학생승마체험 시행 승마장 신청
○ **농촌관광 승마활성화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사업, 승마시설 등 설치 지원사업,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6월 ⇒ (평가) 7~8월 ⇒ (선정) 8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한우분야

○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농장 컨설팅)**
◦ 사업신청: **(신청) 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이력제 운영기관 신청
○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
◦ 사업신청: **가축시장 거래 전 상시 신청**
◦ 신청방법: 가축시장 운영기관 신청
○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
◦ 사업신청: **(신청) 1~5월**
◦ 신청방법: 지역축협 및 생산자단체 신청

☐ 낙농분야

○ **낙농헬퍼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 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곤충분야

○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유용곤충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10월 ⇒ (선정) 11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곤충산업화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8~9월 ⇒ (선정) 10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11~12월 ⇒ (선정) 12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 선정방법: 서류평가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배정

☐ 양봉분야

○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양봉 화분 반죽기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10월 ⇒ (선정) 11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 (3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
○ **토종벌 육성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 사업신청: **(신청) 소비자 1~3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기타 축종 분야

○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우수종돈 농가 보급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10월 ⇒ (선정) 11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시설·기자재 및 기타

○ **고품질축산물 생산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가축 사양관리 개선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 사업신청: **년중**
◦ 신청방법: 5개 보험회사에 신청
○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동물복지 컨설팅사업**
◦ 사업신청: **(신청) 1월 ⇒ (선정) 3월**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 조사료분야

❍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조사료전문단지 기계·장비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및 읍면사무소 신청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3~6월 ⇒ (선정) 8~10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

☐ 축산환경개선 분야

❍ 축산환경 개선사업,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2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 사업대상: 축산악취관리대상농가, 중점관리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 환경 친화적 가축분뇨처리사업, 착유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지원사업, 퇴비발효촉진지원사업,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사업,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2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3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 선정방법: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2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전년도 하반기**(일정 미정)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 선정방법: (1차) 시·군 및 도 자체평가, (2차) 농식품부 평가 및 선정

❍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

- ○ 사업신청: **(신청) 1~2월 ⇒ (선정) 2월**
- ○ 신청방법: 시군 축산부서 신청 * 대상: 퇴액비유통전문조직체